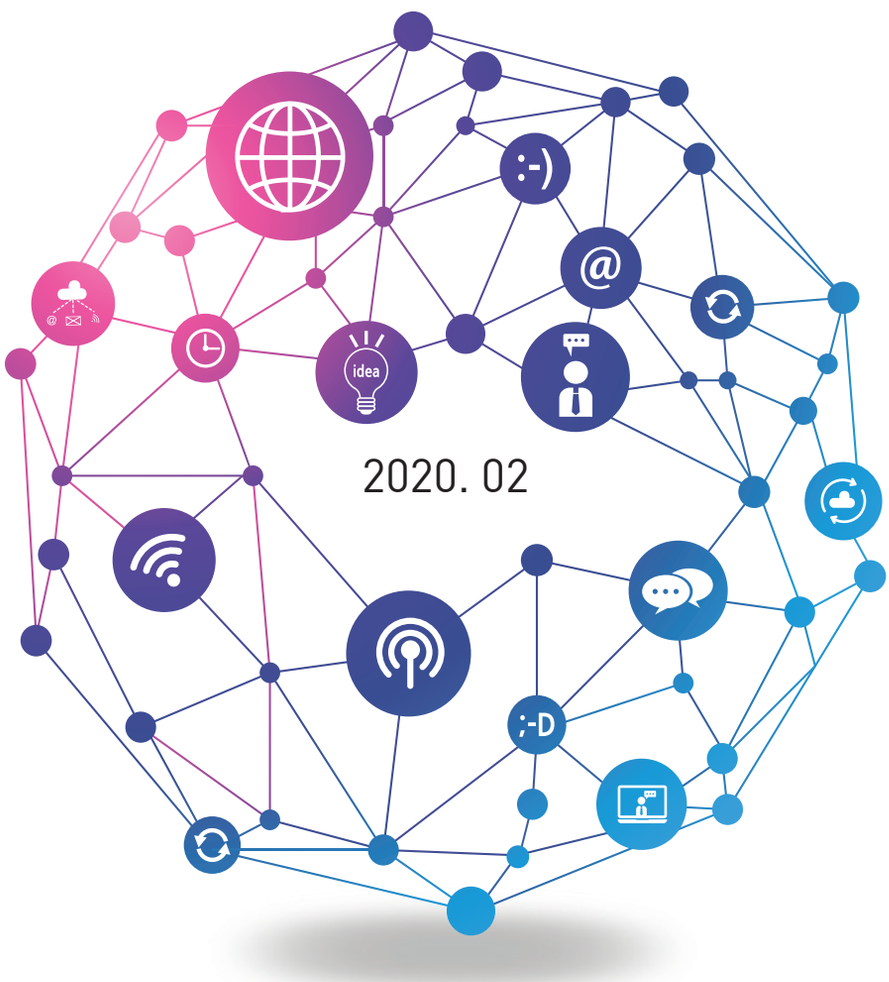
2020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JEJU INSTITUTE FOR REGIONAL PROGRAM EVALUATION

2020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1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자 함

□ 지역산업육성사업 중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신규지원 사업 내용(요약)

사업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비R&D)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목적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기업 매출 신장	우수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주력산업 육성	지역 연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내용	- 주력산업 및 연관산업 기술개발	① 주력산업 및 연관산업 기술개발 ② 지역 우수기업 대상 (지자체지정)	주력산업 기업지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지역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R&D 사업화 지원
예산 (억원)	국비 38.91억 지방비 2.86억	국비 19.5억 지방비 13억	국비 14억 지방비 7.2억	국비 총 115억
유형	자유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개요서참조)	자유공모
규모	① 2억 내외/2년 (총 사업비 70%이내) ② 수행기간 : 다년(2020.4~2021.12), 단년(2020.4~2021.3)		① 5억 이내/1년 (품목개요서 참조) ② 수행기간 : 2020.3~2021.2	① 5억 내외/1년 (총 3년 지원) ② 수행기간 : 2020.5~2023.4
체계	① 기업 단독 혹은 ② 산학연 컨소시움	① 우수기업 단독 혹은 ② 산학연 컨소시움	기업지원 가능한 혁신기관(업) 단독	기업지원 가능한 혁신기관(업) 컨소시움
주관 자격	지역내 주력분야 중소기업	2019년 및 2018년 지역우수기업 (공고문 붙임 참조)	기업지원 가능한 혁신기관(기업)	기업지원 가능한 혁신기관(기업)
기술료	경상기술료		해당없음	
접수	(온라인) 2.20(목)~3.9(월) (오프라인) 2.21(금)~3.10(화) **※ 온라인 접수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온라인)2.24(월)~3.9(월) (오프라인)2.25(화)~3.10(화) **※ 온라인 접수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K-PASS) (www.k-pass.kr)**	(온라인)3.16(월)~3.20(금) (오프라인)3.17(화)~3.23(월)
문의	064-759-7422	064-759-7425	064-759-7427	064-759-7425

CONTENTS

1.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1

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3
- 공고문
- 제주지역 지원계획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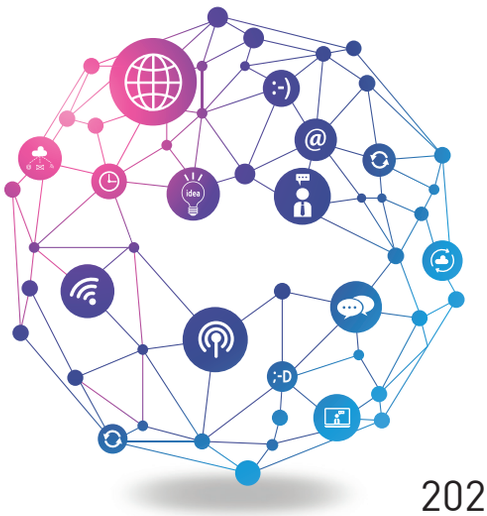
2)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103
- 공고문
- 제주지역 지원계획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05
- 공고문
- 제주지역 품목개요서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4)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261
- 공고문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2. SMTECH 과제 신청 매뉴얼 321

3. K-PASS 과제 신청 매뉴얼 353



2020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1.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공고문
   - 제주지역 지원계획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2)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 공고문
   - 제주지역 지원계획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공고문
   - 제주지역 품목개요서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4)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 공고문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2020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공고문

– 제주지역 지원계획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78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수정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6호(2020.1.31.)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0. 수정내용

□ 공고·접수기간 연장

수정 전	수정 후
[기존 공고문 본문 p.9]	[수정 공고문 본문 p.10]
8.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20.1.31. ~'20.3.2.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3(화) 18:00까지	8.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20.1.31. ~'20.3.9.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10(화) 18:00까지

□ 지역별 사업설명회 취소

수정 전	수정 후
[기존 공고문 본문 p.12]	[수정 공고문 본문 p.13]
12.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 일자 / 시간 / 장소 부산 / 2. 7.(금) / 14:00 ~ 15:30 / 부산테크노파크 업궁단지 1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부산 / 2.14.(금) / 14:00 ~ 16:00 / 부산디자인진흥원 세미나실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대구 / 2. 7.(금) / 14:00 ~ 15:30 /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2호관 1층 지구관	12.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함

※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6호 내용과 동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융복합 중심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718억원(국비 629, 지방비 89)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신청접수	'20.2월～3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20.3월～4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718억원 (국비 629억원, 지방비 89억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 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고용의무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12.(21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1차년도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03.(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기술개발 개요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기술개발이 주력산업별 특성화 추진전략과 부합하는가?
	○목표 및 추진내용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사업화 계획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매출신장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경영능력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사전준비 및 능력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비 편성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일자리의 양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일자리의 질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4,887	532	5,419
대구	4,887	532	5,419
대전	5,887	782	6,669
광주	4,887	532	5,419
울산	3,887	0	3,887
강원	4,387	407	4,794
충북	4,387	407	4,794
충남	4,887	532	5,419
전북	4,387	407	4,794
전남	5,887	782	6,669
경북	4,387	407	4,794
경남	4,387	2,923	7,310
제주	3,891	286	4,177
세종	1,861	361	2,222
합계	62,896	8,890	71,786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단, 과제에 참여하는 ‘기술전문기업(ESP)’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30% 반영)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가·감점 등(예시)
-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라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31.		~'20.3.9.		~'20.3월중		~'20.3월말		~'20.4월중		~'20.4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1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8, 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2, 3726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regional_industry)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315-9263, 9247, 9265, 9245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053-818-9565, 9591, 9564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042-864-4275, 4278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6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2681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8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5, 2166, 2168, 2169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8, 9737, 9739, 9734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061-339-9721~24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9-9514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055-259-3408, 3404, 341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2, 7425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2.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함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주력산업육성(R&D)) 제주지역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제주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주관하며,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점 지원방향(산업별 추진전략/유망품목)에 관련된 기술개발과제 우대

□ 공모방식 : 자유공모

구분	공모방법	지원규모	지원기간
자유공모	▸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과제별 연 2억원 내외	12개월 또는 21개월

□ 사업기간

○ 다년도 지원과제 : 2020.04.01 ~ 2021.12.31(21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1차년도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도 지원과제 : 2020.04.01 ~ 2021.03.31(12개월)

□ 지원규모

○ 총 4,177백만원 내외(국비 3,891, 지방비 286)

* 신규지원 규모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주력산업	국비	지방비
청정헬스푸드산업	1,628	120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1,322	97
스마트그리드산업	941	69
합 계	3,891	286

□ 중점 지원방향

번호	주력산업명 (산업유형)	추진전략 및 유망품목	
1	청정헬스 푸드산업 *(성장산업)*	추진전략	- 타겟기업군별 수요자 중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시장 확대 지원 · 제주특화자원 중심의 생산기술 등 기초원천기술개발로 스타기업 육성 · 제주 청정자원 활용 기능성 제품 중심의 식품가공 및 제조 지원
		유망품목	기능강화식품, 힐링건강식품, 기능성식음료, 고령친화제품, 맞춤형 특산식품, 농축산가공식품
2	지능형관광 콘텐츠산업 *(유망신산업)*	추진전략	- 제주 보유 인프라 활용 첨단기술 연계 타겟기업군별 자생적 산업생태계 육성 · 기술인프라 활용의 ICT 기술 융합 콘텐츠 생산 등 스타기업 양성 · 제주 지역보유 인프라 활용의 O2O서비스 개발
		유망품목	체험형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맞춤형 스마트 콘텐츠, 게임 콘텐츠, 친환경 관광서비스
3	스마트 그리드산업 *(유망신산업)*	추진전략	- 타겟기업군별 실증단지 활용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및 인력육성 · 실증단지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관제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등 스타기업 육성 · 제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MRO 중심의 실증테스트 지원
		유망품목	新 지능형전력서비스, EV충전인프라, EV-IT 솔루션, 에너지-IT 솔루션, MRO

□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함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계획서 · 제출 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개요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과제정보,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Part Ⅰ**	**사업계획서 Part Ⅱ**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본양식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본양식 **사업계획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신청 과제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오프라인 제출

- 사업신청 서류에 대해서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신청 관련 서류 내역

①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내역 1(양식 작성·업로드 및 제출)

연번	서류	시스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비고 (별지)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사업계획서(Part Ⅰ, Part Ⅱ)	필수	1부(원본)	필수	10부(주관기관) (원본 1, 사본 9)	본양식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필수	1부(수행기관별)	[양식 1]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1부(수행기관별)	[양식 2]
4	SMTECH 시스템 활용 동의서	-	-	필수	1부(수행기관별)	[양식 3]
5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동의서	-	-	필수	1부(영리기관별)	[양식 4]
6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	-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양식 5]
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필수	1부(영리기관별)	[양식 6]

※ 본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작성 및 제출

※ 6. 일자리 안정자금 선정 증빙자료, TIPS, VC, 엔젤 등 민간투자 유치 관련 증빙자료 등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제출

※ 7. 연평균 국비(지방비) 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필수

②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내역 2(서류 발급 후 제출)

연번	서류	오프라인 제출		비고
		구분	내용	
1	최근년도 결산 확정 재무제표	필수	1부(영리기관별) (표준재무제표증명)	-
2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필수	1부(수행기관별)	-
3	사업자등록증	필수	1부(수행기관별)	-

※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일 경우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별도 제출

※ 1. 최근년도('18·19) 결산(확정) 재무제표 제출하되 '19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 기준 '19년 결산(확정)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3. 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Part II)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각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10부(원본1, 사본9)를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 가능)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고용창출조건 참고

<고용의무조건>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국비(지방비)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예시 >

국비(지방비)	고용인원
2억원 이하	1명 이상 의무고용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2명 이상 의무고용
4억원 초과 6억원 미만	3명 이상 의무고용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성과 산정기준(안)

① R&D 관련 매출(수출)액

○ **(R&D 관련 매출(수출)액의 정의)** R&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부품)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함

○ **산정방법**

▸R&D 관련 매출액 = ∑(제품별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기술기여도)

*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 개발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부가세납입·수출실적증명원 & 주관기관 및 매출발생 기업 대표가 R&D관련 매출액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② 고용 창출

○ **(고용창출의 정의)** R&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

○ **(산정방법)** R&D 과제 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채용된 신규 연구개발 인력 외에 신규 생산인력, 신규 기타(마케팅 등) 인력을 포함

▸고용창출 : ∑(신규 연구개발인력x기술기여도(참여율)) +
∑(신규 생산인력x기술기여도) + ∑(신규 기타 인력 x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입사일과 현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주관기관 및 고용창출기업 대표가 R&D과제수행의 관련성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서>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아래 표지는 전산접수 시 자동 생성 및 포함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말 것(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불요)**

1) 과제 번호		2) 공고 번호		3) 기술 분류	비고	산업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국가중점과 학기술분류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계획서

자유공모 ◎ 지정공모 ◎ 품목지정 ◎

공개여부 가 ◎ 부 ◎

신규인력 의무채용 대상 ◎ 비대상 ◎

4) 지역		**4-1) 주력산업명**		
5) 과제명				
5-1)제품/서비스명				
6) 주관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e-mail			
7)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e-mail			
8)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20 . . ~ 20 . . (개월)			

9)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민간(수요처) 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10)참여기관				
	기업(기관)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목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책임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구 분	기업(관) 명	대 표 자	부서/학과	책 임 자	전 화
11) 수요처					
12) 위탁연구기관					

13)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 · 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14)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지역산업육성사업 규정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목 차

Part Ⅰ.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
3. 경영현황표 ·····
   3.1 주관기관 ·····
   3.2 참여기관 경영 현황 ·····
4. 개발기간 ·····
5. 기술개발 개요 ·····
   5.1 최종목표 요약 ·····
   5.2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
   5.3 키워드 ·····
6. 보안등급 신청 ·····
7. 기술분류 ·····
8. 수행기관 정보 ·····
   8.1 수행기관별 정보 ·····
   8.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
9. 참여연구원 ·····
10. 사업비 내역 ·····
   10.1 연차별 사업비 요약 ·····
   10.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
   10.3 사업비 비목별 총괄 ·····
11.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연구시설 및 장비(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
1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
   12.1 해당 유형에 √ 체크 ·····
   12.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

Part II.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Ⅰ. 기술개발 계획 ·····
1. 기술개발 개요 ·····
2. 기업성장전략 ·····
3.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
4. 추진체계 ·····
5. 연구자원 현황 ·····
6. 최종목표 및 개발 내용 ·····
6-1. 최종목표 ·····
6-2.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
6-3. 기대효과 ·····

Ⅱ.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1. 사업화 목표 ·····
2. 사업화 계획 ·····
3. 지역발전효과 ·····

Ⅲ. 사업비 ·····

1. 사업비 세부내역 ·····
2. 국비(지방비) 배분 및 민간부담금 분담내역 ·····

Ⅳ. 수행기관 현황 ·····

Part Ⅰ :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 고	
세부공고	
지정공모(RFP) 명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해당시)	
과 제 명	
제품/서비스명	
지역(주관기관)	
관리기관	
주력산업분류	

작성요령

○ 사업분류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공 고 : 선택한 사업분류와 관련된 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세부공고 :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 공고의 세부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지정공모(RFP) 명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해당시) : RFP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을 검색 후 선택하여 입력
○ 과 제 명 : 수행할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력
○ 제품/서비스명 : 기술개발 최종결과물(제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 입력
○ 지역(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소재 지역을 입력
* 지역 입력시, 시스템에서 '관리기관'이 자동으로 선택
○ 주력산업분류 : 각 지역별 해당되는 주력산업 입력(사업계획서 양식(PART II) [별표1] 참고)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납품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작성요령

○ “Part Ⅰ : 시스템 직접입력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주관기관 기업명, 대표자 및 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입력

■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① 대표자, 책임자, 실무담당자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② 기관등록의 경우 대표자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업정보 등록

- 기관의 대표자로 접속하여도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를 등록

②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가 중복이라 표시될 경우 : 전산접수 문의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③ 등록하려는 사업자명이 법인실명인증이 실패할 경우 : 전산 경고창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한국신용평가정보)

■ **조회되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틀린 경우**

① 해당 회원이 직접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수정

※ 주관기관 등의 주소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됨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 주소를 반드시 명기할 것

3. 경영현황표

3.1 주관기관

<table>
<tr><td colspan="2">업 체 명
구 분</td><td colspan="4">○○○○○(주) (20 년 결산기준)</td></tr>
<tr><td colspan="2">설립년월일</td><td></td><td>상시근로자수</td><td></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td><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기업형태</td><td colspan="3">(□ 개인기업, □ 법인기업(□ 일반, □ 외감))</td></tr>
<tr><td rowspan="3">매출</td><td>총매출액(백만원)</td><td></td><td rowspan="2">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td><td rowspan="2"></td></tr>
<tr><td>수출액(백만원)</td><td></td></tr>
<tr><td>주요 매출품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부채총계(백만원)</td><td></td><td rowspan="2">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자본총계(백만원)</td><td></td></tr>
<tr><td colspan="2">자산총계(백만원)</td><td></td><td>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td><td></td></tr>
<tr><td colspan="2">영업이익(백만원)</td><td></td><td rowspan="2">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매 출 액(백만원)</td><td></td></tr>
<tr><td colspan="2">R&D 투자액(백만원)</td><td></td><td>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td><td></td></tr>
<tr><td colspan="2">전년도 수출액(만불)</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유동자산(백만원)</td><td></td><td rowspan="2">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100%)</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유동부채(백만원)</td><td></td></tr>
<tr><td colspan="2">재고자산(백만원)</td><td></td><td>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td><td></td></tr>
<tr><td colspan="2">당기매출액(백만원)</td><td></td><td rowspan="2">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전기매출액(백만원)</td><td></td></tr>
<tr><td>INNO-BIZ 기업</td><td>지정번호</td><td></td><td>유효기간</td><td></td></tr>
<tr><td>벤처기업</td><td>지정번호</td><td></td><td>유효기간</td><td></td></tr>
</table>

3.2 참여기관 경영 현황 (해당 시에만 작성)

※ 주관기관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작성요령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최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발기간

※ 공통 적용양식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20 . 04 . 01 ~ 20 . . (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2020 . 04 . 01 ~ 20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개월)

작성요령

○ 해당 연차별 개발기간을 입력
○ (단년 과제일 경우) 개발기간 : 2020.04.01. ~ 2021.03.31.
○ (다년 과제일 경우) 개발기간 : (1차년도) 2020.04.01. ~ 2020.12.31. / (2차년도) 2021.01.01. ~ 2021.12.31.

5. 기술개발 개요

5.1 최종목표 요약

○ ○

5.2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1차년도	○
2차년도	○

5.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목표 및 연차별 개발목표 요약 : 4,000Byte(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전산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5.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6. 보안등급 신청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작성요령

○ 보안등급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
○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시 보안등급 여부를 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

7. 기술분류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신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연구분야)			
국가과학기술분류(적용분야)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작성요령

○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연구분야, 적용분야),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전략분야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의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본 과제의 해당분류를 선택하여 입력

※ 기술분류 입력은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신청과제의 핵심개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각 기술분류의 세부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8. 참여기관 정보 (해당시,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등)

8.1 참여기관별 정보

구 분	수행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참여기관4			

작성요령

○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의 입력방법에 준하여 참여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 각 수행기관은 검색 전에 반드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방법은 2.항 작성요령 참조)

8.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인 과제 포함)

○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과제 실적	
							완료	개발중	신청중	매출	고용창출
1											
2											
3											

○ 참여기관(해당시)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과제 실적	
							완료	개발중	신청중	매출	고용창출
1											
2											
3											

작성요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과거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 작성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매출 및 고용창출 결과 작성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9. 참여연구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신규채용여부	청년인력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총액 (천원)
				전공	학위	취득년도	종류	취득년도					
주관기관				전자	석사	2000		2000	X	X	30%	-	40,000
	채용예정	-	-	공학	석사			-	o	o	50%	-	24,000
참여기관 (해당시)													
참여기관 (해당시)													
외부참여연구원 (해당시)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위탁연구기관 제외)

소속	성명	구분	건수	사업명	개발기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2				
		참여 연구원	3				
		책임자					
		참여 연구원					
		책임자					
		참여 연구원					

작성요령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 참여연구원의 자격증은 개발과제에 관련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함

○ 주관기관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세부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경우를 의미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청년인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 주관기관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이므로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제를 모두 기재

○ 작성 제외과제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 · 평가연구 또는 시험 · 검사 · 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정부출연금 3억원 이하과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정부출연금 50백만원 이하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주관기관은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참여제한자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사업비 내역

10.1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금액					
	%					100%
2차년도 (20)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예시) 총사업비가 300백만원이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70%, 민간부담금이 30%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300백만원 = 정부출연금 (210백만원이하, 70%이하) + 민간부담금 (90백만원이상, 30%이상)
- 민간부담금 (90백만원이상) = 민간부담현금 (36백만원이상, 40%이상) + 민간부담현물 (54백만원이하, 60%이하)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해당 시에만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민간 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기관	1차년도				
	2차년도				
	계				(%)
참여기관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계				(%)
참여기관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계				(%)
합 계					(100%)

10.3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차년도 (20)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당시)					
	참여기관 (해당시)					
1차년 소계						
2차년도 (20)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당시)					
	참여기관 (해당시)					
2차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직접비, 간접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각 항목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11.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연구시설 및 장비(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구 분	연차	시설 및 장비명	도입 예상금액* (천원)	담당자	규 격	수량	주요 사양	사용 분야	설치 장소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장비									

작성요령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시설 및 장비명, 도입 예상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

○ 기관(기업)명을 명기하고, 그 기관의 과제 참여 형태(주관기관, 참여기관 등)를 병기

○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1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12.1 해당 유형에 √체크 (□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

작성 요령

○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해 아래 2가지 중 하나 선택
- 신제품개발 유형 : 주관기관이 판매해 본 적이 없는 제품 개발
- 기존제품기능향상 : 주관기관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능향상 등

○ 기술개발결과물 기여도(%)를 계상하기 위한 기준임

12.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신청사업 정부출연금 비중	자동계산

(단위 : 백만원, %)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사업화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100)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예상 경상기술료	연도별 예상 정률기술료 금액 (백만원)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예상 정률기술료 총액 (백만원)		자동계산				

※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사업화 성과 중심의 R&D 지원을 위해 경상기술료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경상기술료 산정시 중소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기술료 산정시 중소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업의 총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 개발기술의 실시(사업화)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이 서비스 등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상품 매출액을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C=B/A) :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이 예상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경상기술료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의 개념 :** 완료 판정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되,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고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나,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점유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절차 간소화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기술료 매뉴얼” 참조

Part II.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1)과제번호		2)지역		3)주력산업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계획서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유 형	중소기업		
6)총괄책임자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19××.××.××
	부 서		전 화	×××-××××-××××
	직 위		팩 스	×××-××××-××××
	E-mail		휴대전화	×××-×××-××××
7)총 수행기간	2020.04.01. ~ 2021.03.31. (12개월) / 2020.04.01. ~ 2021.12.31. (21개월)			

8)사업비(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국 비(지방비)			
	민간부담 현금			
	민간부담 현물			
	합 계			

9)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	
			×××-××××-××××	
	참여기관·기관수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대학( )개, 연구소( )개, 기타( )개		

10)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
	부서/직위		휴대전화	×××-××××-××××
	E-mail		팩 스	×××-×××-××××
11)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2)핵심키워드	국문	○○○○, ○○○, ○○○, ○○○, ○○○		
	영문	○○○○, ○○○, ○○○, ○○○, ○○○		
13)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인력 의무채용에 동의합니다 □			
14)고용창출	당해연도 채용 예정인원 ( )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면서,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 (부서명) (성 명)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접수번호 : 전산 접수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기재

2) 지역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기재

3) 주력산업명 : 본 양식 내 [별표1]의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를 기재 (ex. 정밀의료)

※ 해당하는 주력산업이 없을시 "기타"로 기재

4) 과제명 : 기술개발 과제의 과제명 기재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SMTECH)상의 기관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

○ 주관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SMTECH)상의 개인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

7) 총수행기간

○ 개발사업 전체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8) 사업비

○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지방비)와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 시 정한 국비 지원 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9) 참여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SMTECH)상의 기관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10)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1) 보안등급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고한 후 해당란 선택

12) 핵심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 5개를 국문, 영문으로 기재

13) 신규인력 의무채용

○ 본 사업은 국비(지방비) 2억원당 신규 인력 1명 의무 채용

※ 국비(지방비) 1.5억원(2억원 이하) → 1명 의무채용 / 국비(지방비) 2.5억원(2억원 초과) → 2명 의무채용

14) 고용창출

○ '고용창출형' 과제지원이므로 해당 과제에서 총 수행기간 채용예정인원 기재

(채용 예정인원 = (협약서류)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및 신규인력 채용확인서 = 기대효과 고용효과 인원)

※ **제출일,** 주관기관장 및 총괄책임자 **서명**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주관기관명 및 대표자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요 약 서 (초록)

사업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협약기간	2020.04.01. ~ 2021.03.31. (12개월) / 2020.04.01. ~ 2021.12.31. (21개월)		

사업기간 재원조달			
사업비 (천원)	국 비(지방비)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 사업목표

사업목표				
비전과 전략				
수행기관				
기관별 추진 전략	1차 년도			
	2차 년도			

2. 기술개발목표

평가지표(항목)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기술수준	개발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3.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화매출액		
지적재산권		
신규채용		

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수행기관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	○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출시 '※'의 작성요령 설명 및 '작성 Point'는 삭제

Ⅰ. 기술개발 계획

1.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 제품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개념 설명 (완료 후 이미지 등 포함)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개발 필요성 제시
※ 기술개발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자사(주관기관)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객관적 수준을 국내외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시
※ 기존 제품(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작성 Point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 및 국내·외 동향을 인식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창의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는가?
○ 기술적 해결방법이 창의적이며,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는가?
○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수준이 국내외 기준으로 제시되었는가?

2.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2-1. 기술개발 경험

2-1-1. 기술개발 수행 경험 및 사업화 실적

※ 반드시 수행기관의 기술개발, 사업화, 특허 실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관련 요령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예)중소벤처 기업부	주관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예)중소벤처 기업부	주관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천원)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00.00~ '00.00		%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천원)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00.00~ '00.00		%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을 모두 기재

(3) 사업화 실적

기관명	개발제품명	제품설명	매출액(천원)		수출액(천원)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20 년	

※ 기관별로 최근 5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4) 특허 출원/등록 실적

기관명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기관명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 기관별로 최근부터 5년간 특허실적 모두 기재

2-1-2. 성공 및 실패경험

※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성공 및 실패 경험을 기술하고, 본 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서술

2-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예)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기술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부자원 활용 노력,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동, 시장조사, 선행특허조사 등

2-2-1. 사전준비 경과

※ 수행기관 간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준비 경과를 기재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20xx.xx.xx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 개요 : 특허현황 조사 · 주체 : 용역/특허정보연구원 · 목적 : · 성과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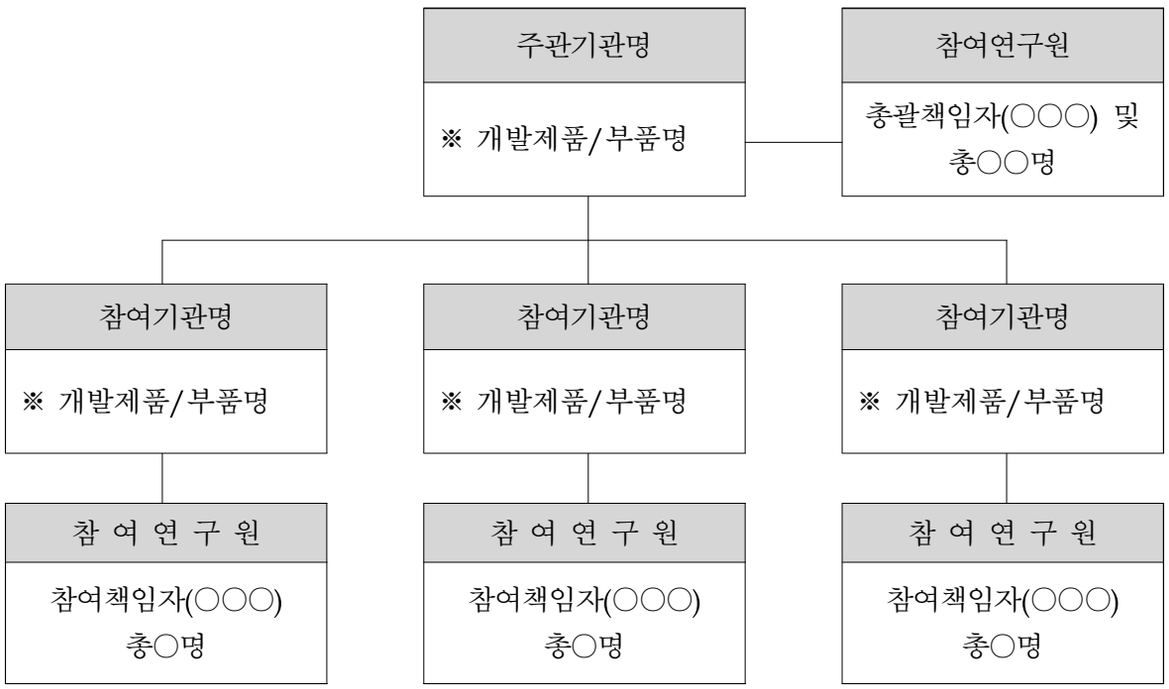
2-2-2. 과제 추진 관련 사전조사 내용

※ 시장조사, 고객니즈 파악 현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개
관련 전문가 Pool이 있는 경우 관련 Pool을 기재하고 활용계획 기재

작성 Point

○ 사업기획을 위해 외부 자원(대학, 연구소, 해외 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수행기관 간 사전 교류 및 협력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수행기관의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이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가?

3. 추진체계



※ 수행기관간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업무분장 현황>

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 • •
	• • •
	• • •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작성 Point

○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컨소시엄 내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4. 연구자원 현황

<참여연구원 현황>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4-1. 주관기관명 : ○○○○○○○○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 1*****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년도	SCI 등재 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기술개발과제 참여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 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예)중소벤처기업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연구원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청년 인력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 채용시기 : 20××.××	○	○

※ 신규채용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 청년인력 :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4-2. 참여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4-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4-3. 참여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4-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작성 Point

- ○ 책임자의 전공분야가 과제 내용과 부합하는가?
- ○ 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참여연구인력 구성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참여연구인력이 과제내용과 관련한 전문분야 인원으로 구성되었는가?
- ○ 참여연구원별 역할분담내용은 적절하며, 신규채용인원은 적절한가?

4-4.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2)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작성 Point

○ 수행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비는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 구입예정 장비는 본 과제를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5. 최종목표 및 개발 내용

5-1. 최종목표

5-1-1. 종합목표

※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재 (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최종목표		•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 기술적 성과 :		
연차 목표	*1차년도 (20XX)*			
	2차년도 (20XX)			
수행기관				
추진전략		• ○○○○개발 • ○○○○개발 • •	• ○○○○개발 • ○○○○개발 • •	• ○○○○개발 • ○○○○개발 • •
추진 내용	1차년도	• ○○○○구현 • ○○○○구현 • •	• ○○○○구현 • ○○○○구현 • •	• ○○○○구현 • ○○○○구현 • •
	2차년도			

5-1-2. 기술개발 목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현재 기술수준[3]	개발목표치		평가방법[4]
				1차년도 (20XX)	2차년도 (20XX)	
1.						
2.						
3.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현재기술수준을 작성하여 개발목표치와 비교가 가능토록 작성

주4)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참조)

5-1-3. 경제적 성과목표(사업기간내)

기관명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합 계	
	매출 (억원)	고용 (명)	매출 (억원)	고용 (명)	매출 (억원)	고용 (명)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경제적 성과목표만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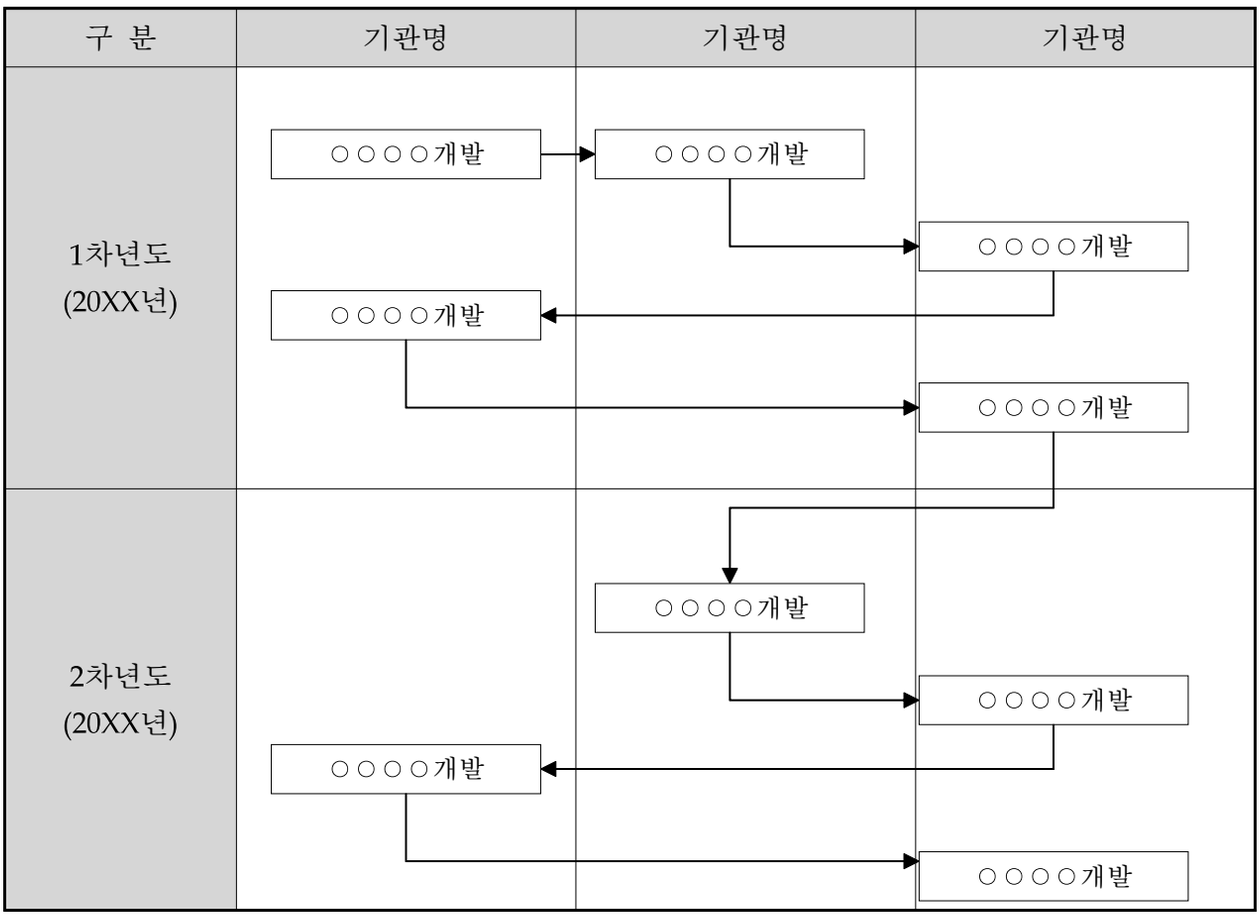
※ 자율지표는 동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되는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ex: 고용, 수출액, 투자, 시작품제작, 특허출원, 공정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등)

작성 Point

○ 목표는 도전적·정량적이며 경제적 성과목표는 타당하며 실현 가능한가?
(예) 세계최초, 국내최고 또는 창의적 목표 등

○ 종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5-1-4. 개발 내용



※ 개발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작성 Point

○ 과제간 기술융합을 통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 추진절차 및 기관별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5-2. 1차년도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 '5-2. 1차년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의 양식을 활용하여
'5-3. 2차년도 연차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작성 (2년 과제인 경우)

※ 수행내용을 기관별·담당역할별로 요약하여 설명 (아래 예시 참조)

ex) ○○기업은 ~~~에 장착되는 ~~~와 ~~~ 및 ~~~~~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체화한 ~~~~을 설계하고 ○○기업은 구조해석을 통해 최적화 과정을 거쳐 완성
설계 완성된 ~~~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기업은 ~~금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은 벤치마킹을 통해 설계된 제품에 대한 구조해석을 추진
또한, ~~~~공법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을 ○○기업이 설계를 수행하며, ○○기업은 ~~~~와 연계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을 개발함과 동시에 제조된 ~~~을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 ○○○, ○○○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

5-2-1. 기술개발 목표

※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구분	수행기관	정량적 달성목표
○○○○개발		• ~~~ 함유량 : 제품 내 ~~~~함유량 ~~~~% 이하 • ~~~ 진공도 : ~~~진공도 00mmhg 이하 • ~~~ 경량화 : 기존 제품 대비 00% 감소

5-2-2. 세부 개발내용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과제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 시제품 제작방법(직접제작 또는 외주 등), 시기 등에 대한 계획도 기재요망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1) ~~~~~~~~~~~~~~~~~개발

(2) ~~~~~~~~~~~~~~~~~개발

(3) ~~~~~~~~~~~~~~~~~개발

5-2-3. 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 기술개발 목표에 따른 기관별 기술개발 내용을 기재하고 투입예상 사업비 기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가능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 ○○○○○○제작 - ○○○○○○○○○○분석 - ○○○○○○○○○○설계	• 장비임차비 3,000천원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 ○○○○○○설계 -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	

5-2-4. 추진일정(해당개월만 작성)

개발항목	개발내용 및 범위	기관명	1차년도(202X) (총수행기간까지 작성)									2차년도(202X) (총수행기간까지 작성)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성 Point

- ○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 ○ 수행기관 간 협력관계 및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 기술개발 일정 관리도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5-3. 기술적 기대효과

※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등 정량, 정성적 효과를 기재

※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기능향상 효과 기재

Ⅱ.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화 목표, 전략 및 기대효과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무, 마케팅, 생산 등 내외부의 관련 전문인력이 작성 또는 협의 후 작성 요망

1. 사업화 목표

1-1. 주관기관

1-1-1. 사업화 목표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						

※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은 과제종료 후 실시하는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며, 경상기술료 징수 근거로 활용 및 목표 달성 시 후속과제 참여에 가점 부여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상 매출액 및 점유비율과 해당 기술개발의 연관성 및 타당성 판단

※ 과제종료 후 최종평가 시 점유비율 최종 확정 예정

작성 Point

○ 사업화 목표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업의 총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 개발기술의 실시(사업화)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이 서비스 등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상품 매출액을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C=B/A) :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이 예상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매출액(B)은 점유비율(C)의 구체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활용

○ 예상 경상기술료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의 개념 :** 완료 판정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되,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고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나,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점유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절차 간소화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기술료 매뉴얼” 참조

1-1-2.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기관명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산정근거	참고자료명
	매출액 등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예시)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작성 Point

○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상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존 제품 매출증가(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산정근거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주요판매처별 판매예상금액, 주요경쟁사와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 및 시장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1-1-3. 사업화 실적

기관명	사업화 품목명 (사업화 연도)	품목 용도	품질 및 가격경쟁력	수출여부	판매채널 (온·오프라인)
			작성 예) 제품 단가가 xx국가 경쟁기업 xx사 대비 10% 낮아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은 세계시장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됨	수출	작성 예) 베트남 현지 xx 에이전시 활용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만들어 낸 산출물(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과거 사업화 실적제시(내수, 수출 모두 포함되며 판매 주력 산출물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제시)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기술기여도는 향후 사업성과활용조사(R&D 관련 매출(수출)액 및 고용창출 등)에 활용

기관명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	○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작성 Point

○ 기술개발의 사업화 실적이 잘 나타나있는가?

○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1-2. 참여기관(기업)

※ 참여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1-1'의 1-1-1. 사업화 목표 ~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양식 복사하여 기재

1-3. 참여기관(기업)

※ 참여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1-1'의 1-1-1. 사업화 목표 ~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양식 복사하여 기재

2. 사업화 계획

2-1. 국내외 시장분석

2-1-1. 국내외 시장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 단,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출처 명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6)	

2-1-2.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

(단위 : 천원)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2-2. 사업화 추진 전략

※ 사업화 전략 : 본 기술개발 성공후 판매까지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총괄적으로 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기술 (아래 양식 이외 그림, 도표 활용 가능)

<사업화 계획 (5개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화 년 도					
년 도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사업목표							
사업화 내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판매계획	매 출 (백만원)						
	수 출 (만불)						

2-2-1.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전략 (실용화/사업화 전략, 시장진입시기, 수출전략)

2-2-2. 대학, 연구소, 협력업체, 대기업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방안

2-2-3. 생산, 설비투자, 마케팅, 인력확보 등에 대한 추진전략

가. 예산 확보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20xx	20xx	20xx	20xx	자기자금	타인자금
시설자금	1. 부지매입 2. 공장건축 3. 생산설비 4. 임차보증금 5. 기타						
	(소 계)						
운전자금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화를 위해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화-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금융권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1. 자기자본: 본인투자자금, 동업자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됨
2. 타인자본: 전환사채,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중진공 자금, 농림부 자금등으로 구성됨

나.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구 분	구분	단위	생산 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 시제품 → 샘플 → 양산체제 구축 → 생산 등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마케팅 계획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청 등), 기술혁신기관(TP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 제시된 예시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제출기업(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케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란에 추진시기, 예산, 설비투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라. 사업화를 위한 핵심인력 확보방안

작성 Point

○ 국내외 시장분석이 객관적으로 되어있는가?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있는가?

3. 지역발전효과

3-1. 고용 효과

○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설명**

<고용목표>

기관명	창출내용	고용목표(명)						
		총 수행기간	종료 1년차	종료 2년차	종료 3년차	종료 4년차	종료 5년차	합계
	① 간략히 기재							
	②							
	③							
	소계							
	①							
	②							
	③							
	소계							
합계								

※ 사업계획서 상 신규참여인력 + 사업관련 신규채용인력(협약기간 내 채용인력)

3-2. 산업생태계 활성화 효과

○ **지역경제 발전 효과 설명**

※ 해당 지역우수기업과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 제시
※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통한 거래업체들과의 동반성장가능성 제시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기여가능성 제시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으로 지역경제 생태계 상 중요성을 가짐

작성 Point

○ 과제수행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우수하며 실현 가능한가?
○ 해당 지역우수기업의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거래업체들과의 동방성장효과가 있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Ⅲ. 사업비

1. 사업비 세부내역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1-1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XX년)			2차년도(20XX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1-2. 기관별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1차년도(20XX년)			2차년도(20XX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물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소계									
기관명 (참여)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소계									
기관명 (참여)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소계									
합계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1-3. 기관별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1차년도(20XX년)			2차년도(20XX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물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직접비									
	간접비									
	소계									
기관명 (참여)	직접비									
	간접비									
	소계									
기관명 (참여)	직접비									
	간접비									
	소계									
합계	직접비									
	간접비									
	합계									

1-4. 비목별 예산편성 총괄 현황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참여기관 전체의 당해연도 편성현황 기재

※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비고
1차년도 (20)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1차년 합계						
2차년도 (20)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비고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2차년 합계						
총 수행 기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총 합 계						

1-5. 1차년도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1-5-1. 주관기관 예산편성 현황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1-5-1양식을 활용하여 '1-5-2, '1-5-3 등으로 각각 기재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 : 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천원

① 인건비 :　　천원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해야 함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연봉 총액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 (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내부)									
기존 인력 (외부)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 (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박사후 과정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이하			1,000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비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비	구입							
	임차							
	통합관리비							
합 계								

④ **연구재료비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횟수 (수량, 건)	단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 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000,000 등					
	시약・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경비	000,000 등					
합 계							

⑤ **연구활동비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0000 참석 등			
	국내여비	시내/외 교통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000,000 등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도입비	000전문가 활용, 000기술도입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000 의뢰, 000 분석 등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000, 000 등			
	연구과제 운영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			
합 계					

* 연구과제운영비는 수행기관별 직접비(현물포함)의 5% 이하로 산정(수행기관 전체의 합계는 연차별 1천만원 이하로 계상)

⑥ **연구수당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수당				
합 계				

다.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라. 현물출연(기자재/시설/장비) 내역

※ 협약 시 현물출자확약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No.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일자	구입금액 (천원)	장부가액 (천원)	출연금액 (천원) (20%이하)
1					
2					
3					
4					
5					
6					
7					
8					
9					
합 계					

작성 Point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경우를 말한다.

○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비영리법인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table>
<tr><th>구 분</th><th>산 정 기 준</th></tr>
<tr><td>내부인건비</td><td>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세부 산정기준</th></tr>
<tr><td rowspan="2">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td>연봉제 적용기관</td><td>▪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r><td>연봉제 비적용기관</td><td>▪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td></tr>
<tr><td colspan="2">중소기업, 대학 등</td><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r><td colspan="2">개인사업자 대표</td><td>▪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707천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17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td></tr>
</table>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td></tr>
<tr><td>외부인건비</td><td>
<table>
<tr><th>구 분</th><th>세부 산정기준</th></tr>
<tr><td>외부기관에 소속된 자</td><td>▪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단, 기업,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 계상불가</td></tr>
<tr><td>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td><td>▪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r><td>기 타</td><td>▪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able>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td></tr>
</table>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기업의 경우 계상할 수 없다. 학생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table>
<tr><th>세 목</th><th>산 정 기 준</th></tr>
<tr><td>학생
인건비</td><td>
<table>
<tr><th>구 분</th><th>세부 산정기준</th></tr>
<tr><td>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대학</td><td>▪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td></tr>
<tr><td>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대학</td><td>▪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able>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td></tr>
</table>

< 연구시설.장비비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 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참역기관 등)

가)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획서에 반영된 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라)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 연구재료비 >

가)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나)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국내·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현지 답사 비용, 해외학회 참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회계감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전문가 활용비 및 교육훈련비 등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마)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바) 연구과제운영비

① 연구과제운영비는 수행기관별 직접비(현물포함)의 5% 이하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운영비의 합계는 연차별 1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회의비, 초과근무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 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③ 회의비는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④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수당 >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 및 학생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접비]

○ 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포함한 연구보안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 등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④ 기술보호경비(연구보안관리비 포함)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부담 비용(컨설팅, 시스템구축비, 보안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비, 조정·중재 수수료 등)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1-6. 2차년도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1-6-1. 주관기관 예산편성 현황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1-6-1양식을 활용하여 '1-6-2, '1-6-3 등으로 각각 기재

2. 국비(지방비)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합 계
1차년도 (20XX)	국비(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2차년도 (20XX)	국비(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합계	국비(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작성 Point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별 예산 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수행기관의 역할 및 연구과제 개발내용과 사업비 편성 내용이 일치하는가?

Ⅳ. 수행기관 현황

【작성방법】
○ 수행기관별로 작성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나누어 작성

(비영리기관용)

기 관 구 분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천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HP)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각각의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반드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락처 등 기재

(영리기관 기업용)

1. 기관명 :

1-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부지(㎡), 건물(㎡)		
	공장	(-) 부지(㎡), 건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 (국적)	
업 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mail	

※ 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택 1

1-2. 회사연혁

년월일	주 요 내 용

1-3.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합계						

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xx	20xx	과 목	20xx	20xx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매출총이익		
자산총계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총운영비용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영업이익		
			기타이익 세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1-5. 주주구성

총 주 식 수	천주
주당액면금액	원

성 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합 계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table>
<tr><td>부 처 명</td><td colspan="2">중소벤처기업부</td><td>R&D 사업명</td><td colspan="2">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td></tr>
<tr><td>과 제 명</td><td colspan="5"></td></tr>
<tr><td>주관기관</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연구책임자명</td><td></td></tr>
<tr><td>제안기술의 목적 및 효과</td><td colspan="5">(예시) 계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연습이 가능하며 정면 모니터를 통해 헤드업 교정이 가능한 실내 골프 연습장치</td></tr>
<tr><td rowspan="4">제안기술 구성요소</td><td>A</td><td colspan="4">그린 경사 측정 회로 기술 : MEMS 기술을 활용</td></tr>
<tr><td>B</td><td colspan="4">부착기구 : 퍼터의 모델과 브랜드에 관련 없이 탈부착이 가능한 부착기구 개발</td></tr>
<tr><td>C</td><td colspan="4">소프트웨어 : 자동으로 인지하여 측정하는 자동 경사 측정 소프트웨어</td></tr>
<tr><td>D</td><td colspan="4">zero gravity : 부착 방향과 위치, 모양에 자동으로 파악하여 zero gravity 평면을 구현</td></tr>
<tr><td>검색 키워드 /검색식</td><td colspan="5">키워드 : 골프, golf, 연습, 퍼팅, 시뮬레이션, 시준, 기울기, 그래버티, 그레버티, gravity
검색식 : (골프*golf)+(연습*퍼팅)+(그래버티*그레버티*gravity)
AND='*'(교집합), OR='+'(합집합), NOT='*!'(빼기), 연속단어='adj'
☞ 검색식 작성방법 안내[별첨] 자료 참고</td></tr>
<tr><td>선행 기술정보</td><td colspan="5">1. 골프채용 시준 장치 - 김경진 (주)로보메이션(구 아이오테크)
등록 번호: 10-0491489 등록 일자: 2005년05월17일
2. 기울기 센서를 부착한 골프 퍼터 - 조욱제
등록 번호: 10-0586314 등록 일자: 2006년05월26일
제안 기술 내용과 유사한 귀 기업의 지재권정보 뿐 아니라 타 연구단/기업이 보유한 지재권정보를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작성(검색방법 안내)
1. www.kipris.or.kr 접속
2. 상단메뉴 'SEARCH' 내 해당항목 클릭(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3. 상단 검색창에 작성된 검색식 입력(왼쪽 동의어 사전, 유사검색식, 분류통계, 행정처분 등 추가항목 활용)
4. 검색결과 개별 특허를 클릭하여 상세보기 가능
5. 검색된 특허는 상단의 '엑셀저장, 인쇄' 메뉴를 활용하여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 KIPRIS Home 화면 오른쪽 아래에 초보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동영상 매뉴얼) 참조</td></tr>
</table>

문헌번호	선행기술 요지	기술요소**	관련도***
한국공개특허 2002-0012466	인체의 호흡기에 흡입되는 바이러스 및 미세오염물 차단을 위해 **콧구멍에 삽입하는 필터형 비강 마스크로서, 코에 삽입하여 바이러스 및 미세오염물질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필터에 의해 걸러진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을 살균 할 수 있는 나노웹이 포함되어 있음 *** 관련도 있는 부분 밑줄** (기술요소 작성방법) 앞페이지 제안기술 구성요소 구분기호 (A, B, C, D)를 기재 (관련도 작성방법) 선행기술과 각 기술요소별 관련도에 따라 O : 매우 유사, △ : 일부 유사, × : 유사성 없음 기재	A B C D	O △ △ X
세부기술 유사점 및 차이점 (기술요소 VS 선행기술)	**[유사점]** **(기술요소A)** 관련문헌은 각종 현장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점을 기재하고 있어, 제안기술의 재난 유형별 표준행동절차를 수립하는 점과 유사함(조사된 전체 선행특허자료들과 본 과제 기술요소A의 유사점 작성) **(기술요소B)** 관련문헌은 각 시나리오를 저장하고, 재난현장의 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 기술을 포함하는 점에서 제안기술의 시나리오 기반의 행동절차 가이드를 지원하고, 각 공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술과 유사함 **[차이점]** **(기술요소A)**관련문헌은 제안기술의 표준 프로토타입을 수립하는 기술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탐지기 및 소화시설을 배치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차이가 있음(조사된 전체 선행특허자료들과 본 과제 기술요소A의 차이점 작성) **(기술요소B)** 관련문헌은 제안기술의 재난 확산예측 모델에 대응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기재함**		
종합 결론	* 선행기술과의 유사점이 있음에도 제안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논리 작성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 단, 다년도 과제일 경우에만 작성 (단년 과제는 작성 불필요)

【별표 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별표 2】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 : Nd-Fe-B계 자석개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1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50	860	870	
	보자력(Hic)	kA/m	16	940	95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40	26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3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35	7.35	7.4	
	전기저항	Ω·m	12	1.3	1.35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40	240	245	
	인장강도	MPa	5	79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 : 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day	배 기	g/kw.hr	회전정밀도	㎛
BOD	㎎/ℓ	오일압력	Kg/㎠	진 원 도	㎛
탁 도		파종속도	m/hr	표면거칠기	Rmax
폐수배출량	㎥/day	분 해 능	m	주축속도	rpm
COD	㎎/ℓ	측정범위	mm	절삭속도	m/min
생산속도	m/min	측정속도	m/sec	절삭길이	mm
포장속도	PCS/min	stroke	m/m	이 송 량	mm/rev
공급속도	PCS/min	정 밀 도	m/m	토 오 크	N.m
신 장 률	%	공 압	Kg/㎝	동 심 도	㎛
누 설 량	㎤/min	작동전압	V	흔 들 림	㎛
최고사용압력	Kg/㎠	소비전류	mA	가공시간	min/EA
응답시간	sec	작동속도	m/sec	급이송속도	m/min
유 속	m/s	작동온도	도	크 기	mm
소 음	dB	회 전 각	도	허용하중	㎏
조향각도	도	토 크	kgf.m	최소설정이송량	mm
작 동 력	kgf	정격유량	l/min	위치결정정도	mm
회전속도	rpm	최고사요압력	kgf/㎠	반복정도	mm
출 력	ps/rpm	중 량	kgf	분 할 각	도°
연료 소비율	g/ps.hr	직 각 도	㎛	공구보유수	EA
평 행 도	㎛	이송오차	㎛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MPa	용 착 량	δ/min	용접속도	m/㎜
항복강도	MPa	고온강도	kgf/㎟	입 자	㎛
경 도	Hv	피로강도	MPa	순 도	%
연 신 율	%	정 밀 도	㎜	내구성	
밀 도	g/㎤	통 기 도		Sppatter발생량	g/min
생산성향상	개/cycle	표면조도		Fume발생량	g/min
주입속도	㎜/sec	내 열 성	℃	용착효율	%
열전도도	W/m.k	내마모성	g/㎟	Slag 박리성	sec/m
전기전도도	m/Ω·㎟	내충격성	㎏/㎟	불순물 함량	%
회 수 율	%	저온강도	㎏/㎟	압출비	
송 급 성	m/Min	성능평가		압출속도	m/min
열팽창계수	10-6/k	가스발생량		탄성률	GPa
내식성	g/㎟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m/min	데니어	denier	흡수율	%
방사량	ton/day(㎏/horu)	강도	g/d	사속(초속)	m/min
인장강도	kgf/㎟	밀도	g/㎤	견뢰도	급
연실율	%	LOI		꼬임수	Tn
신 도	%	여과효율	%	통기도	CC/㎟
압력손실	%	YPM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	반응도	%	P H	
수 율	%	회수율	%	비 중	
중합도(DP)		점화율	%	밀 도	g/㎤
아민가	%	분자량	g/mol	점 도	cps
애 가	%	고형분압량	wt%	유리전이온도	℃
역 가		저장안정성	rodnif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2 GHZ
Output Power	≥ 0 dBm
Supply Voltage	3.0 Volts
C/N Ratio	≥ 105 dBc
S/N Ratio	≥ 50 dB
Spurious Level	20 dBc Max
Package	SMD TYPE
Substrate	Ceramic
Size	0.13cc
Operation Temperature	-30 ~ +80℃
Output Impedance	50Ω
Tuning Voltage	0.5 ~ 2.3V
Current Consumption	6㎃ 이하
Puling Figure	300kHz 이하
Pushing Figure	300kHz 이하
Temperature Stability	≤ 2 MHz

[양식 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지역명						
과 제 명						
기관명			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 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대표자	000000 -0000000	8자리		
		총괄책임자	000000 -0000000			
		참여연구원	000000 -0******			
		참여연구원	000000 -0******			
		참여연구원	000000 -0******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관리
④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⑤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사후관리
⑥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⑦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관 식별정보, 고용정보 등

3.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 및 지역사업평가단이 본인(또는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제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에 선정될 경우 위 기업(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직인) / (인감)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의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다음의 수행가능과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가'의 경우 '해당', '수행가능'의 경우 '비해당'에 체크)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상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2)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의 경우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아니함.

3) 전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4)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5)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지역산업육성사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기업혁신성장 지원사업,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사업,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사업

▸ 신청과제의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기업(기관)명 : (직인)

대표이사(기관장)명 : (인)

[양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양식 4]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동의서

지역명		**기관명**	
과 제 명			
대표자명		**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위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에서 사업화 성과 중심의 R&D 지원을 위해 경상기술료 제도를 전면 도입 및 의무적용하고 경상기술료 산정시 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직인) / (인감)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양식 5]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별첨)			
사 업 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접수번호		검토(확인)일	
과 제 명			
신청기관(주관)		총괄책임자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가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	+5		
	○ 정부지원사업(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5		
	○ 최근 3년 이내에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단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기술사관육성사업 및 대학연계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1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1기업 1백만원)에 참여한 기업	+1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다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2		
	○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성공판정 이후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1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3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1		
	○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		
	○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2		
	○ 전년도(2019년) 희망이음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기업	+1		
소 계(A)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감점	○ 다른 과제에서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평가 결과를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로서, 평가결과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소속 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포함)으로 신청하는 경우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소 계(B)				
합 계(A+B)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인란은 관리기관이 현장실태조사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주관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신청자(총괄책임자) : (인)	검토자(관리기관) : (인)

[양식 6]

<table>
<tr><th colspan="6">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th></tr>
<tr><td rowspan="4">기업개요</td><td>기업명</td><td colspan="2"></td><td>대표자명</td><td></td></tr>
<tr><td>기업규모</td><td colspan="2">중견( ) 중소( )</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2"></td><td>업종</td><td></td></tr>
<tr><td>채용담당</td><td colspan="4">(성명·직위) (부서) (연락처)</td></tr>
<tr><td rowspan="8">채용계획</td><td>근무지</td><td colspan="4"></td></tr>
<tr><td>총 채용인원</td><td colspan="4">명</td></tr>
<tr><td>신규 채용인원</td><td colspan="4">명</td></tr>
<tr><td>채용분야</td><td colspan="2">연구·개발</td><td colspan="2">사업화·마케팅·기타</td></tr>
<tr><td>채용인원</td><td colspan="2">정규직 ○명, 계약직 ○명</td><td colspan="2">정규직 ○명, 계약직 ○명</td></tr>
<tr><td>채용시기</td><td colspan="2">′ 년 월(명), ′ 년 월(명)</td><td colspan="2">′ 년 월(명), ′ 년 월(명)</td></tr>
<tr><td>자격요건</td><td colspan="2">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td><td colspan="2">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td></tr>
<tr><td>월급여액</td><td colspan="2">원</td><td colspan="2">원</td></tr>
<tr><td colspan="2">직무내용</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2)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 공고문

– 제주지역 지원계획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79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수정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7호(2020.1.31.)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오니, 지역스타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0. 수정내용

□ 공고·접수기간 연장

수정 전	수정 후
[기존 공고문 본문 p.9]	[수정 공고문 본문 p.10]
8.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20.1.31. ~ '20.3.2.	8.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20.1.31. ~ '20.3.9.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3(화) 18:00까지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10(화) 18:00까지

□ 지역별 사업설명회 취소

* 사업설명회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함

※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7호 내용과 동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스타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430억원(국비 258, 지방비 172)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신청접수	'20.2월~3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20.3월~4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 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430억원 (국비 258억원, 지방비 172억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기업성장전략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제안형(자유공모) R&D과제 지원

<고용의무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이내
* **('19년 선정 스타기업)** 단년 또는 다년 지원 / **('18년 선정 스타기업)** 단년 지원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12.(21개월)
  * 일괄협약 과제로서 1차년도 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예정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03.(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필요성	○지원 필요성	○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기술성	○개발 개요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목표 및 내용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사업화 계획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개발결과의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역 발전 효과	○일자리평가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
	○산업생태계 중요도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 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경영 능력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참여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연구원이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비 편성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역스타기업육성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1,955	1,304	3,259
대구	1,955	1,304	3,259
대전	1,955	1,304	3,259
광주	1,955	1,304	3,259
울산	1,955	1,304	3,259
강원	1,955	1,304	3,259
충북	1,955	1,304	3,259
충남	1,955	1,304	3,259
전북	1,955	1,304	3,259
전남	1,955	1,304	3,259
경북	1,955	1,304	3,259
경남	1,955	1,304	3,259
제주	1,950	1,300	3,250
세종	400	267	667
합계	25,810	17,215	43,025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단, 과제에 참여하는 ‘기술전문기업(ESP)’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30% 반영)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가·감점 등(예시)
-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사업계획서 접수시, 비R&D 지원 및 전담PM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 등 자료 제출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단,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라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31.		~'20.3.9.		~'20.3월중		~'20.3월말		~'20.4월중		~'20.4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1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8, 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9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regional_industry)

□ 지역별 관리기관(오프라인 접수처)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315-9247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053-818-9591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042-864-4275, 4278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8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2655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3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7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7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별관	061-339-9725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04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055-259-341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5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별도의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2020년 지역스타기업육성(R&D) 제주지역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 지원금 2억원당 1명의 신규 채용 의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2019년 및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현황 이하【붙임】참조 / 단, 지정취소된 스타기업은 지원 불가

○ 참여기관 : 제주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 자유공모

구분	공모방법	지원규모	지원기간*	
			'19년 지정 스타기업	'18년 지정 스타기업
자유공모	▶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연 2억원 내외	(단년) 12개월 또는 (다년) 21개월	(단년) 12개월

* **('19년 지정 스타기업)** 단년 또는 다년 지원 / **('18년 지정 스타기업)** 단년 지원

□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총 32.50억원 (국비 19.50억원, 지방비 13.00억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연간 2억원 내외
사업기간	단년 과제	2020.04 - 2021.03 (12개월)
	다년 과제	(1차년도) 2020.04 - 2020.12 (9개월) (2차년도) 2021.01 - 2021.12 (12개월)
주력산업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관광콘텐트, 청정헬스푸드, 기타산업군 중 택1

□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함

※ 문의처 :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425

【붙임1】 제주지역 2019년 지정 지역스타기업 현황

지역	번호	기업명
제주	1	(주)비케이바이오
제주	2	(주)대륜엔지니어링
제주	3	주식회사 일해
제주	4	(주)대은
제주	5	주식회사제키스
제주	6	(주)한성기전
제주	7	(주)대한축산유통
제주	8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제주	9	비비트리 주식회사
제주	10	(주)정우계전

【붙임2】 제주지역 2018년 지정 지역스타기업 현황

지역	번호	기업명
제주	1	㈜두래
제주	2	㈜보타리에너지
제주	3	㈜아인스에스엔씨
제주	4	㈜제주사랑농수산
제주	5	㈜씨에스
제주	6	㈜한국비엠아이
제주	7	한국에너지종합기술(주)
제주	8	㈜휴럼
제주	9	㈜제주패스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사업계획서 · 제출 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개요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과제정보,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Part Ⅰ**	**사업계획서 Part Ⅱ**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본양식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본양식 **사업계획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신청 과제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오프라인 제출

- 사업신청 서류에 대해서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신청 관련 서류 내역

①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내역 1(양식 작성·업로드 및 제출)

연번	서류	시스템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비고 (별지)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사업계획서(Part Ⅰ, Part Ⅱ)	필수	1부(원본)	필수	10부(주관기관) (원본 1, 사본 9)	본양식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필수	1부(수행기관별)	[양식 1]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1부(수행기관별)	[양식 2]
4	SMTECH 시스템 활용 동의서	-	-	필수	1부(수행기관별)	[양식 3]
5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동의서	-	-	필수	1부(영리기관별)	[양식 4]
6	기업성장전략서	-	-	필수	1부(주관기관)	-
7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	-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양식 5]
8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필수	1부(영리기관별)	[양식 6]

※ 본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작성 및 제출
※ 6.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서' 등 제출
※ 7. 일자리 안정자금 선정 증빙자료, TIPS, VC, 엔젤 등 민간투자 유치 관련 증빙자료 등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제출
※ 8. 연평균 국비(지방비) 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필수

②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내역 2(서류 발급 후 제출)

연번	서류	오프라인 제출		비고
		구분	내용	
1	최근년도 결산 확정 재무제표	필수	1부(영리기관별) (표준재무제표증명)	-
2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필수	1부(수행기관별)	-
3	사업자등록증	필수	1부(수행기관별)	-

※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일 경우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별도 제출
※ 1. 최근년도('18·19) 결산(확정) 재무제표 제출하되 '19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 기준 '19년 결산(확정)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3. 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Part II)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각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10부(원본1, 사본9)를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 가능)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고용창출조건 참고

<고용의무조건>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국비(지방비)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예시 >

국비(지방비)	고용인원
2억원 이하	1명 이상 의무고용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2명 이상 의무고용
4억원 초과 6억원 미만	3명 이상 의무고용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성과 산정기준(안)

① R&D 관련 매출(수출)액

○ **(R&D 관련 매출(수출)액의 정의)** R&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부품)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함

○ **산정방법**

▸R&D 관련 매출액 = ∑(제품별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기술기여도)

*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 개발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부가세납입·수출실적증명원 & 주관기관 및 매출발생 기업 대표가 R&D관련 매출액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② 고용 창출

○ **(고용창출의 정의)** R&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

○ **(산정방법)** R&D 과제 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채용된 신규 연구개발 인력 외에 신규 생산인력, 신규 기타(마케팅 등) 인력을 포함

▸고용창출 : ∑(신규 연구개발인력x기술기여도(참여율)) +
∑(신규 생산인력x기술기여도) + ∑(신규 기타 인력 x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입사일과 현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주관기관 및 고용창출기업 대표가 R&D과제수행의 관련성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서>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아래 표지는 전산접수 시 자동 생성 및 포함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말 것(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불요)**

1) 과제 번호		2) 공고 번호		3) 기술 분류	비고	산업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국가중점과 학기술분류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사업계획서

자유공모 ◎ 지정공모 ◎ 품목지정 ◎

공개여부 가 ◎ 부 ◎

신규인력 의무채용 대상 ◎ 비대상 ◎

4) 지역		**4-1) 주력산업명**		
5) 과제명				
5-1)제품/서비스명				
6) 주관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e-mail			
7)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e-mail			
8)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20 . . ~ 20 . . (개월)			

9)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민간(수요처) 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10)참여기관				
	기업(기관)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목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책임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구 분	기업(관) 명	대 표 자	부서/학과	책 임 자	전 화
11) 수요처					
12) 위탁연구기관					

13)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 · 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14)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지역산업육성사업 규정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목 차

Part Ⅰ.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
3. 경영현황표 ·····
   3.1 주관기관 ·····
   3.2 참여기관 경영 현황 ·····
4. 개발기간 ·····
5. 기술개발 개요 ·····
   5.1 최종목표 요약 ·····
   5.2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
   5.3 키워드 ·····
6. 보안등급 신청 ·····
7. 기술분류 ·····
8. 수행기관 정보 ·····
   8.1 수행기관별 정보 ·····
   8.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
9. 참여연구원 ·····
10. 사업비 내역 ·····
   10.1 연차별 사업비 요약 ·····
   10.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
   10.3 사업비 비목별 총괄 ·····
11.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연구시설 및 장비(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
1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
   12.1 해당 유형에 √ 체크 ·····
   12.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

Part II.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Ⅰ. 기술개발 계획 ·····
1. 기술개발 개요 ·····
2. 기업성장전략 ·····
3.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
4. 추진체계 ·····
5. 연구자원 현황 ·····
6. 최종목표 및 개발 내용 ·····
6-1. 최종목표 ·····
6-2.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
6-3. 기대효과 ·····

Ⅱ.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1. 사업화 목표 ·····
2. 사업화 계획 ·····
3. 지역발전효과 ·····

Ⅲ. 사업비 ·····

1. 사업비 세부내역 ·····
2. 국비(지방비) 배분 및 민간부담금 분담내역 ·····

Ⅳ. 수행기관 현황 ·····

Part Ⅰ :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 고	
세부공고	
지정공모(RFP) 명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해당시)	
과 제 명	
제품/서비스명	
지역(주관기관)	
관리기관	
주력산업분류	

작성요령

○ 사업분류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공 고 : 선택한 사업분류와 관련된 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세부공고 :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 공고의 세부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지정공모(RFP) 명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해당시) : RFP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을 검색 후 선택하여 입력
○ 과 제 명 : 수행할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력
○ 제품/서비스명 : 기술개발 최종결과물(제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 입력
○ 지역(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소재 지역을 입력
* 지역 입력시, 시스템에서 '관리기관'이 자동으로 선택
○ 주력산업분류 : 각 지역별 해당되는 주력산업 입력(사업계획서 양식(PART II) [별표1] 참고)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납품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작성요령

○ “Part Ⅰ : 시스템 직접입력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주관기관 기업명, 대표자 및 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입력

■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① 대표자, 책임자, 실무담당자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② 기관등록의 경우 대표자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업정보 등록

- 기관의 대표자로 접속하여도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를 등록

②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가 중복이라 표시될 경우 : 전산접수 문의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③ 등록하려는 사업자명이 법인실명인증이 실패할 경우 : 전산 경고창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한국신용평가정보)

■ **조회되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틀린 경우**

① 해당 회원이 직접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수정

※ 주관기관 등의 주소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됨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 주소를 반드시 명기할 것

3. 경영현황표

3.1 주관기관

업 체 명 / 구 분		○○○○○(주) (20 년 결산기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일반, □ 외감))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3.2 참여기관 경영 현황 (해당 시에만 작성)

※ 주관기관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작성요령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최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발기간

※ 공통 적용양식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20 . 04 . 01 ~ 20 . . (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2020 . 04 . 01 ~ 20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개월)

작성요령

○ 해당 연차별 개발기간을 입력
○ (단년 과제일 경우) 개발기간 : 2020.04.01. ~ 2021.03.31.
○ (다년 과제일 경우) 개발기간 : (1차년도) 2020.04.01. ~ 2020.12.31. / (2차년도) 2021.01.01. ~ 2021.12.31.

5. 기술개발 개요

5.1 최종목표 요약

○ ○

5.2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1차년도	○
2차년도	○

5.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목표 및 연차별 개발목표 요약 : 4,000Byte(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전산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5.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6. 보안등급 신청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작성요령

○ 보안등급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
○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시 보안등급 여부를 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

7. 기술분류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신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연구분야)			
국가과학기술분류(적용분야)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작성요령

○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연구분야, 적용분야),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전략분야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의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본 과제의 해당분류를 선택하여 입력

※ 기술분류 입력은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신청과제의 핵심개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각 기술분류의 세부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8. 참여기관 정보 (해당시,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등)

8.1 참여기관별 정보

구 분	수행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참여기관4			

작성요령

○ “2.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의 입력방법에 준하여 참여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 각 수행기관은 검색 전에 반드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방법은 2.항 작성요령 참조)

8.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인 과제 포함)

○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과제 실적	
							완료	개발중	신청중	매출	고용창출
1											
2											
3											

○ 참여기관(해당시)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최종목표 및 핵심내용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과제 실적	
							완료	개발중	신청중	매출	고용창출
1											
2											
3											

작성요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과거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 작성 (신청중인 과제도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매출 및 고용창출 결과 작성
○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표시
○ 완료과제 실적 : 공고일 기준 개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실적

9. 참여연구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신규채용여부	청년인력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총액 (천원)
				전공	학위	취득년도	종류	취득년도					
주관기관				전자	석사	2000		2000	X	X	30%	-	40,000
	채용예정	-	-	공학	석사			-	o	o	50%	-	24,000
참여기관 (해당시)													
참여기관 (해당시)													
외부참여연구원 (해당시)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위탁연구기관 제외)

소속	성명	구분	건수	사업명	개발기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2				
		참여 연구원	3				
		책임자					
		참여 연구원					
		책임자					
		참여 연구원					

작성요령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본 과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 참여연구원의 자격증은 개발과제에 관련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함

○ 주관기관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세부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경우를 의미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청년인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 주관기관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이므로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제를 모두 기재

○ 작성 제외과제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 · 평가연구 또는 시험 · 검사 · 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정부출연금 3억원 이하과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정부출연금 50백만원 이하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주관기관은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참여제한자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사업비 내역

10.1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금액					
	%					100%
2차년도 (20)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예시) 총사업비가 300백만원이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70%, 민간부담금이 30%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300백만원 = 정부출연금 (210백만원이하, 70%이하) + 민간부담금 (90백만원이상, 30%이상)
- 민간부담금 (90백만원이상) = 민간부담현금 (36백만원이상, 40%이상) + 민간부담현물 (54백만원이하, 60%이하)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해당 시에만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민간 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기관	1차년도				
	2차년도				
	계				(%)
참여기관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계				(%)
참여기관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계				(%)
합 계					(100%)

10.3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차년도 (20)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당시)					
	참여기관 (해당시)					
1차년 소계						
2차년도 (20)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당시)					
	참여기관 (해당시)					
2차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직접비, 간접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각 항목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11.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연구시설 및 장비(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구 분	연차	시설 및 장비명	도입 예상금액* (천원)	담당자	규 격	수량	주요 사양	사용 분야	설치 장소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장비									

작성요령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시설 및 장비명, 도입 예상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

○ 기관(기업)명을 명기하고, 그 기관의 과제 참여 형태(주관기관, 참여기관 등)를 병기

○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1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12.1 해당 유형에 √체크 (□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

작성 요령

○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해 아래 2가지 중 하나 선택
- 신제품개발 유형 : 주관기관이 판매해 본 적이 없는 제품 개발
- 기존제품기능향상 : 주관기관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능향상 등

○ 기술개발결과물 기여도(%)를 계상하기 위한 기준임

12.2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신청사업 정부출연금 비중	자동계산

(단위 : 백만원, %)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사업화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100)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예상 경상기술료	연도별 예상 정률기술료 금액 (백만원)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예상 정률기술료 총액 (백만원)		자동계산				

※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사업화 성과 중심의 R&D 지원을 위해 경상기술료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경상기술료 산정시 중소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기술료 산정시 중소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업의 총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 개발기술의 실시(사업화)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이 서비스 등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상품 매출액을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C=B/A) :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이 예상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경상기술료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의 개념 :** 완료 판정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되,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고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나,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점유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절차 간소화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기술료 매뉴얼” 참조

Part II.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1)과제번호		2)지역		3)주력산업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사업계획서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유 형	중소기업		
6)총괄책임자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19××.××.××
	부 서		전 화	×××-××××-××××
	직 위		팩 스	×××-××××-××××
	E-mail		휴대전화	×××-×××-××××
7)총 수행기간	2020.04.01. ~ 2021.03.31. (12개월) / 2020.04.01. ~ 2021.12.31. (21개월)			

8)사업비(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국 비(지방비)			
	민간부담 현금			
	민간부담 현물			
	합 계			

9)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	
			×××-××××-××××	
	참여기관·기관수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대학( )개, 연구소( )개, 기타( )개		

10)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
	부서/직위		휴대전화	×××-××××-××××
	E-mail		팩 스	×××-×××-××××
11)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2)핵심키워드	국문	○○○○, ○○○, ○○○, ○○○, ○○○		
	영문	○○○○, ○○○, ○○○, ○○○, ○○○		
13)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인력 의무채용에 동의합니다 □			
14)고용창출	당해연도 채용 예정인원 ( )명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면서,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 (부서명) (성 명)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접수번호 : 전산 접수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기재

2) 지역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기재

3) 주력산업명 : 본 양식 내 [별표1]의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를 기재 (ex. 정밀의료)

※ 해당하는 주력산업이 없을시 "기타"로 기재

4) 과제명 : 기술개발 과제의 과제명 기재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SMTECH)상의 기관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

○ 주관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SMTECH)상의 개인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

7) 총수행기간

○ 개발사업 전체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8) 사업비

○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지방비)와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 시 정한 국비 지원 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9) 참여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SMTECH)상의 기관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할 것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10)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1) 보안등급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고한 후 해당란 선택

12) 핵심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 5개를 국문, 영문으로 기재

13) 신규인력 의무채용

○ 본 사업은 국비(지방비) 2억원당 신규 인력 1명 의무 채용

※ 국비(지방비) 1.5억원(2억원 이하) → 1명 의무채용 / 국비(지방비) 2.5억원(2억원 초과) → 2명 의무채용

14) 고용창출

○ '고용창출형' 과제지원이므로 해당 과제에서 총 수행기간 채용예정인원 기재

(채용 예정인원 = (협약서류)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및 신규인력 채용확인서 = 기대효과 고용효과 인원)

※ **제출일,** 주관기관장 및 총괄책임자 **서명**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주관기관명 및 대표자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요 약 서 (초록)

사업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협약기간	2020.04.01. ~ 2021.03.31. (12개월) / 2020.04.01. ~ 2021.12.31. (21개월)		
사업기간 재원조달			
사업비 (천원)	국 비(지방비)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 사업목표

사업목표				
비전과 전략				
수행기관				
기관별 추진 전략	1차 년도			
	2차 년도			

2. 기술개발목표

평가지표(항목)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기술수준	개발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3.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화매출액		
지적재산권		
신규채용		

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수행기관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	○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출시 '※'의 작성요령 설명 및 '작성 Point'는 삭제

Ⅰ. 기술개발 계획

1.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 제품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개념 설명 (완료 후 이미지 등 포함)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개발 필요성 제시
※ 기술개발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자사(주관기관)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객관적 수준을 국내외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시
※ 기존 제품(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작성 Point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 및 국내·외 동향을 인식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창의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는가?
○ 기술적 해결방법이 창의적이며,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는가?
○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수준이 국내외 기준으로 제시되었는가?

2. 기업성장전략

2-1. 기업성장전략 개요

※ 전담PM 매칭을 통해 기획된 “기업성장전략” ~4p 내로 요약 제시(기획성장전략서 별도 첨부할 것)

2-2. 글로벌강소기업 성장가능성

※ 국내외 기준으로 시장에서의 기업 또는 제품 경쟁력 또는 수준 제시

※ 지역우수기업에서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제시

2-3. 기업성장전략과 본 기술개발의 연관성

※ 기업성장전략상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시

작성 Point

○ 기업성장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은 적절한가?

○ 글로벌강소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3.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3-1. 기술개발 경험

3-1-1. 기술개발 수행 경험 및 사업화 실적

※ 반드시 수행기관의 기술개발, 사업화, 특허 실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관련 요령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예)중소벤처 기업부	주관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예)중소벤처 기업부	주관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천원)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00.00~ '00.00		%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천원)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00.00~ '00.00		%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을 모두 기재

(3) 사업화 실적

기관명	개발제품명	제품설명	매출액(천원)		수출액(천원)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20 년	

※ 기관별로 최근 5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4) 특허 출원/등록 실적

기관명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기관명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 기관별로 최근부터 5년간 특허실적 모두 기재

3-1-2. 성공 및 실패경험

※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성공 및 실패 경험을 기술하고, 본 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서술

3-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예)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기술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부자원 활용 노력,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동, 시장조사, 선행특허조사 등

3-2-1. 사전준비 경과

※ 수행기관 간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준비 경과를 기재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20xx.xx.xx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 개요 : 특허현황 조사 · 주체 : 용역/특허정보연구원 · 목적 : · 성과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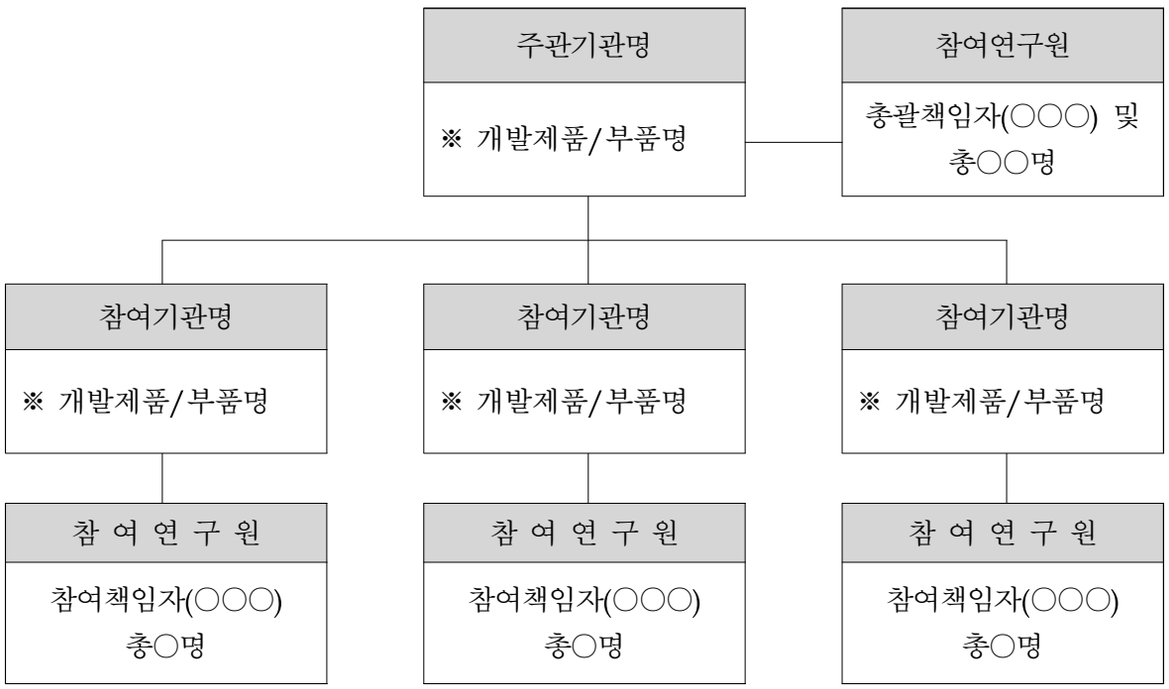
3-2-2. 과제 추진 관련 사전조사 내용

※ 시장조사, 고객니즈 파악 현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개
관련 전문가 Pool이 있는 경우 관련 Pool을 기재하고 활용계획 기재

작성 Point

○ 사업기획을 위해 외부 자원(대학, 연구소, 해외 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수행기관 간 사전 교류 및 협력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수행기관의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이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가?

4. 추진체계



※ 수행기관간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업무분장 현황>

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 • •
	• • •
	• • •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작성 Point

○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컨소시엄 내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5. 연구자원 현황

<참여연구원 현황>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5-1. 주관기관명 : ○○○○○○○○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 1*****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년도	SCI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기술개발과제 참여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 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예)중소벤처기업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연구원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청년 인력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 채용시기 : 20××.××	○	○

※ 신규채용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 청년인력 :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5-2. 참여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5-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5-3. 참여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5-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작성 Point

- ○ 책임자의 전공분야가 과제 내용과 부합하는가?
- ○ 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참여연구인력 구성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참여연구인력이 과제내용과 관련한 전문분야 인원으로 구성되었는가?
- ○ 참여연구원별 역할분담내용은 적절하며, 신규채용인원은 적절한가?

5-4.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2)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작성 Point

○ 수행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비는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 구입예정 장비는 본 과제를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6. 최종목표 및 개발 내용

6-1. 최종목표

6-1-1. 종합목표

※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재 (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최종목표		•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 기술적 성과 :		
연차 목표	1차년도 (20XX)			
	2차년도 (20XX)			
수행기관				
추진전략		• ○○○○개발 • ○○○○개발 • •	• ○○○○개발 • ○○○○개발 • •	• ○○○○개발 • ○○○○개발 • •
추진 내용	1차년도	• ○○○○구현 • ○○○○구현 • •	• ○○○○구현 • ○○○○구현 • •	• ○○○○구현 • ○○○○구현 • •
	2차년도			

6-1-2. 기술개발 목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현재 기술수준[3]	개발목표치		평가방법[4]
				1차년도 (20XX)	2차년도 (20XX)	
1.						
2.						
3.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현재기술수준을 작성하여 개발목표치와 비교가 가능토록 작성

주4)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참조)

6-1-3. 경제적 성과목표(사업기간내)

기관명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합 계	
	매출 (억원)	고용 (명)	매출 (억원)	고용 (명)	매출 (억원)	고용 (명)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경제적 성과목표만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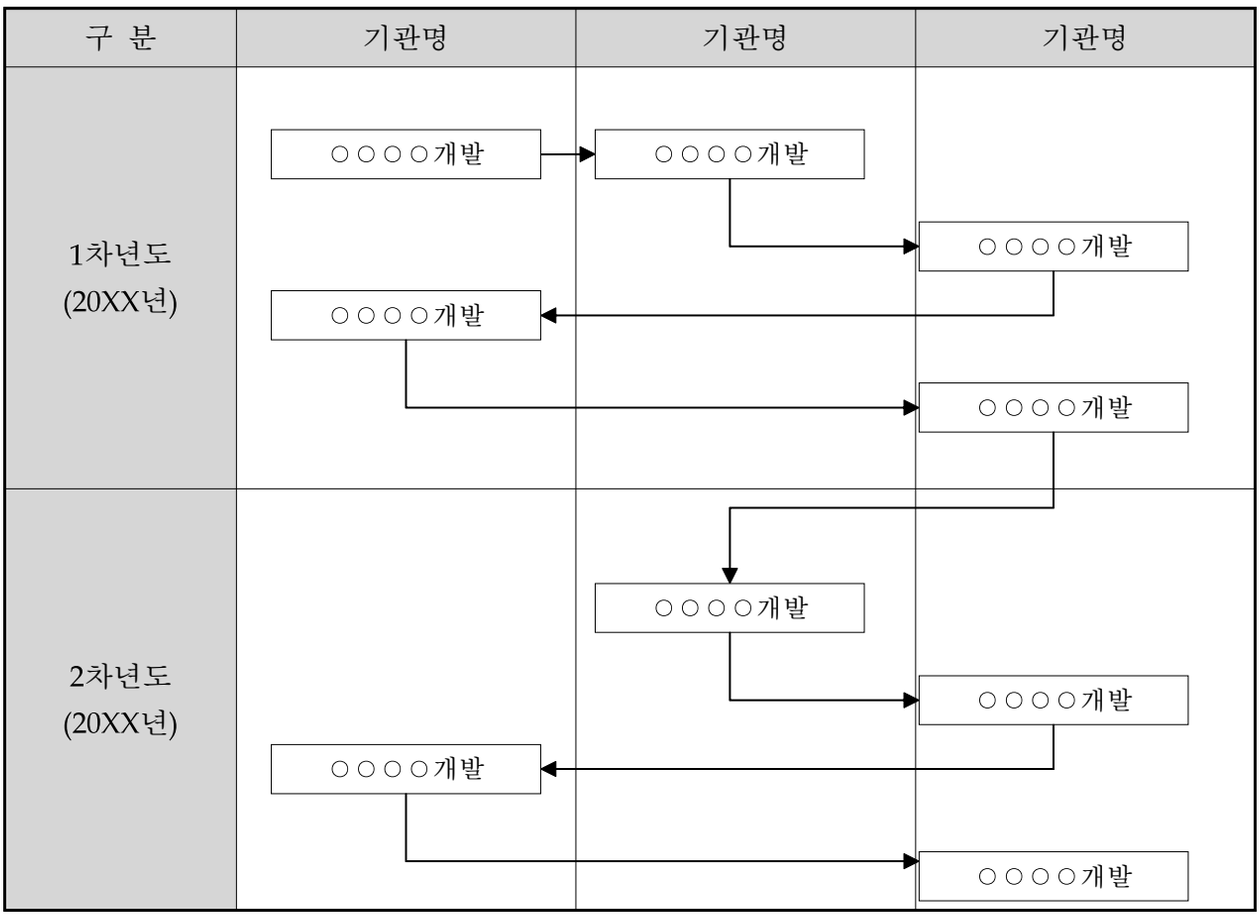
※ 자율지표는 동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되는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ex: 고용, 수출액, 투자, 시작품제작, 특허출원, 공정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등)

작성 Point

○ 목표는 도전적·정량적이며 경제적 성과목표는 타당하며 실현 가능한가?
(예) 세계최초, 국내최고 또는 창의적 목표 등

○ 종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6-1-4. 개발 내용



※ 개발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작성 Point

○ 과제간 기술융합을 통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 추진절차 및 기관별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6-2. 1차년도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 '6-2. 1차년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의 양식을 활용하여
'6-3. 2차년도 연차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작성 (2년 과제인 경우)

※ 수행내용을 기관별·담당역할별로 요약하여 설명 (아래 예시 참조)

> ex) ○○기업은 ~~~에 장착되는 ~~~와 ~~~ 및 ~~~~~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체화한 ~~~~을 설계하고 ○○기업은 구조해석을 통해 최적화 과정을 거쳐 완성
> 설계 완성된 ~~~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기업은 ~~금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은 벤치마킹을 통해 설계된 제품에 대한 구조해석을 추진
> 또한, ~~~~공법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을 ○○기업이 설계를 수행하며, ○○기업은 ~~~~와 연계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을 개발함과 동시에 제조된 ~~~을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 ○○○, ○○○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

6-2-1. 기술개발 목표

※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구분	수행기관	정량적 달성목표
○○○○개발		• ~~~ 함유량 : 제품 내 ~~~~함유량 ~~~~% 이하 • ~~~ 진공도 : ~~~진공도 00mmhg 이하 • ~~~ 경량화 : 기존 제품 대비 00% 감소

6-2-2. 세부 개발내용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과제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 시제품 제작방법(직접제작 또는 외주 등), 시기 등에 대한 계획도 기재요망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1) ~~~~~~~~~~~~~~~~~개발

(2) ~~~~~~~~~~~~~~~~~개발

(3) ~~~~~~~~~~~~~~~~~개발

6-2-3. 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 기술개발 목표에 따른 기관별 기술개발 내용을 기재하고 투입예상 사업비 기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가능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 ○○○○○○제작 - ○○○○○○○○○○분석 - ○○○○○○○○○○설계	• 장비임차비 3,000천원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 ○○○○○○설계 -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	

6-2-4. 추진일정(해당개월만 작성)

개발항목	개발내용 및 범위	기관명	1차년도(202X) (총수행기간까지 작성)									2차년도(202X) (총수행기간까지 작성)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성 Point

- ○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 ○ 수행기관 간 협력관계 및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 기술개발 일정 관리도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6-3. 기술적 기대효과

※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등 정량, 정성적 효과를 기재

※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기능향상 효과 기재

Ⅱ.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화 목표, 전략 및 기대효과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무, 마케팅, 생산 등 내외부의 관련 전문인력이 작성 또는 협의 후 작성 요망

1. 사업화 목표

1-1. 주관기관(지역스타기업)

1-1-1. 사업화 목표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						

※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은 과제종료 후 실시하는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며, 경상기술료 징수 근거로 활용 및 목표 달성 시 후속과제 참여에 가점 부여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상 매출액 및 점유비율과 해당 기술개발의 연관성 및 타당성 판단

※ 과제종료 후 최종평가 시 점유비율 최종 확정 예정

작성 Point

○ 사업화 목표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업의 총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 개발기술의 실시(사업화)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이 서비스 등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상품 매출액을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C=B/A) :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이 예상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매출액(B)은 점유비율(C)의 구체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활용

○ 예상 경상기술료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의 개념 :** 완료 판정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되,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고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나,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점유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절차 간소화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기술료 매뉴얼” 참조

1-1-2.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기관명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산정근거	참고자료명
	매출액 등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예시)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작성 Point

○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상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존 제품 매출증가(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산정근거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주요판매처별 판매예상금액, 주요경쟁사와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 및 시장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1-1-3. 사업화 실적

기관명	사업화 품목명 (사업화 연도)	품목 용도	품질 및 가격경쟁력	수출여부	판매채널 (온·오프라인)
			작성 예) 제품 단가가 xx국가 경쟁기업 xx사 대비 10% 낮아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은 세계시장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됨	수출	작성 예) 베트남 현지 xx 에이전시 활용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만들어 낸 산출물(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과거 사업화 실적제시(내수, 수출 모두 포함되며 판매 주력 산출물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제시)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기술기여도는 향후 사업성과활용조사(R&D 관련 매출(수출)액 및 고용창출 등)에 활용

기관명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	○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작성 Point

○ 기술개발의 사업화 실적이 잘 나타나있는가?

○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1-2. 참여기관(기업)

※ 참여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1-1'의 1-1-1. 사업화 목표 ~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양식 복사하여 기재

1-3. 참여기관(기업)

※ 참여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1-1'의 1-1-1. 사업화 목표 ~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양식 복사하여 기재

2. 사업화 계획

2-1. 국내외 시장분석

2-1-1. 국내외 시장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 단,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출처 명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6)	

2-1-2.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

(단위 : 천원)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2-2. 사업화 추진 전략

※ 사업화 전략 : 본 기술개발 성공후 판매까지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총괄적으로 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기술 (아래 양식 이외 그림, 도표 활용 가능)

<사업화 계획 (5개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화 년 도					
년 도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사업목표							
사업화 내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판매계획	매 출 (백만원)						
	수 출 (만불)						

2-2-1.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전략 (실용화/사업화 전략, 시장진입시기, 수출전략)

2-2-2. 대학, 연구소, 협력업체, 대기업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방안

2-2-3. 생산, 설비투자, 마케팅, 인력확보 등에 대한 추진전략

가. 예산 확보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20xx	20xx	20xx	20xx	자기자금	타인자금
시설자금	1. 부지매입 2. 공장건축 3. 생산설비 4. 임차보증금 5. 기타						
	(소 계)						
운전자금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화를 위해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화-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금융권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1. 자기자본: 본인투자자금, 동업자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됨
2. 타인자본: 전환사채,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중진공 자금, 농림부 자금등으로 구성됨

나.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구 분	구분	단위	생산 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 시제품 → 샘플 → 양산체제 구축 → 생산 등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마케팅 계획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청 등), 기술혁신기관(TP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 제시된 예시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제출기업(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케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란에 추진시기, 예산, 설비투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라. 사업화를 위한 핵심인력 확보방안

작성 Point

○ 국내외 시장분석이 객관적으로 되어있는가?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있는가?

3. 지역발전효과

3-1. 고용 효과

○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설명**

<고용목표>

기관명	창출내용	고용목표(명)						
		총 수행기간	종료 1년차	종료 2년차	종료 3년차	종료 4년차	종료 5년차	합계
	① 간략히 기재							
	②							
	③							
	소계							
	①							
	②							
	③							
	소계							
합계								

※ 사업계획서 상 신규참여인력 + 사업관련 신규채용인력(협약기간 내 채용인력)

3-2. 산업생태계 활성화 효과

○ **지역경제 발전 효과 설명**

※ 해당 지역우수기업과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 제시
※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통한 거래업체들과의 동반성장가능성 제시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기여가능성 제시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으로 지역경제 생태계 상 중요성을 가짐

작성 Point

○ 과제수행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우수하며 실현 가능한가?
○ 해당 지역우수기업의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거래업체들과의 동방성장효과가 있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Ⅲ. 사업비

1. 사업비 세부내역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1-1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XX년)			2차년도(20XX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1-2. 기관별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1차년도(20XX년)			2차년도(20XX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물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주관)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소계									
기관명(참여)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소계									
기관명(참여)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소계									
합계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1-3. 기관별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1차년도(20XX년)			2차년도(20XX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물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직접비									
	간접비									
	소계									
기관명 (참여)	직접비									
	간접비									
	소계									
기관명 (참여)	직접비									
	간접비									
	소계									
합계	직접비									
	간접비									
	합계									

1-4. 비목별 예산편성 총괄 현황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참여기관 전체의 당해연도 편성현황 기재

※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비고
1차년도 (20)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1차년 합계						
2차년도 (20)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비고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2차년 합계						
총 수행 기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총 합 계						

1-5. 1차년도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1-5-1. 주관기관 예산편성 현황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1-5-1양식을 활용하여 '1-5-2, '1-5-3 등으로 각각 기재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 : 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천원

① 인건비 :　　천원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해야 함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연봉 총액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 (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내부)									
기존 인력 (외부)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 (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박사후 과정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이하			1,000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비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비	구입							
	임차							
	통합관리비							
합 계								

④ **연구재료비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횟수 (수량, 건)	단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 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000,000 등					
	시약・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경비	000,000 등					
합 계							

⑤ **연구활동비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0000 참석 등			
	국내여비	시내/외 교통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000,000 등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도입비	000전문가 활용, 000기술도입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000 의뢰, 000 분석 등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000, 000 등			
	연구과제 운영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			
합 계					

* 연구과제운영비는 수행기관별 직접비(현물포함)의 5% 이하로 산정(수행기관 전체의 합계는 연차별 1천만원 이하로 계상)

⑥ **연구수당 :　　천원**

구 분	내역 (품명)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수당				
합 계				

다.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라. 현물출연(기자재/시설/장비) 내역

※ 협약 시 현물출자확약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No.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일자	구입금액 (천원)	장부가액 (천원)	출연금액 (천원) (20%이하)
1					
2					
3					
4					
5					
6					
7					
8					
9					
합 계					

작성 Point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경우를 말한다.

○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비영리법인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table>
<tr><th>구 분</th><th>산 정 기 준</th></tr>
<tr><td>내부인건비</td><td>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세부 산정기준</th></tr>
<tr><td rowspan="2">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td>연봉제 적용기관</td><td>▪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r><td>연봉제 비적용기관</td><td>▪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td></tr>
<tr><td colspan="2">중소기업, 대학 등</td><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r><td colspan="2">개인사업자 대표</td><td>▪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707천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17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td></tr>
</table>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td></tr>
<tr><td>외부인건비</td><td>
<table>
<tr><th>구 분</th><th>세부 산정기준</th></tr>
<tr><td>외부기관에 소속된 자</td><td>▪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단, 기업,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 계상불가</td></tr>
<tr><td>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td><td>▪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r><td>기 타</td><td>▪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able>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td></tr>
</table>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기업의 경우 계상할 수 없다. 학생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table>
<tr><th>세 목</th><th>산 정 기 준</th></tr>
<tr><td>학생
인건비</td><td>
<table>
<tr><th>구 분</th><th>세부 산정기준</th></tr>
<tr><td>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대학</td><td>▪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td></tr>
<tr><td>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대학</td><td>▪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td></tr>
</table>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td></tr>
</table>

< 연구시설.장비비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 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참역기관 등)

가)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획서에 반영된 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라)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 연구재료비 >

가)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나)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국내·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현지 답사 비용, 해외학회 참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회계감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전문가 활용비 및 교육훈련비 등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마)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바) 연구과제운영비

① 연구과제운영비는 수행기관별 직접비(현물포함)의 5% 이하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운영비의 합계는 연차별 1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회의비, 초과근무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 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③ 회의비는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④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수당 >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 및 학생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접비]

○ 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포함한 연구보안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 등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④ 기술보호경비(연구보안관리비 포함)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부담 비용(컨설팅, 시스템구축비, 보안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비, 조정·중재 수수료 등)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1-6. 2차년도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1-6-1. 주관기관 예산편성 현황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1-6-1양식을 활용하여 '1-6-2, '1-6-3 등으로 각각 기재

2. 국비(지방비)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합 계
1차년도 (20XX)	국비(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2차년도 (20XX)	국비(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합계	국비(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작성 Point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별 예산 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수행기관의 역할 및 연구과제 개발내용과 사업비 편성 내용이 일치하는가?

Ⅳ. 수행기관 현황

【작성방법】
○ 수행기관별로 작성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나누어 작성

(비영리기관용)

기 관 구 분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천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HP)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각각의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반드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락처 등 기재

(영리기관 기업용)

1. 기관명 :

1-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부지(㎡), 건물(㎡)		
	공장	(-) 부지(㎡), 건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 (국적)	
업 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mail	

※ 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택 1

1-2. 회사연혁

년월일	주 요 내 용

1-3.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합계						

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xx	20xx	과 목	20xx	20xx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매출총이익		
자산총계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총운영비용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영업이익		
			기타이익 세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1-5. 주주구성

총 주 식 수	천주
주당액면금액	원

성 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합 계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table>
<tr><td>부 처 명</td><td colspan="2">중소벤처기업부</td><td>R&D 사업명</td><td colspan="2">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td></tr>
<tr><td>과 제 명</td><td colspan="5"></td></tr>
<tr><td>주관기관</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연구책임자명</td><td></td></tr>
<tr><td>제안기술의 목적 및 효과</td><td colspan="5">(예시) 계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연습이 가능하며 정면 모니터를 통해 헤드업 교정이 가능한 실내 골프 연습장치</td></tr>
<tr><td rowspan="4">제안기술 구성요소</td><td>A</td><td colspan="4">그린 경사 측정 회로 기술 : MEMS 기술을 활용</td></tr>
<tr><td>B</td><td colspan="4">부착기구 : 퍼터의 모델과 브랜드에 관련 없이 탈부착이 가능한 부착기구 개발</td></tr>
<tr><td>C</td><td colspan="4">소프트웨어 : 자동으로 인지하여 측정하는 자동 경사 측정 소프트웨어</td></tr>
<tr><td>D</td><td colspan="4">zero gravity : 부착 방향과 위치, 모양에 자동으로 파악하여 zero gravity 평면을 구현</td></tr>
<tr><td>검색 키워드 /검색식</td><td colspan="5">키워드 : 골프, golf, 연습, 퍼팅, 시뮬레이션, 시준, 기울기, 그래버티, 그레버티, gravity
검색식 : (골프*golf)+(연습*퍼팅)+(그래버티*그레버티*gravity)
AND='*'(교집합), OR='+'(합집합), NOT='*!'(빼기), 연속단어='adj'
☞ 검색식 작성방법 안내[별첨] 자료 참고</td></tr>
<tr><td>선행 기술정보</td><td colspan="5">1. 골프채용 시준 장치 - 김경진 (주)로보메이션(구 아이오테크)
등록 번호: 10-0491489 등록 일자: 2005년05월17일
2. 기울기 센서를 부착한 골프 퍼터 - 조욱제
등록 번호: 10-0586314 등록 일자: 2006년05월26일
제안 기술 내용과 유사한 귀 기업의 지재권정보 뿐 아니라 타 연구단/기업이 보유한 지재권정보를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작성(검색방법 안내)
1. www.kipris.or.kr 접속
2. 상단메뉴 'SEARCH' 내 해당항목 클릭(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3. 상단 검색창에 작성된 검색식 입력(왼쪽 동의어 사전, 유사검색식, 분류통계, 행정처분 등 추가항목 활용)
4. 검색결과 개별 특허를 클릭하여 상세보기 가능
5. 검색된 특허는 상단의 '엑셀저장, 인쇄' 메뉴를 활용하여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 KIPRIS Home 화면 오른쪽 아래에 초보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동영상 매뉴얼) 참조</td></tr>
</table>

문헌번호	선행기술 요지	기술요소**	관련도***
한국공개특허 2002-0012466	인체의 호흡기에 흡입되는 바이러스 및 미세오염물 차단을 위해 **콧구멍에 삽입하는 필터형 비강 마스크로서, 코에 삽입하여 바이러스 및 미세오염물질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필터에 의해 걸러진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을 살균 할 수 있는 나노웹이 포함되어 있음 *** 관련도 있는 부분 밑줄** (기술요소 작성방법) 앞페이지 제안기술 구성요소 구분기호 (A, B, C, D)를 기재 (관련도 작성방법) 선행기술과 각 기술요소별 관련도에 따라 O : 매우 유사, △ : 일부 유사, × : 유사성 없음 기재	A B C D	O △ △ X
세부기술 유사점 및 차이점 (기술요소 VS 선행기술)	**[유사점]** **(기술요소A)** 관련문헌은 각종 현장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점을 기재하고 있어, 제안기술의 재난 유형별 표준행동절차를 수립하는 점과 유사함(조사된 전체 선행특허자료들과 본 과제 기술요소A의 유사점 작성) **(기술요소B)** 관련문헌은 각 시나리오를 저장하고, 재난현장의 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 기술을 포함하는 점에서 제안기술의 시나리오 기반의 행동절차 가이드를 지원하고, 각 공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술과 유사함 **[차이점]** **(기술요소A)**관련문헌은 제안기술의 표준 프로토타입을 수립하는 기술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탐지기 및 소화시설을 배치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차이가 있음(조사된 전체 선행특허자료들과 본 과제 기술요소A의 차이점 작성) **(기술요소B)** 관련문헌은 제안기술의 재난 확산예측 모델에 대응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기재함**		
종합 결론	* 선행기술과의 유사점이 있음에도 제안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논리 작성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 단, 다년도 과제일 경우에만 작성 (단년 과제는 작성 불필요)

【별표 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별표 2】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 : Nd-Fe-B계 자석개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1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50	860	870	
	보자력(Hic)	kA/m	16	940	95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40	26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3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35	7.35	7.4	
	전기저항	Ω·m	12	1.3	1.35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40	240	245	
	인장강도	MPa	5	79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 : 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day	배 기	g/kw.hr	회전정밀도	㎛
BOD	㎎/ℓ	오일압력	Kg/㎠	진 원 도	㎛
탁 도		파종속도	m/hr	표면거칠기	Rmax
폐수배출량	㎥/day	분 해 능	m	주축속도	rpm
COD	㎎/ℓ	측정범위	mm	절삭속도	m/min
생산속도	m/min	측정속도	m/sec	절삭길이	mm
포장속도	PCS/min	stroke	m/m	이 송 량	mm/rev
공급속도	PCS/min	정 밀 도	m/m	토 오 크	N.m
신 장 률	%	공 압	Kg/㎝	동 심 도	㎛
누 설 량	㎤/min	작동전압	V	흔 들 림	㎛
최고사용압력	Kg/㎠	소비전류	mA	가공시간	min/EA
응답시간	sec	작동속도	m/sec	급이송속도	m/min
유 속	m/s	작동온도	도	크 기	mm
소 음	dB	회 전 각	도	허용하중	㎏
조향각도	도	토 크	kgf.m	최소설정이송량	mm
작 동 력	kgf	정격유량	l/min	위치결정정도	mm
회전속도	rpm	최고사요압력	kgf/㎠	반복정도	mm
출 력	ps/rpm	중 량	kgf	분 할 각	도°
연료 소비율	g/ps.hr	직 각 도	㎛	공구보유수	EA
평 행 도	㎛	이송오차	㎛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MPa	용 착 량	δ/min	용접속도	m/㎜
항복강도	MPa	고온강도	kgf/㎟	입 자	㎛
경 도	Hv	피로강도	MPa	순 도	%
연 신 율	%	정 밀 도	㎜	내구성	
밀 도	g/㎤	통 기 도		Sppatter발생량	g/min
생산성향상	개/cycle	표면조도		Fume발생량	g/min
주입속도	㎜/sec	내 열 성	℃	용착효율	%
열전도도	W/m.k	내마모성	g/㎟	Slag 박리성	sec/m
전기전도도	m/Ω·㎟	내충격성	㎏/㎟	불순물 함량	%
회 수 율	%	저온강도	㎏/㎟	압출비	
송 급 성	m/Min	성능평가		압출속도	m/min
열팽창계수	10-6/k	가스발생량		탄성률	GPa
내식성	g/㎟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m/min	데니어	denier	흡수율	%
방사량	ton/day(㎏/horu)	강도	g/d	사속(초속)	m/min
인장강도	kgf/㎟	밀도	g/㎤	견뢰도	급
연실율	%	LOI		꼬임수	Tn
신 도	%	여과효율	%	통기도	CC/㎟
압력손실	%	YPM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	반응도	%	P H	
수 율	%	회수율	%	비 중	
중합도(DP)		점화율	%	밀 도	g/㎤
아민가	%	분자량	g/mol	점 도	cps
애 가	%	고형분압량	wt%	유리전이온도	℃
역 가		저장안정성	rodnif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2 GHZ
Output Power	≥ 0 dBm
Supply Voltage	3.0 Volts
C/N Ratio	≥ 105 dBc
S/N Ratio	≥ 50 dB
Spurious Level	20 dBc Max
Package	SMD TYPE
Substrate	Ceramic
Size	0.13cc
Operation Temperature	-30 ~ +80℃
Output Impedance	50Ω
Tuning Voltage	0.5 ~ 2.3V
Current Consumption	6㎃ 이하
Puling Figure	300kHz 이하
Pushing Figure	300kHz 이하
Temperature Stability	≤ 2 MHz

[양식 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지역명						
과 제 명						
기관명			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 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대표자	000000 -0000000	8자리		
		총괄책임자	000000 -0000000			
		참여연구원	000000 -0******			
		참여연구원	000000 -0******			
		참여연구원	000000 -0******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관리
④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⑤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사후관리
⑥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⑦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관 식별정보, 고용정보 등

3.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 및 지역사업평가단이 본인(또는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제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에 선정될 경우 위 기업(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직인) / (인감)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의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다음의 수행가능과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가'의 경우 '해당', '수행가능'의 경우 '비해당'에 체크)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상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2)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의 경우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아니함.

3) 전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4)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5)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지역산업육성사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기업혁신성장 지원사업,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사업,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사업

▸ 신청과제의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기업(기관)명 : (직인)

대표이사(기관장)명 : (인)

[양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양식 4]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동의서

지역명		**기관명**	
과 제 명			
대표자명		**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본인(또는 수행기관)은 위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사업에서 사업화 성과 중심의 R&D 지원을 위해 경상기술료 제도를 전면 도입 및 의무적용하고 경상기술료 산정시 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직인) / (인감)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양식 5]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별첨)			
사 업 명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접수번호		검토(확인)일	
과 제 명			
신청기관(주관)		총괄책임자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가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	+5		
	○ 정부지원사업(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5		
	○ 최근 3년 이내에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단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기술사관육성사업 및 대학연계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1		
	○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1기업 1백만원)에 참여한 기업	+1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다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2		
	○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성공판정 이후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1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3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1		
	○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		
	○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2		
	○ 전년도(2019년) 희망이음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기업	+1		
소 계(A)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감점	○ 다른 과제에서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평가 결과를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로서, 평가결과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소속 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포함)으로 신청하는 경우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소 계(B)				
합 계(A+B)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인란은 관리기관이 현장실태조사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주관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신청자(총괄책임자) : (인)	검토자(관리기관) : (인)

[양식 6]

<table>
<tr><th colspan="6">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th></tr>
<tr><td rowspan="4">기업개요</td><td>기업명</td><td colspan="2"></td><td>대표자명</td><td></td></tr>
<tr><td>기업규모</td><td colspan="2">중견( ) 중소( )</td><td>사업자
등록번호</td><td></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2"></td><td>업종</td><td></td></tr>
<tr><td>채용담당</td><td colspan="4">(성명·직위) (부서) (연락처)</td></tr>
<tr><td rowspan="7">채용계획</td><td>근무지</td><td colspan="4"></td></tr>
<tr><td>총 채용인원</td><td colspan="4">명</td></tr>
<tr><td>신규 채용인원</td><td colspan="4">명</td></tr>
<tr><td>채용분야</td><td colspan="2">연구·개발</td><td colspan="2">사업화·마케팅·기타</td></tr>
<tr><td>채용인원</td><td colspan="2">정규직 ○명, 계약직 ○명</td><td colspan="2">정규직 ○명, 계약직 ○명</td></tr>
<tr><td>채용시기</td><td colspan="2">′ 년 월(명), ′ 년 월(명)</td><td colspan="2">′ 년 월(명), ′ 년 월(명)</td></tr>
<tr><td>자격요건</td><td colspan="2">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td><td colspan="2">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td></tr>
<tr><td>월급여액</td><td colspan="2">원</td><td colspan="2">원</td></tr>
<tr><td colspan="2">직무내용</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공고문

– 제주지역 품목개요서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92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수정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0. 수정사항

□ 공고 · 접수기간 연장

<table>
<tr><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기존 공고문 본문 p.5]</td><td>[기존 공고문 본문 p.6]</td></tr>
<tr><td>

6. 절차 및 일정

<table>
<tr><td>공고</td><td>사업계획서 접수</td><td>현장실태조사</td><td>평가위원회 개최</td><td>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td><td>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td></tr>
<tr><td>’20.1.31.</td><td>~3.2.</td><td>~3.10.</td><td>~3.17.</td><td>~3월말</td><td>~4월초</td></tr>
</table>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2.(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3(화) 18:00까지

</td><td>

6. 절차 및 일정

<table>
<tr><td>공고</td><td>사업계획서 접수</td><td>현장실태조사</td><td>평가위원회 개최</td><td>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td><td>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td></tr>
<tr><td>’20.2.6.</td><td>~3.9.</td><td>~3.17.</td><td>~3.24.</td><td>~4월초</td><td>~4월중</td></tr>
</table>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td></tr>
</table>

□ 지역별 사업설명회 취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 지역별 품목개요서 수정

※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호와 동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

(단위 : 억원)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비R&D	289	1년 이내	5	'20.1월	'20.2월.	'19.3~4월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2.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9억원 (국비 193억원, 지방비 96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20.3~'21.2)

□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사업목표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사업수행내용	○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기대 효과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지역산업 기여도	○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사업비	○사업비 편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1,400	723	2,123
대구	1,900	938	2,838
광주	1,400	898	2,298
대전	1,400	902	2,302
울산	1,400	-	1,400
세종	578	248	826
강원	1,400	634	2,034
충북	1,400	634	2,034
충남	1,400	1,212	2,612
전북	1,400	635	2,035
전남	1,400	904	2,304
경북	1,400	600	2,000
경남	1,400	600	2,000
제주	1,400	720	2,120
합계	19,278	9,648	28,926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상기사항 외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에 제시된 우대사항은 가점 1점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		~3.9.		~3.17.		~3.24.		~4월초		~4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명	문의전화	주 소
부산	051-315-926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대구	053-818-9565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광주	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전	042-864-4271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울산	052-248-5765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강원	033-258-268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충북	043-278-27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충남	041-415-2165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전북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전남	061-339-9722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경북	053-818-9514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055-259-34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제주	064-759-74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1 기업지원사업 품목개요서(청정헬스푸드산업)

사 업 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지 역	제주	주 력 산 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품 목 명	청정헬스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		

지원 배경 및 목적	○ 제주 청정자원 활용,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게 힐링 건강식품 등 기능성 식품, 맞춤형 식품시장 수요 증가 ○ 시장(고객)의 니즈에 대응한 품질향상 제품개발과 상용화를 통하여 기업 경영실패를 최소화하고 기업성장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방향	○ 아이디어 또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우수 기술에 대하여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시제품제작 단계에서 본 제품생산까지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공정을 확립하여 기업체의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촉진 ○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 및 제품경쟁력을 파악하고 제품의 고도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품고급화 지원 ○ 수요맞춤형 전문가 그룹 발굴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 기술 해소와 체계적인 제품개발 전략 필요		
정부지원 필요성	○ 제주지역 청정헬스푸드산업 분야로 기능강화식품, 힐링건강식품, 맞춤형 특산식품, 고령친화식품, 물응용 등의 식품분야를 선정하여 제주식품산업 시제품 및 제품고급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필요 ○ 물응용 산업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직접적 수혜효과가 가장 큰 시제품 제작지원 필요		
최종 지원내용	○ 청정헬스푸드산업 분야 관련 시제품제작 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작품 공정개발 및 최적화 지원 - 제품 설계 등 시제품 패키지 지원 - 시제픔 시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 ○ 청정헬스푸드산업 분야 관련 제품고급화 지원 - 기존제품의 기능 및 성능 향상 등의 제품 고급화 지원 - 생산 공정 개선 및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 - 제품고급화 지원을 위한 수요맞춤형 통합 패키지 지원		
지원기간	1년	지원예산	5억원/년

사 업 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지 역	제주	**주력산업**	청정헬스푸드
품 목 명	청정헬스푸드산업 시험분석 지원		

지원 배경 및 목적	○ 청정헬스푸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HACCP 의무화 등 시험분석의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식품 안전 관련 식품 시험분석 지원 필요 ○ 소비트렌드에 맞는 식품 및 물응용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분석 지원 필요		
지원 방향	○ 청정헬스푸드 기업의 수요에 맞춘 품질검사, 자가 품질검사, 제품안전성 검사,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 활동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원 ○ 물응용 분야 및 지역기반 청정헬스푸드 산업의 시험분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시험분석 지원으로 지역기업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력 제고 ○ 수요맞춤형 전문가 그룹 발굴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 기술 해소와 체계적인 제품개발 전략 필요		
정부지원 필요성	○ 제주지역 청정헬스푸드산업 분야로 기능강화식품, 힐링건강식품, 맞춤형 특산식품, 고령친화식품, 물응용 등의 식품분야를 선정하여 제주식품산업 시험분석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청정헬스푸드 산업 및 물응용 산업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시험분석 지원 필요 ○ 지역기업의 영세성과 시험분석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		
최종 지원내용	○ 청정헬스푸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품질검사/시험분석 지원 ○ 개발제품 또는 완제품에 대한 품질/자가품질 검사 지원 ○ 청정헬스푸드 분야 제품안전성 및 효능평가 시험·인증 분석 지원		
지원기간	1년	지원예산	2억원/년

사 업 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지 역	제주	주 력 산 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품 목 명	청정헬스푸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디자인 지원		

지원 배경 및 목적	○ 제주도내 청정헬스푸드 산업의 SWOT분석 실시 결과, 지자체의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높음 ○ 청정헬스푸드 산업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매출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제품의 디자인 등 시각적인 부분과 제품의 포장기술, 고급화가 필요 ○ 우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진출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대상으로 마케팅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제품 발굴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내외 시장개척, 기업성장을 촉진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지원으로 기업매출 및 고용확대		
지원 방향	○ 바이오식품 분야의 공동 마케팅 및 국내/해외 시장개척단 및 네트워킹 지원 ○ 수요 판매처의 기술 기대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케팅 기법, 시장정보 지속 제공 지원 ○ 제품의 인지도 및 판매확대에 필요한 제품 디자인 개선, 카탈로그 제작 및 브랜드개선 지원 ○ 수요맞춤형 전문가 그룹 발굴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 기술 해소와 체계적인 제품개발 전략 필요		
정부지원 필요성	○ 제주 산업 특성상 식품가공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여 국내외 신규시장 확보, 수출판로 개척, 제품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음 ○ 빠른 트렌드 변화,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로 제품의 경쟁력 및 상품성 제고가 필요 ○ 고부가차치 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마케팅, 디자인 지원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과 수요 증가		
최종 지원내용	○ 청정헬스푸드산업 관련 기업 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청정헬스푸드 산업군 제품 홍보활동 지원(온/오프라인) - 판로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부스 및 바이어상담회 등) - 수출판로 확보를 위한 개별 바이어 초청 및 해외시장 조사 활동 지원 ○ 제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디자인 지원 - 제품 브랜드개발 및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제품 디자인(제품, 포장재, 케이스 등) 개발 지원 - 제품 리뉴얼(디자인 진단 및 컨설팅), 시각(또는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업 수요 맞춤형 디자인 개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고급화 지원 등		
지원기간	1년	지원예산	3.58억원/년

2 기업지원사업 품목개요서(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사 업 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지 역	제주	**주력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품 목 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기술이전 및 특허·인증 지원		

지원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지능형관광콘텐츠 산업분야 기업대상의 기술이전 및 개발기술의 지식재산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기반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ICT분야 신기술 이전 및 요소기술 획득 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ICT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사업화 촉진 ○ 기업의 연구기술에 대한 권리확보를 통해 안정적 사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 ○ 기술 개발 시간 단축 및 투자 비용의 절감을 위해 기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산업 활성화		
지원 방향	○ 기술이전 정보 발굴 및 수혜기업과 신청내용에 대한 전문가 매칭활동 지원으로 수요맞춤형 사업 추진 ○ 도내 전문기관 및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특허정보분석사, 변리사, 창업컨설턴트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원 추진 ○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특허 및 인증 획득 체계적 지원 ○ 수요맞춤형 전문가 그룹 발굴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 기술 해소와 체계적인 제품개발 전략 필요		
정부지원 필요성	○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에 따른 제주지역 산업 활성화 필요 ○ 제주지역 지능형관광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해외의 특허침해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신규개발 유망상품의 조속한 시장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제품의 국내·해외 신뢰성 향상 및 기술선점 ○ 국내·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을 통해 수입대체효과 기대		
최종 지원내용	○ 지능형관광콘텐츠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술 이전 지원 ○ 국내외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 지능형관광콘텐츠 분야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품질인증, 제품인증, 시스템 인증 등 지능형관광콘텐츠 산업 관련 인증획득 지원 등		
지원기간	1 년	지원예산	2억원/년

사 업 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지 역	제주특별자치도	**주력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품 목 명	지능형 관광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실제 상품제작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매출로 연계하고 지역의 고용창출로 선순환 구조화 지원필요 ○ 제주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기업이 실제 상품을 제작하게 되면서 겪게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급화를 지원 ○ 지역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시제품 제작과 제품고급화를 지원함으로써 자체 상품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이 가능해짐		
지원 방향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급화를 통해 지역의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 강화 도모 ○ 기존제품의 성능 및 디자인개선, 기술개발, 개선제품 시제작 등 단계별 활동 지원으로 제품고급화 유도 ○ 수요맞춤형 전문가 그룹 발굴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 기술 해소와 체계적인 제품개발 전략 필요		
정부지원 필요성	○ 영세한 제주지역 지능형 관광콘텐츠 기업들이 시제품을 의뢰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여 정부지원 필요 ○ 증가하는 이주민과 창작자, 기술전문가들이 새롭게 지역의 기업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능형관광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이 필요 ○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연관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의 지능형관광콘텐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최종 지원내용	○ 지능형관광콘텐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지능형관광콘텐츠 시장맞춤형 시제품제작 지원 - 콘텐츠 관련 기술 또는 융복합을 통한 시제품제작 지원 - 기보유 제품의 OSMU(One Source Multi-Use) 활동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 -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현지화 시제품제작 지원 ○ 지능형관광콘텐츠 제품고급화 지원사업 -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 - 기존상품 디자인개선 및 성능향상 지원 - 타산업 융합형 제품고급화 지원 - 수요맞춤형 제품고급화 패키지 지원		
지원기간	1년	지원예산	3.88억원/년

3 기업지원사업 품목개요서(스마트그리드산업)

사 업 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		
지 역	제주	**주력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
품 목 명	스마트그리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지원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스마트그리드 산업분야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에 대한 고급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제주기업 경쟁력 강화 ○ 제품의 기능 및 효율성 검증, 안정성 검사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대한 신뢰도 및 완성도를 향상시켜 기업기술력 강화 ○ 스마트그리드 전후방 서비스산업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제주 경제구조 전환 계기 마련		
지원 방향	○ 시장맞춤형 기술개발 제품을 위한 기술, 표준화, 사업화 등의 멘토 컨설팅을 지원해줌으로써 사업화를 촉진하여 신 비즈니스 창출 및 성공적 국내외 시장 창출 유도 ○ 기업수요뿐만 아니라 시장성을 고려한 시제품 제작을 통해 단위제품 또는 완제품의 성능평가 및 내구성 품질 확보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 제품개발을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비용, 시험평가,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 수요맞춤형 전문가 그룹 발굴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 기술 해소와 체계적인 제품개발 전략 필요		
정부지원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 by 2030’ 계획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19.11.12) ○ 제주기업의 안정적 증가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장맞춤형 스마트그리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이 필요		
최종 지원내용	○ 스마트그리드 관련 분야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력서비스 산업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 스마트그리드 시장맞춤형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분야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품고급화 지원사업 -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 - 기존상품 디자인개선 및 성능향상 지원 - 수요맞춤형 제품고급화 패키지 지원		
지원기간	1년	지원예산	4.74억원/년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1, 사본 9)
2. 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기관(기업)장 및 참여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재무상황 및 신용정보 확인용) 1부
   ※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및 기관은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별도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5.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1부 (증빙서류 첨부 필수)
6.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영리기업의 경우)
7.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영리기업의 경우)
8.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참여연구원 재직 확인용)
9. 학생 연구원 재학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재학 확인용
   (연구조교일 경우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 프리렌서인 경우 개인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기술개발 계약서 사본 1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각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10부(원본1, 사본9)를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 가능)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대표자, 총괄책임자, 기업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접수번호		2)지방자치단체		3)사업유형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계획서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기관구분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 테크노파크( ), 기타( )		
6)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19××.××.××
	부 서		전 화	×××-××××-××××
	직 위		팩 스	×××-××××-××××
	E-mail		휴대전화	×××-×××-××××
7) 총 협약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개월)			
8) 당해연도 협약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개월)			

9)사업비(천원)	구분		1차년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0)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
	부서/직위		휴대전화	×××-××××-××××
	E-mail		팩 스	×××-×××-××××

11)핵심키워드	국문	○○○○, ○○○, ○○○, ○○○, ○○○
	영문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면서,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 (부서명) (성 명)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접수번호 : 전산접수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기재
2) 지방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를 두 글자로 기재(예. 대전, 경남)
3) 사업유형 : 아래의 사업유형 중에서 기재
①기술지원, ②사업화지원, ③역량강화
4) 과제명 : 기업지원 과제의 과제명(해당 품목개요서 상 과제명) 기재
○ 기업지원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기관구분"란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테크노파크, 기타로 구분 기재
6) 총괄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7) 총 협약기간
○ 기업지원사업 전체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본 공고는 단년지원과제임 (ex. '20.3.1~'21.2.28)
8) 당해연도 협약기간
○ 본 공고는 단년 지원과제로써 총수행기관과 당해연도 수행기간이 같음
9) 사업비
○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 시 해당 품목개요서에서 정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10)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1) 핵심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 5개를 국문, 영문으로 기재

※ 제출일, 주관기관장 및 총괄책임자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주관 기관장명을 기재한 후 직인 또는 기관장의 인감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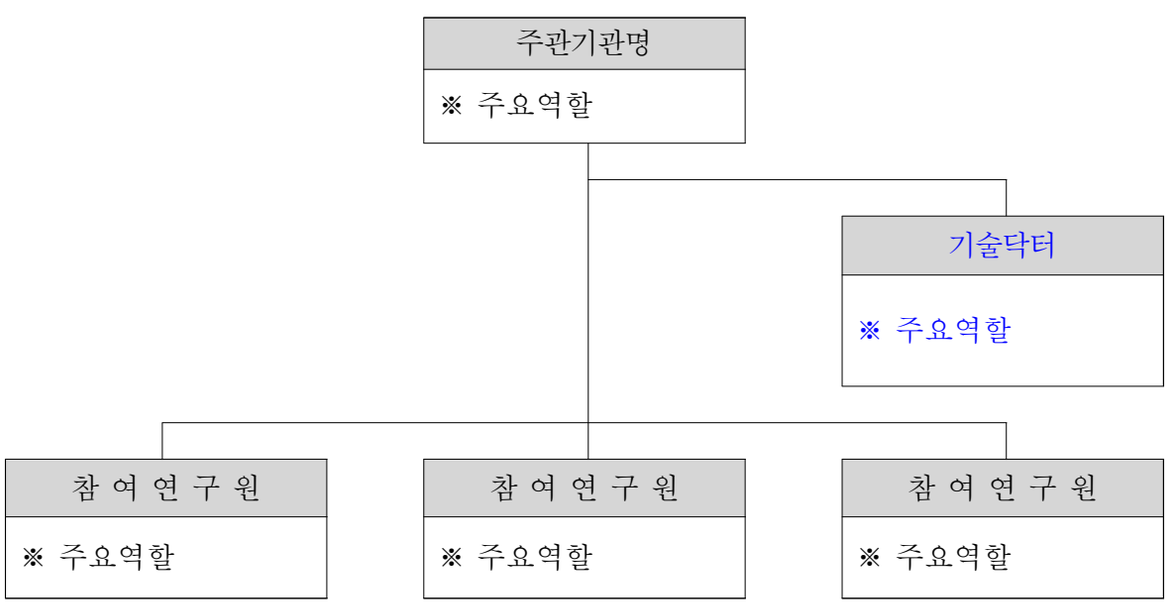
요 약 서 (초록)

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 협약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개월)		
당해연도 협약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개월)		
사업기간 재원조달			
사업비 (천원)	국 비		
	지방비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비전과 전략	
상세 추진전략	

2. 추진체계



3. 사업 내용

4. 기술닥터제 운영 방안

5. 성과지표별 목표

구분	성과 지표명	산출근거	목표
실적지표	(필수)기술닥터제 운영	기업별 월 1회 이상	00건
	마케팅지원	지원건수	10건
성과지표	수혜기업 고용증가율	당해고용인원/전년고용인원*100	5%
	기술닥터제 도입성과	기술애로사항 지원 건	00건
		기술닥터 활용건(타 사업 연계 등)	00건
자율지표	글로벌화 성공사례	해외진출 증빙자료	5건

* 위의 예시와 같이 작성

6. 기대효과

목 차

Ⅰ. 사업 필요성 ····
1. 관련 산업 현황 ····
2. 기업수요 현황 ····
3. 과제추진 필요성 ····

Ⅱ. 사업계획 ····
1. 최종목표 ····
2. 추진전략 ····
3.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
4. 추진체계 ····
5. 기술닥터제 운영 방안 ····
6. 사업내용 ····
7. 추진일정 ····

Ⅲ. 기대효과 ····
1. 기대효과 ····
2. 성과활용 계획 ····

Ⅳ. 사업수행 역량 ····
1.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 ····
2. 참여 연구원 ····
3. 기업지원 자원 현황 ····

Ⅴ. 사업비 ····
1. 총사업비 ····
2. 비목별 세부내역 ····

Ⅵ. 수행기관 현황 ····

Ⅰ. 사업의 필요성

1. 관련 산업 현황

【작성방법】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수혜를 받는 관련 산업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작성

2. 기업수요 현황

【작성방법】
○ 과제 추진을 통한 기업지원 수혜 대상 기업의 현황을 작성
○ 기업의 수요현황을 제시하고, 과제추진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작성

3. 과제추진 필요성

【작성방법】
○ 기업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수요현황을 기반으로 메뉴판의 지원유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 가능하도록 작성
○ 해당 과제가 관련 기업 성장에 예측 기여 내용을 작성

Ⅱ. 사업계획

1. 최종목표

【작성방법】

○ 최종목표(연차별 목표) 및 추진전략,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업목표를 기재

○ 총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다시 기재

최종목표	
추진전략	• • • •
추진내용	• •

구분	성과 지표명	산출근거	목표
실적지표	(필수)기술닥터제 운영	기업별 월 1회 이상	00건
	마케팅지원	지원건수	10건
성과지표	수혜기업 고용	당해고용 발생인원* 기여율 %	00명
	사업화 매출액	당해연도 발생 매출액* 기여율 %	000백만원
	기술닥터제 도입성과	기술애로사항 지원 건	00건
		기술닥터 활용건(타 사업 연계 등)	00건
자율지표	글로벌화 성공사례	해외진출 증빙자료	5건

2. 추진전략

2-1. 기업지원 비전과 전략

【작성방법】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
○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지원방법의 타당성 등을 반드시 제시

2-2. 고용창출 연계 전략

【작성방법】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고용 창출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기재
○ 본 과제의 기업지원내용이 고용연계 창출에 타당한 이유를 기재
○ 고용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

3.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3-1. 기업지원 경험

3-1-1. 기업지원 수행 경험 및 사업화 실적

※ 반드시 기업지원(기술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등) 실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관련 요령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기업지원 과제 수행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총사업비(천원)	부처(지자체)	참여형태	비고
	'00.00~ '00.00			주관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과제명	수행기간	총사업비(천원)	부처(지자체)	참여형태	비고
	'00.00~ '00.00			주관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사업화 실적(매출)

지원기업수	사업화성공기업수	매출액(천원)			비 고
		20XX년	20XX년	20XX년	

※ 최근 3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3) 사업화 실적(수출)

지원기업수	사업화성공기업수	수출액(천원)			비 고
		20XX년	20XX년	20XX년	

※ 최근 3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4) 고용실적

지원기업수	직접고용(명)			간접고용(명)			비 고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 최근 3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5) 특허 출원/등록 실적(해당 시 기재)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 최근부터 3년간 특허실적 모두 기재

(6) 기술닥터제 등 유사 수행 경험(해당시)

지원기업수	기술닥터 기업수	애로 해결 건			비 고
		20XX년	20XX년	20XX년	
대표 우수사례 작성	○				

※ 최근 3년간 기술닥터제 주요 실적을 기재

3-1-2. 성공 및 실패경험

※ 기업지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성공/실패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고, 본 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서술

3-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실적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예)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동, 시장조사 등

(1) 사전준비 경과

※ 주관기관 자체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준비 경과를 기재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20xx.xx.xx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 개요 : 시장조사 · 주체 : · 목적 : · 성과요약 :

(2) 과제 추진 관련 사전조사 내용

※ 시장조사, 수요현황파악 등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Point

○ 사업기획을 위해 외부 자원(대학, 연구소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고민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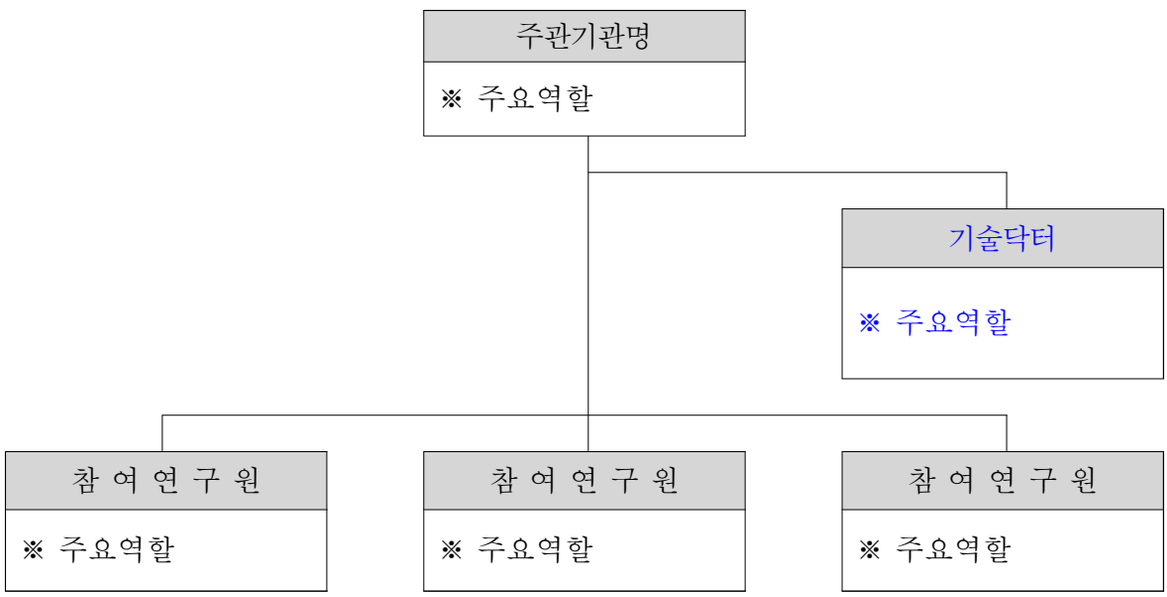
○ 수행기관의 기업지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이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가?

4. 추진체계

4-1. 수행체계

【작성방법】
○ 참여연구원 간 협력을 위한 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참여연구원 담당 업무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 효율적 수행체계 구성을 위한 각 참여연구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 참여연구원간 협력을 위한 틀을 구체적으로 명시

<업무분장 현황>

이름	주요 역할	주요 추진 내용
		•
		•
		•
		•
		•
		•

※ 참여연구원별 담당 사업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5. 기술닥터제 운영 방안

5-1. 기술닥터 전문가 pool

번호	전문분야	이름	소속	직위	지역내		지역외
					신청기관 내부	외부	
1	구조해석	홍ㅇㅇ	ㅇㅇ대학교	교수			
2							
3							
4							
5							

5-2. 기술닥터 운영 프로세스

작성 Point

○ 지원 과제를 포함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기술닥터 pool 구성

○ 내·외부 기술닥터의 매칭·운영 방안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관에서 기술닥터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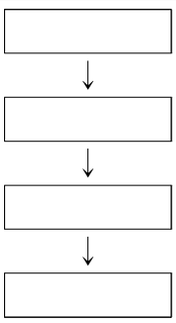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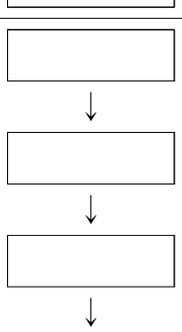
6-1. 과제지원 절차 및 방법

【작성방법】

○ 과제추진 사업수행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사업목표에서 제시한 과제내용 및 세부과제 내용을 참조하여 내용 연계성을 갖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내용별 지원 절차를 도식화하여 명시하되, 지원절차별로 수행방법, 소요예산 등 추진내용을 제시할 것(아래의 표 활용)

<추진 계획>

지원품목 : *예)시제품제작*			지원절차별 추진 내용		
세부 내용	목표 실적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수행방법	소요예산
					
					

6-2. 세부 사업내용 및 달성목표

【작성방법】

○ 예산 배분 등의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 수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직접 수행내용과 외부 용역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내용을 작성하고, 주도적 사업운영을 위한 당해연도 과제 수행체계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달성목표를 앞서 제시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 등과 연계하여 설명

○ 각 목표에 대한 성과달성을 위한 예상 사업비를 타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 상기 외 내용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작성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	달성 목표	예상 사업비 (단위: 천원)

7.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내용 및 범위	통합공고 여부	추진일정											
			4	5	6	7	8	9	10	11	12	1	2	3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통합공고 여부 : TP 기업지원단을 활용한 '통합공고' 여부, ○ 또는 X 중 선택

Ⅲ. 기대효과

1. 기대효과

【작성방법】
○ 기업지원을 통한 정량, 정성적 효과를 기재(연차별 작성)
○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 매출 등 경제적 성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재

1-1. 기업지원 측면

1-2. 경제적 측면

(1) 고용 효과

(2) 기타 경제적 효과
○ 수혜기업 지원을 통한 사업화 매출, 수출 효과 중심으로 작성

2. 성과활용계획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결과물) 등을 활용하여 해당 주력산업 수혜기업의 고용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기재

Ⅳ. 사업수행 역량

1. 기업지원사업 수행실적

【작성방법】
○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 작성
○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 실적만 기재

과제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참여 형태	비고
aaaaa	'00.00~ '00.00	000,000		주관	
bbbb	'00.00~ '00.00	000,000		참여	

2. 참여연구원 현황

【작성방법】
○ 학력사항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

(1)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XXXXXX - *******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E-mail	

(2) 총괄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3) 총괄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4) 총괄책임자 기업지원 과제 참여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 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5) 참여연구원 현황

【작성방법】
○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만 기재
○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참여연구원별 담당분야는 구체적으로 본 사업과 부합될 수 있도록 기재
○ 기업지원을 위한 참여인력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담당 분야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기업지원 전문성을 상세히 기술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 채용시기 : 20××.××

3. 기업지원 자원 현황

3-1. (공통)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작성방법】
○ 사업수행기관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3,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만 기재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bbb	20xx.xx 20xx.xx	aaa bbb	000천원 000천원	3 2	○○기술지원용 ○○교육용	기관보유

3-2. 관련 자원 현황

【작성방법】
○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제의 품목(프로그램) 관련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 또는 전문인력 등을 기재하고 지원내용을 상세히 기재
○ 아래의 표 이외의 서식 활용 가능

지원품목 (프로그램)	보유자원 현황	지원내용	해당 산업분야
		※ 상세히 기재	

3-3. 기타

【작성방법】
○ 위에서 명시한 관련자원 현황 이외에 기본 과제와 관련한 품목(프로그램)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Ⅴ. 사업비

1. 총사업비

1-1 국비, 지방비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분담내역
국비	
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1-2.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계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2. 비목별 세부내역

2-1. 비목별 예산편성 총괄현황

【작성방법】

○ 사업비 계상(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에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과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기업지원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 : 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천원

① 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　　천원

【작성방법】
○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계상 가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B)	합 계	비고
박사후 과정			*3,000*				
박 사 과 정			*2,500*				
석 사 과 정			*1,800*				
학 사 이 하			*1,000*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④ 연구활동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⑤ 연구과제추진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⑥ 연구수당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총액(인건비의 10%이내)				천원(현금 : 천원)	

다. 간접비

【작성방법】

○ 영리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기업은 제외됨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 직접비(현금)의 17%이내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과기부의 간접비 고시 해당여부		해 당 ( )		과기부 고시 간접비율 OO.O%		
		해당없음 ( )		-		

라. 현물출연 (기자재/시설/장비) 내역

No.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일자	구입금액 (천원)	장부가액 (천원)	출연금액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계			**0**	**0**	**0**

Ⅵ. 수행기관 현황

【작성방법】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구분하여 해당양식에 작성

(비영리기관용)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천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HP)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연락처를 기재.*

(영리기관 기업용)

1-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부지(㎡), 건물(㎡)		
	공장	(-) 부지(㎡), 건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 (국적)	
업 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mail	

※ 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택 1

1-2. 회사연혁

년월일	주 요 내 용

1-3.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합계						

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xx	20xx	과 목	20xx	20xx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매출총이익		
자산총계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총운영비용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영업이익		
			기타이익 세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1-5. 주주구성

총 주 식 수	천주
주당액면금액	원

성 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합 계				

【별표】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서식 제9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사 업 명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과 제 명						
수행기관명			연구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 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대표자 (영리기업만)	000000 -0000000	8자리		
		총괄책임자	000000 -0000000			
		참여연구원	000000 -0******			
		참여연구원	000000 -0******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역주력산업육성(비R&D)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업지원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 및 지역사업평가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직인) / (인감)

2019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신청과제의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기업(기관)명 : (직인)

대표이사(기관장)명 : (직인)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별첨)			
사 업 명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접수번호		검토(확인)일	
과 제 명			
신청기관(주관)		총괄책임자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가점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종료된 과제에 한함)를 활용하는 경우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1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KIAT, KEIT, KETEP의 관련 공문 제출 필요)	+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1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1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이달의 산업기술상' 중 '신기술 부문'의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 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소 계(A)				
감점	○ 최종평가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소 계(B)				
합 계(A+B)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인란은 관리기관이 현장실태조사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주관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신청자(총괄책임자) : (인)	검토자(관리기관) : (인)

기술닥터 현장애로 기업 방문 보고서(예시)

※신청 주관기관에서 별도 양식 생성 가능

1. 기업 현황

대 표 자 명		설 립 년 월 일	
업 종		주 생 산 품	
상시종업원수		주 요 고 객	
사업장소재지		소재산업분야	
홈 페 이 지			
인 증 현 황	① 기업부설연구소 ( ) ② 소재부품 전문기업 ( ) ③이노비즈 ( ) ④ 메인기업 ( ) ⑤ 벤처기업 ( ) ⑥ 가족친화기업 ( ) ⑦ 기타 ( )		

(단위: 백만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R&D 투 자				수 출 액			

주요제품 소개	
	(사진)

담당 기술닥터	성명		소속	
	전문분야		연락처	
방문기간 (일수)	월 일부터 월 일 까지(기업방문일수: 일)			
주요 내담자	직책		성명	

2. 해당 기업 애로 사항

<table>
<tr><td>해당기업 분석</td><td>※ 해당기업의 보유한 역량, 거래관계, 매출, 기술관계, 글로벌 및 로컬 산업 구조, 제품 사양 등 기술닥터가 파악이 가능한 기업 현황 분석</td></tr>
<tr><td>기업
애로현황</td><td>※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td></tr>
<tr><td>애로해결을
위한 추진방안</td><td>※ 본 과제로 지원 할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애로해결 추진 방안, 프로세스, 향후 일정 등 자세히 기재</td></tr>
<tr><td>애로해결
기대효과</td><td>(예시) : 정량적인 기대효과 기술
<table>
<tr><th>구 분</th><th>지원전</th><th>지원후</th><th>성과</th><th>세부근거</th></tr>
<tr><td>매출액(단위: 천원)</td><td></td><td></td><td></td><td>· 지원전 : 000(단가)x000개=000천원
· 지원후 : 000(단가)x000개=000천원</td></tr>
<tr><td>수출액(단위: US$)</td><td></td><td></td><td></td><td>· 지원전 : 000(단가)x000개=000US$
· 지원후 : 000(단가)x000개=000US$</td></tr>
<tr><td>비용절감(단위: 천원)</td><td></td><td></td><td></td><td>· 지원전 : (비용절감)x000개=00천원
· 지원후 : (비용절감)x000개=00천원</td></tr>
<tr><td>고용창출
(제조/연구/관리영업)</td><td></td><td></td><td></td><td>· 지원전 : 제조(명), 연구(명),관리영업(명)
· 지원후 : 제조(명), 연구(명),관리영업(명)</td></tr>
<tr><td>생산성 지표</td><td></td><td></td><td></td><td>· 지원전 : 표준공수/투입공수 × 100%
· 지원후 : 표준공수/투입공수 × 100%
* 표준공수/투입공수
- 표준공수 = 표준작업시간(ST)×생산량
- 투입공수 = 근무시간 × 사람</td></tr>
<tr><td>기술애로해결</td><td></td><td></td><td></td><td>· 지원전 : 건(제조, 연구 및 개발 관련 애로)
· 지원후 : 건(제조, 연구 및 개발 관련 애로)</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 상기 외에 추가항목에 대한 기술</td></tr>
</table>
※기타 파급효과 (예시. 벤처등록/이노비즈인증/기업부설연구소 설립예정/특허 취득)</td></tr>
</table>

타지원사업 필요성 여부	※ 본 과제 외에 지자체 또는 주관기관 등에서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작성

해당 기술닥터 OOO은 (주)OOOO 기업의 애로사항 분석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재)OOOO연구원 원장 관인(신청 주관기관 장 직인)

4)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 공고문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84호

2020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 **(사업 목적)** 지역 연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매출, 일자리 제고 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원 내용)** 지역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R&D 사업화 지원 및 연고산업 지역거점화를 위한 자립화 지원

□ 지원 분야

○ 시군구 지역에 집적화된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촉진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역점의 지역연고산업

《 지역연고산업 》

☞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내 산업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

<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

구 분	전통성 : 30%	산업 여건 : 30%	중소기업 중심 : 40%
관 점	기술 및 제품 특화도	성장 가능성	파급 효과
지 표	▪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 ▪ 기술수준 및 전문성 ▪ 전국평균 대비 매출액	▪ 클러스터(종사자, 기업) 지표 ▪ 유관·지원 기관 존재 ▪ 지자체 육성의지	▪ 중소기업·벤처 비중 ▪ 매출/고용 목표 ▪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 분야는 제외
* 식품의 경우 1차 원료의 단순 가공품은 지원 제외함

□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0년 신규 지원 국비 예산 : 약 115억 원 내외

* 단, 과제당 지원국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

○ 과제당 지원 국비 : 5억 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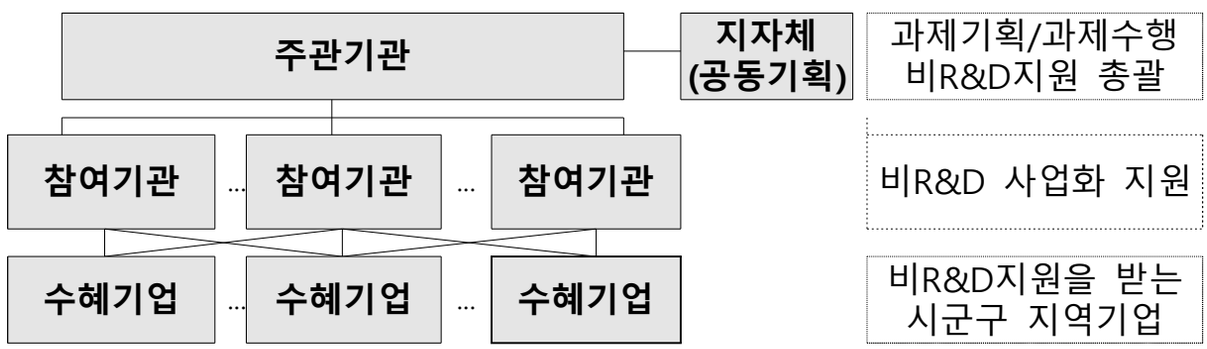
* 단, 세종시는 과제당 3.5억 원 내외 지원

○ 지원 기간 : 3년 지원, 단 협약 재정지원은 단년 단위로 수행

* 2019년에 선정된 과제도 2020년 신규과제로 지원신청 가능

□ 추진 체계

○ 지역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혁신기관(주관·참여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추진 일정

○ 온라인 접수 기간: 2020. 3. 16(월). 09:00 ~ 3. 20(금). 20: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기간: 2020. 3. 17(화). 09:00 ~ 3. 23(월). 18:00까지

주요 일정	일정 및 담당기관
사업 공고	2.7(금) / 중기부·전담기관
사업 계획서 접수	3.16(월) ~ 3.20(금) / 전담기관·관리기관
현장 실태 조사	~ 4.10(금) / 관리기관
평가 위원회 개최	~ 4.24(금)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5.8(금) / 중기부·전담기관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5월 이내 / 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

○ **(정의)** 지역의 ①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②지역내 산업여건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③중소기업 중심 산업

○ **(기준)** 연고산업 정의를 바탕으로,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을 정성, 정량적 선별기준을 만족한 산업

* 통계청 등 국가승인통계 외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제시 가능

<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 >

구 분	전통성 : 30%	산업 여건 : 30%	중소기업 중심 : 40%
관 점	기술 및 제품 특화도	성장 가능성	파급 효과
지 표	▪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 ▪ 기술수준 및 전문성 ▪ 전국평균 대비 매출액	▪ 클러스터(종사자, 기업) 지표 ▪ 유관·지원 기관 존재 ▪ 지자체 육성의지	▪ 중소기업·벤처 비중 ▪ 매출/고용 목표 ▪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분야는 제외

○ **(주관기관 요건)** 주관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기업 지원 기능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함

* 대학, TP, 연구소, 특화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회,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2 지원 규모

○ **(예산)** 과제당 국비 연 5억 원 내외

- 지방비 매칭 : 총 국비의 10%이상 지자체 현금매칭 필수

○ **(기간)** 3년 지원(36개월)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6～’23.5.(36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6~’21.5(12개월)

총 예산(’20년)	과제 수(예상)	지원 기간 및 예산	국비 비중
115억 원 내외	23개 내외	3년/ 연 5억 원 내외	90% 이내

※ 단, 세종시는 2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 3.5억 원 내외의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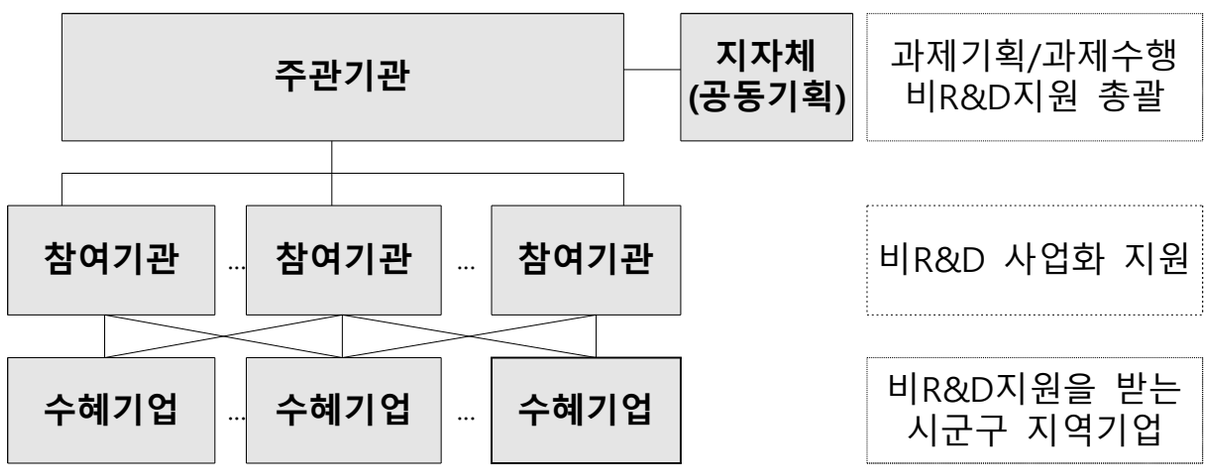
3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4 추진 체계

○ 지역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혁신기관*(주관·참여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K-ESP(연구개발전문기관) 등 기업 지원 역량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추진 체계 도식 >



5 사업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수혜(예상) 기업군 사전 현황 분석결과와 더불어 수요조사 결과 기반의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 지역 내 산학연 네트워크 및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수혜 예상 예상기업군을 사전 선별하여 현황 분석 및 애로점 도출

- 수요조사 설문지와 수요조사 결과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전략을 작성

필수 구성 프로그램

○ **(기업혁신역량 제고)**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 성장가치 등을 고려한 기술·서비스 융합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예시>

* **(기술 융복합)** IoT, 바이오, ICT 등 유망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출시 지원
* **(고부가 서비스 결합)** 기존 지역연고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 발굴

○ **(거점화)** 지자체-수행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연고산업의 거점화 방안 수립 및 지원

- 지자체(사업)-산학연(컨설팅)-TP(인프라)-중진공(자금)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고산업 육성 全 주기 협업 추진

- 지원 종료 이후에도, 수행기관 중심의 기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거점화 프로그램 필수 구성 및 운영

구성 예시	주요 내용(예시)
기업 조직화	▪ 중진공 협동화 자금 등과 연계하여, 연고산업 관련 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지역기업 조직·협업화
자립화 전략수립	▪ 과제 지원 종료 후에도 과제 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DB 구축	▪ 수혜기업 재무·인력 현황 및 성과, 지원 내용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기업 컨설팅 역량 제고
액셀러레이터화	▪ 지역연고산업 관련 벤처·신생기업의 초기 투자·연결·판매·멘토쉽·교육·공개피칭 등의 지원 방안 수립
지자체 이양	▪ 규제자유 특구 또는 지역특구 등 지자체에서 수행(기획)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거점화 방안 수립

○ **(인식개선)** 경쟁력있는 연고산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고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및 기업 역량 제고방안 기획 및 지원

<예시>

* **(홍보·마케팅)** 해당 산업의 지역 특화성 및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관련 기업 및 생산제품의 대국민(글로벌) 홍보 방안 기획
* **(기업 컨설팅)** 자체 혁신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장 여력 및 기술발전 동향 컨설팅 및 지원

자율 구성 프로그램

○ **(유형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단위의 일반 수혜기업 지원과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지원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일반지원)** 핀 포인트(Pin point)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1) 시제품 제작, 2) 기술지도, 3) 디자인, 4) 마케팅, 5) 시험분석 및 인증 등

- **(패키지)**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유망기업은 관련 전문가를 PM으로 매칭하여 기업 성장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 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 기준 】

☞ **(선정기준)** 최근 2년 이상의 기업 실적(매출, 수출, R&D 투자액) 또는 성장률(매출.고용 등 증가율)을 고려하여, 과제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선정

- 해당 연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며, 유망기업당 총 사업비의 10%(최대 연 1억원) 이내 지원 가능

  * 유망기업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소재해야하며,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관련 전후방 연관 업종

  * 기선정/인증 기업은 지원 제외(WC 300,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등)

☞ **(진단·전략)** 유망기업을 선정한 뒤 정밀 진단을 통해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사업화·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구성

- 해당 연고산업 및 해당 유망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성장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해당 연고산업 및 해당 유망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성장전략 및 지원 담당 전문가를 PM으로 매칭하고 기업 성장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수행

☞ **(유망기업 지원 운영)** 유망기업은 최초 선정 이후 연단위 수행기관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계속>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 우수
- <중단>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계속수행의 필요성 미흡

  * 해당 연고산업 및 해당 유망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망기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목표 정합성 등을 종합 판단

☞ **(성과조사)** 유망기업은 과제가 종료한 이후에도 성과활용 조사기간(2년)간 사업화 매출액, 신규고용 등 성과활용조사 수행

< '20년 연고산업 육성사업 프로그램 구성 참조 >

구 분	중분류	세부 프로그램 (예시)
필 수 구 성 (중분류별 세부 프로그램 1개 이상 포함 必)	혁신화& 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ㅇ 기타 미래 대비 전략적 지원 및 글로벌 기술연계
	지역 거점화	ㅇ 지역 연고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운영 * 대학, 연구소, 지자체, 관련 전문가, 지역기업 등 ㅇ 지역기업 조직·협업화(공동R&D·브랜드, 민간조직화 등) ㅇ 지원기관 자립화 전략 수립 등
	연고기업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ㅇ 수요대상군 사전모집, 수요조사, 애로사항 모니터링 ㅇ 수행기관 보유 역량·전문성 기반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자 율 구 성	일 반 지 원	ㅇ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일반지원 프로그램은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및 수행하기 어려운 혁신 또는 공동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

6 지원 조건

○ 지원대상은 <지역 연고산업 선별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정량 분석은 제시된 지표 외 선별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대신 할 수 있음

* 전통성(기술 및 제품 특화도) / 산업여건(성장 가능성) / 중소기업(파급효과)

- 정량적 분석은 통계청 등 국가공인통계 외에 해당 연고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활용된 통계는 출처와 기초 통계량 등의 서술이 필요함

○ 지역 내 연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함

○ 과제에 선정된 수행 기관은 반드시 지원받을 국비의 1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며,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약서를 구비해야함

○ 수행기관의 조직명을 가급적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 (예) ○○시군구 ○○산업 기업지원센터

○ 주관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기업 지원 기능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함

* 대학, TP, 연구소, 특화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회,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 참여 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 또는 기업에 한함

* 단, 수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요구됨

○ 수혜기업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인접한 타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의 중소기업도 지방비를 매칭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 유망기업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수행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정 및 지원함

7 평가 기준(안)

구 분		평가 지표
연고산업 경쟁력	전통성 (기술 및 제품 특화도)	▪ 지역연고산업 관련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의 우수성 정도
		▪ 지역연고산업 관련 기술수준 및 전문성 정도
		▪ 지역연고산업 관련 제품의 매출 등 산업 수준
		▪ 정량, 정성지표 작성 구체성 및 타당성
	산업 여건 (성장 가능성)	▪ 지역연고산업 관련 기업 및 종사자 집중 정도
		▪ 지역연고산업 관련 유관·지원 기관 존재 및 협업가능성
		▪ 지역연고산업 관련 지자체 육성의지 정도
		▪ 정량, 정성지표 작성 구체성 및 타당성
	중소기업 (파급 효과)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비중 정도
		▪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사업화 매출 증진 및 신규 고용창출 기대 정도
		▪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정도
		▪ 정량, 정성지표 작성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내용	계획 수립의 타당성	▪ 기업의 수요 반영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운영한 추진 전략 수립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미래 성장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 또는 기존 연고산업의 발전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지원 자립화 및 수행기관 거점화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고산업 인식개선 및 기업 역량 제고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 수혜기업/유망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 수혜기업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유망기업 지원프로그램 구성(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 지자체-수행기관 등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 정도
		▪ 추진 조직·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관련전문성
		▪ 기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여부와 그 역량
기대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연고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기대 정도
		▪ 과제 수행을 통한 지자체-수행기관 역량증진 기대 정도
		▪ 기타 과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재생 효과 등

8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 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하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하여야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요령을 따름

○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이 불가)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 수당, 학생 인건비는 제외)는 현금 사업비로 산정이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 제21조(우대 및 감점)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과제 선정 이후 연도별 성과, 사업비 정산결과, 차년도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 및 연차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협약시 국비 등 사업비가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결과, 과제수행 결과, 특별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 등이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협약이 중단될 수 있음

9 성과 활용 기간 및 평가

○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2년간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전담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간은 최종 평가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성과 활용 현황 보고는 주관기관이 총괄하며, 참여기관의 지원 실적과 유망기업의 성과를 포함함

○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중 성과 활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⑩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 하며, 참여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제외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32호)」<별표3> 신청 과제의 사전 검토시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 관리 검토 기준에 따라 사전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사후 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 분야는 지원 제외

○ 기타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명시된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하며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등

⓫ 추진 일정

○ 평가 관련 일정

공 고	⇨	사업 계획서 접수	⇨	현장 실태 조사	⇨	평가 위원회	⇨	평가 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 7.		3.16.~3. 20.		~4. 10.		~4. 24.		~5. 8.		~5월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⓬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누리집) 2020. 3. 16(월). 09:00 ~ 3. 20(금). 20:00까지
- 오프라인(신청 서류) 2020. 3. 17(화). 09:00 ~ 3. 23(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요약서 출력) → 신청 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온라인 접수 입력설명서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 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 마감일 20:00까지 '완료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이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사항을 빈칸으로 두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 계획서의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신청서(양식) 교부: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 개요서, 제출 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iat.or.kr) 참조

○ 신청 서류 제출처: 해당 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 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3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 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4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 기관(접수처) >

구분	문의 전화	주소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층(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99-9725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별관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4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4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4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55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 부처 및 전담 기관(문의처)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5)

[붙임1]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 시·도별 48개 주력 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 기능성 소재, 로봇 지능화, 무선 통신 융합	대구	의료 헬스케어, 첨단 소재 부품, 분산형 에너지
충남	바이오 식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 뷰티, 기능성 섬유, 지능형 디지털 기기, 하이테크 성형 가공
세종	정밀 의료, 첨단 수송 기기 부품	부산	바이오 메디컬, 지능형 기계 부품, 지능 정보 서비스, 클린 에너지
충북	바이오 헬스, 스마트 IT 부품, 수송 기계 소재 부품	울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조선 해양, 첨단 화학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광주	디지털 생체 의료, 스마트 가전, 광융합, 복합 금형	경남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기계, 나노 융합 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첨단 운송 기기 부품, 에너지 신산업, 청색 청정 환경	강원	웰니스 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레저 휴양 지식 서비스
전북	농생명 소재 식품, 지능형 기계 부품, 해양 설비 기자재, 탄소 복합 소재	제주	청정 헬스 푸드, 지능형 관광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붙임2] 신규 평가 우대 기준 및 감점 기준

< 신규 평가 우대 기준 >

No.	우대 기준	가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 산업 육성 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 성과”(“조기 종료(혁신 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2	총괄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단, 전체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함	1점
3	주관 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	1점
4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로 평가된 수행 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과 연계된 경우 혹은 비영리 기관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점
5	총괄 책임자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1점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 연구 개발 우수 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사업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7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하여 사업 재편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한 과제	1점
9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창원진해, 거제,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3점
10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2점
11	지방비 매칭 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10 ~ 20% 1점 / 20%~ 30% 2점 / 30% 초과 시 3점	-

* 단, 우대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신규 평가 감점 기준 >

No.	감점 기준	감점
1	평가 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의 확정 후 2년간 신청과제에 감점 부여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수행 기관	1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 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붙임3] 연고산업 선정을 위한 측정 지표(안)

구분	지표	세부 내용
전통성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	**<입지계수>** ▪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생산활동이 왕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변이-할당 분석> ▪ 특정 산업이 성장할 때, 성장의 경쟁력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로 구분 ▪ 만약 산업구조효과가 양(+)이라면 국가 전체 산업구조에 비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 ▪ 만약 지역할당효과가 양(+)이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 ▪ 모두가 양(+)인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최선
		<지역성장률 시차분석> ▪ 해당 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성장률의 차이를 가중요인(변이할당분석에서 산업구조효과)과 경쟁력요인(지역할당효과)로 설명 ▪ 가중효과와 경쟁력효과가 양(+)이고 절대치가 큰 것이 지역의 산업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음
	기술수준 및 전문성	**<산업의 기술수준>** ▪ 해당 지역산업의 기술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서 ▪ 특화산업의 의미와 위상을 생각할 때 신기술, 첨단산업보다는 개량적인 기술 필요
	전국평균 대비 매출액	▪ 해당 지역산업의 전국 평균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매출액이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할수 있는 지표
산업 여건	클러스터 지표 (종사자, 기업 지표)	**<클러스터 지표>** ▪ 해당 산업의 지역밀집도(density)를 측정하는 것으로, 인구밀도와 유사하게 산업의 지역밀도를 측정하는 지표 ▪ 클러스터 지수는 0~+∞의 값을 가지며, 클러스터지수가 1이상일 경우에 잠재적 클러스터로 간주, 4이상일 경우 클러스터로 간주할 수 있음
		<E-G index> 업종별 공간집중도
	지역내 유관기관 존재 및 협업가능성	▪ 상공회의소, 업종협의체, 훈련기관, 관계 대학 및 연구소, 산업단지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지자체의 육성의지	▪ 장기발전계획, 기초생활권계획 등에 육성계획이 있는지 계획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중소기업 중심	중소기업 벤처비중	▪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구성 비중 ▪ 현재는 산업 형성이 미약하나 근래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리라 여겨지는 정도
	매출.고용 목표	▪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화 매출 발생 기대 정도와 신규 고용 창출 정도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 산업이 성장할 경우, 해당 산업에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해주는 연관산업들이 발생하리라 기대되는 효과(후방효과) ▪ 산업이 성장할 경우, 해당 산업이 중간재 위치에 있고 해당 산업의 제품을 공급받는 연관산업들이 발생하리라 기대되는 효과(후방효과)

* 기타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지표 활용 가능(단 지표 설명 필요)

[붙임4] 2019년 대비 2020년 주요 사업추진 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분야	주요 제조업 5개 분야	➤	전분야 (연고성 판단)
사업 (프로그램)	자율	➤	필수 프로그램 신설
패키지 지원	X	➤	가능 (1억원 이내)
기간	단년도	➤	3년 사업권 부여 (단, 단년도 사업협약)
자립화	미고려	➤	3년 이후 자립화 전략 수립 의무화 지원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1, 사본 9)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기업재무상황 및 신용정보 확인용) 1부
   ※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및 기관은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별도 제출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5.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1부 (증빙서류 첨부 필수)
6.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영리기업의 경우)
7.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영리기업의 경우)
8.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참여연구원 재직 확인용)
9. 학생 연구원 재학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재학 확인용
   (연구조교일 경우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 프리렌서인 경우 개인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기술개발 계약서 사본 1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 파일은 한글(HWP)와 PDF를 모두 송부함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각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10부(원본1, 사본9)를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 가능)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대표자, 총괄책임자, 기업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접수번호		2)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기업지원 사업계획서

3) 과제명	국 문			
	영 문			
4)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기관구분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 테크노파크( ), 기타( )		
5)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19××.××.××
	부 서		전 화	×××-××××-××××
	직 위		팩 스	×××-××××-××××
	E-mail		휴대전화	×××-×××-××××
6) 당해 협약기간	2020. 05. 01. ~ 2021. 04. 30. (12개월)			
7) 총 협약기간	2020. 05. 01. ~ 2023. 04. 30. (36개월)			
8) 사업비(천원)	구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 현물			
	합 계			
9) 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
	부서/직위		휴대전화	×××-××××-××××
	E-mail		팩 스	×××-×××-××××
10) 핵심키워드	국문	○○○, ○○○, ○○○, ○○○, ○○○		
	영문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법의 시행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 (부서명) (성 명)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접수번호 : 전산접수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기재

2) 지방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를 기재하되, 시/군/구 단위로 작성 (예시, 경남 하동)

3) 과제명 : 기업지원 과제의 과제명 기재

○ 기업지원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기관구분"란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테크노파크, 기타로 구분 기재

5) 총괄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6) 당해 협약기간

○ 당해연도 기업지원사업 착수일부터 종료일(2021년 04월 30일)까지 기재

7) 총 수행기간

○ 본 공고는 3년 지원 과제로 협약일로부터 2023년 04월 30일까지 작성

8) 사업비

○ 수행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9)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0) 핵심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 5개를 국문, 영문으로 기재

※ 제출일, 주관기관장 및 총괄책임자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주관 기관장명을 기재한 후 직인 또는 기관장의 인감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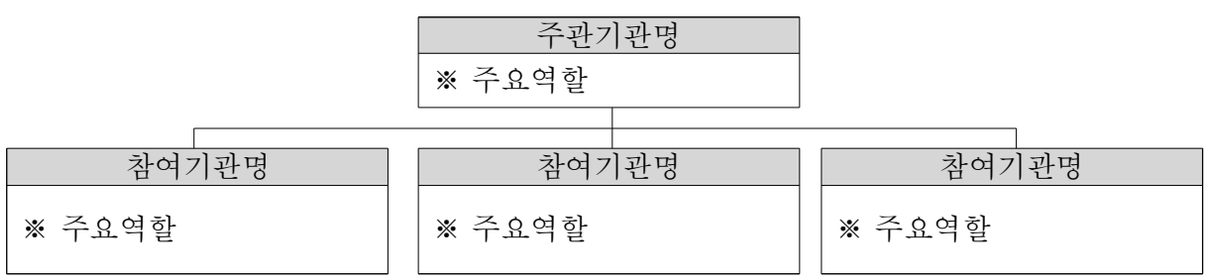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요 약 - 1page 이내 작성(당해연도 사업계획)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당해 협약기간	2020. 05. 01. ~ 2021. 04. 30. (12개월)		
총협약기간	2020. 05. 01. ~ 2023. 04. 30. (36개월)		
사 업 비 (천원)	국 비		
	지방비		
	민간 부담	현금	
		현물	
	합 계		

1.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비전과 전략	
사업내용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 사업총괄 및 네트워크 구축 - 정성적 사업내용 • 애로기술 해소 0건, 시제품 제작 0건, 특허출원 지원 0건, 시험/인증 지원 0건, 특허취득 지원 0건 - 정량적 사업내용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 사업내용 ▪ 사업내용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 사업내용 ▪ 사업내용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 사업내용 ▪ 사업내용

2. 추진체계



3. 예상 지원 기업 : 예상 수혜기업 수 : 000개사 / 예상 유망기업 수 : 0개사

4. 기대 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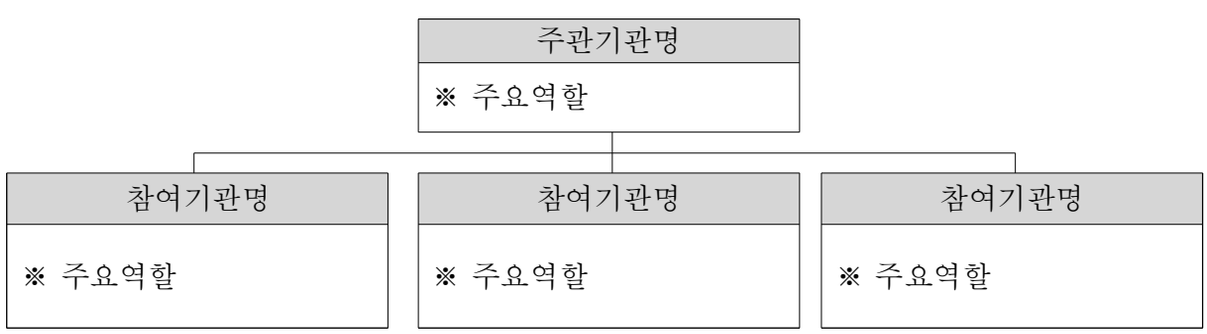
초 록 - 5page 이내 작성(당해연도 사업계획 중심)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당해 협약기간	2020. 05. 01. ~ 2021. 04. 30. (12개월)		
총 협약기간	2020. 05. 01. ~ 2023. 04. 30. (36개월)		
수행기간 재원조달			
사업비 (천원)	국 비		
	지방비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비전과 전략	
상세 추진 전략	(주관기관) 주관기관 명 • 사업총괄 및 네트워크 구축 - 정성적 사업내용 • 애로기술 해소 0건, 시제품 제작 0건, 특허출원 지원 0건, 시험/인증 지원 0건, 특허취득 지원 0건 - 정량적 사업내용
	(참여기관) 참여기관 명 ▪ ▪ ▪
	(참여기관) 참여기관 명 ▪ ▪ ▪
	(참여기관) 참여기관 명 ▪ ▪ ▪

2. 추진체계



3. 사업 내용

4. 성과지표별 목표

구분	프로그램(예시)	산출 근거 (예시)	목표	소요예산 (천원)
실적 지표	지역 거점화 프로그램	ㅇ지역기업 조직화(공동 브랜드, 협단체 등) 건수		
		ㅇ연고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건수		
		ㅇ기업지원역량 증진을 위한 기업 DB 구축 건수		
	기술 융복합	ㅇ유망기술(ICO, IOT, 플랫폼 기술 등) 융합, 기술적용 지원 건수		
	서비스 결합	ㅇ서비스 결합을 통한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지원 건수		
	디자인 개선	ㅇ좋은 디자인 적용을 통한 제품 고급화 건수		
	애로기술 개선	ㅇ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제품개발 과정 기술지도 건수		
	마케팅지원	ㅇ판매망 확보, 홍보물, 전략수립 등 제품판매 마케팅 지원 건수		
	시험분석.인증	ㅇ제품 판매를 위한 국내 인증획득 지원, 시험분석 지원 건수		
	시제품제작	ㅇ상품화(양산) 이전 성능 개선.검증 등을 위한 시작품 제작 지원 건수		
	종합(package) 지원	ㅇ성장가능 유망 중소기업에 전략(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수출 등 패키지 형식의 종합 지원 건 수		
성과 지표	지역거점화 프로그램	ㅇ지원 자립화 육성계획 전략 수립 여부		
	수혜기업 고용 증가율	ㅇ당해 고용인원 / 전년 고용인원 * 100		
	수혜기업 매출 증가율	ㅇ당해 기업 매출액 / 전년 기업 매출액 * 100		
	수출 증가율	ㅇ기업지원을 통한 수출액		
	네트워크 구성	ㅇ수행기관 및 수혜기업간 협의회, 우수성과 워크숍, 관련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개최 건수		
	글로벌화 성공사례	ㅇ해외진출 증빙자료		
	지역경제 활성화	ㅇ해당 연고산업 지자체 GRDP 증가율		
	만족도 조사	ㅇ본 사업 수혜 후 수혜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계				(직접비)

* 상기 성과지표별 목표를 참고하되 사업특성에 맞추어 수정

5. 기대 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

-
  *

□ 정성적 기대효과

○

-
  *

목 차

Ⅰ. 연고산업 필요성 ·····

1. 연고산업 기술 및 제품 특화도 ·····
2. 연고산업 산업 여건 ·····
3. 연고산업 파급효과 ·····
4. 기타 연고산업 경쟁력 ·····

Ⅱ. 사업계획 ·····

1. 사업 목표 및 기관별 지원계획 ·····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4.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
5. 추진일정 ·····
6.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

Ⅲ. 기대효과 ·····

1. 사업화 성공 가능성 ·····
2. 지자체-수행기관 역량 증진 ·····

Ⅳ. 기타 사업수행 역량 ·····

1.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 ·····
2. 참여 연구원 ·····
3. 기업지원 자원 현황 ·····

Ⅴ. 사업비 ·····

1. 총사업비 ·····
2. 비목별 세부내역 ·····

Ⅵ. 수행기관 현황 ·····

※ 사업계획서 목차는 단순참고용으로 해당 연고산업 및 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나, 선정 평가기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해야함

3. 연고산업 파급효과

□

○

-

*

【작성방법】
☞ 해당 지역의 해당 연고산업 중소/벤처기업 분포(비중)을 바탕으로 육성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업화 매출 증진 및 신규 고용창출 기대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작성 및 기술
-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정도
- 기업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해당 과제가 해당 지역의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내용을 작성 등

4. 기타 연고산업 경쟁력(소제목 변경 가능)

□

○

-

*

【작성방법】
☞ 기타 해당 연고산업 경쟁력 및 지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내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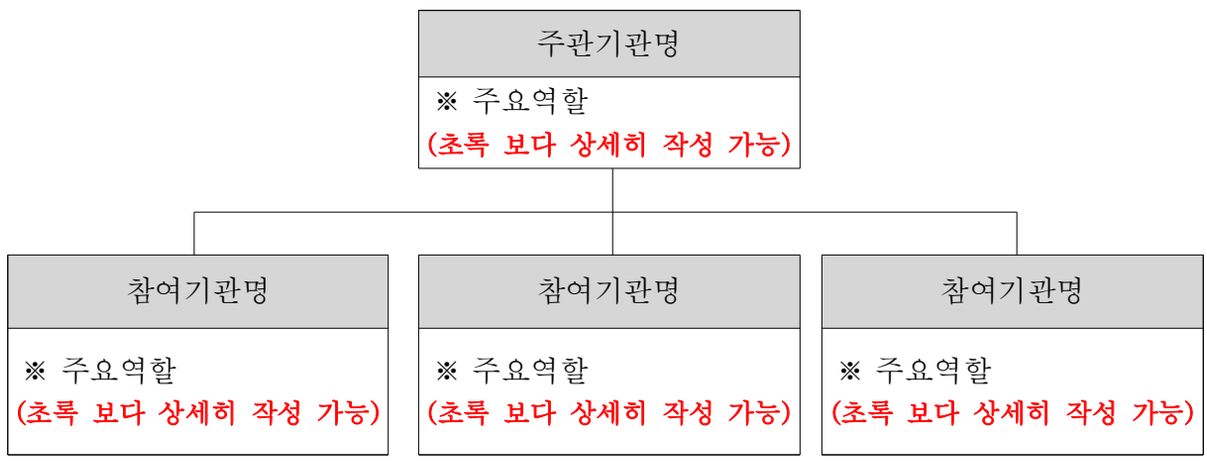
Ⅱ. 사업 계획

1. 사업 목표 및 기관별 지원계획

【작성방법】
☞ 과제 최종 목표 및 추진전략,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업목표를 기재
☞ 총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작성(산출 근거 설명 등)

최종 목표	
추진전략	• •
추진내용	• •
상세 추진 전략 (초록 보다 상세히 작성 가능)	(주관기관) 주관기관 명 • 사업총괄 및 네트워크 구축 - 정성적 사업내용 • 애로기술 해소 0건, 시제품 제작 0건, 특허출원 지원 0건, 시험/인증 지원 0건, 특허취득 지원 0건 - 정량적 사업내용
	(참여기관) 참여기관 명 ▪ ▪ ▪
	(참여기관) 참여기관 명 ▪ ▪ ▪
	(참여기관) 참여기관 명 ▪ ▪ ▪

2. 추진체계



【작성방법】
☞ 주관-참여기관 간 협력을 위한 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참여연구원 담당 업무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 업무분장 현황 >

기관명	이름	주요 역할	주요 추진 내용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참여기관			•
참여기관			•

※ 참여연구원별 담당 사업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작성방법】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참여기관별 전문성을 기재
☞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참여기관별 제반 시설 및 기구 구축현황에 대해 작성
☞ 주관-참여기관의 총괄(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원의 전문성에 대해 작성

구분	프로그램(예시)	산출 근거 (예시)	목표	소요예산(천원)
실적 지표	지역 거점화 프로그램	ㅇ지역기업 조직화(공동 브랜드, 협단체 등) 건수		
		ㅇ연고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건수		
		ㅇ기업지원역량 증진을 위한 기업 DB 구축 건수		
	기술 융복합	ㅇ유망기술(ICO, IOT, 플랫폼 기술 등) 융합, 기술적용 지원 건수		
	서비스 결합	ㅇ서비스 결합을 통한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지원 건수		
	디자인 개선	ㅇ좋은 디자인 적용을 통한 제품 고급화 건수		
	애로기술 개선	ㅇ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제품개발 과정 기술지도 건수		
	마케팅지원	ㅇ판매망 확보, 홍보물, 전략수립 등 제품판매 마케팅 지원 건수		
	시험분석.인증	ㅇ제품 판매를 위한 국내 인증획득 지원, 시험분석 지원 건수		
	시제품제작	ㅇ상품화(양산) 이전 성능 개선.검증 등을 위한 시작품 제작 지원 건수		
	종합(package) 지원	ㅇ성장가능 유망 중소기업에 전략(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수출 등 패키지 형식의 종합 지원 건 수		
성과 지표	지역거점화 프로그램	ㅇ지원 자립화 육성계획 전략 수립 여부		
	수혜기업 고용 증가율	ㅇ당해 고용인원 / 전년 고용인원 * 100		
	수혜기업 매출 증가율	ㅇ당해 기업 매출액 / 전년 기업 매출액 * 100		
	수출 증가율	ㅇ기업지원을 통한 수출액		
	네트워크 구성	ㅇ수행기관 및 수혜기업간 협의회, 우수성과 워크숍, 관련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개최 건수		
	글로벌화 성공사례	ㅇ해외진출 증빙자료		
	지역경제 활성화	ㅇ해당 연고산업 지자체 GRDP 증가율		
	만족도 조사	ㅇ본 사업 수혜 후 수혜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계				(직접비)

*** 위의 예시와 같이 작성(필요시 수정 또는 추가 가능)**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2-1. 사업 계획의 타당성

□

○

-

*

【작성방법】
☞ 기업 수요조사와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의 적극성, 타당성 및 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기술
- 기업 수요조사 기초통계, 조사 현황 및 결과
- 산학연 네트워크 현황 및 도출 결과
- 기업 수요조사,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의 기업지원 전략 기획 과정과 그 결과

☞ 미래 성장가치 제고를 위한 기획 또는 기존 연고산업의 발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의 정량적/정성적 기술
- 기업 수요조사,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역 연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도출
- 지역 연고산업의 미래성장 가치 제고를 위한 구채족 중장기 사업계획 등

☞ 지원 자립화 및 수행기관 거점화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의 정량적/정성적 기술
- 기업 수요조사,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역 연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도출
- 지역 연고산업의 미래성장 가치 제고를 위한 구채족 중장기 사업계획 등

2-2. 사업 추진의 적절성

□

○

-

*

【작성방법】
☞ 수혜기업/유망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 수혜기업/유망기업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지원방법의 타당성 등을 제시

☞ 수혜기업/유망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예상 수혜기업 수와 예상 유망기업 수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안)을 제시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기업지원 프로그램(안)과 지표, 사업비 사용계획의 연관성, 구체성 등
 * ex, 지원프로그램별 단가, 예상 수요 등
 * ex, 시제품 제작 지원 10건 달성을 위해 관련 재료비 등을 000천원 책정

2-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

-

*

【작성방법】
☞ 수행기관별(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수행기관별(지자체) 추진체계를 상세히 제시
-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수행기관별(지자체) 전문성 제시
-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수행기관별(지자체) 제반시설/기구 구축 여부와 그 역량 정도를 제시

☞ 주관/참여기관의 컨소시엄 구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수행기관별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기관별 컨소시엄 구축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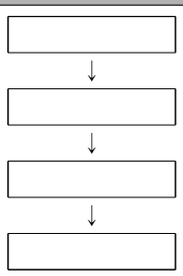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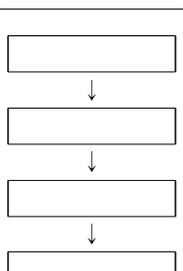
☞ 지자체-수행기관간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체계 및 협업 내용 제시
- 지자체 육성 의지 등과 연계된 사업추진체계 구축 정도 등을 제시

4. 기업지원 프로그램

4-1. 수혜기업 지원프로그램 지원 절차 및 방법

【작성방법】
☞ 과제추진 사업수행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사업목표에서 제시한 과제내용 및 세부과제 내용을 참조하여 내용 연계성을 갖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내용별 지원 절차를 도식화하여 명시하되, 지원절차별로 수행방법, 소요예산 등 추진내용을 제시할 것(아래의 표 활용)

< 추진 계획 >

지원품목 : *예)시제품제작*			지원절차별 추진 내용		
세부 내용	목표 실적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수행방법	소요예산
					
					

4-2. 수혜기업 지원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및 달성목표

【작성방법】
☞ 사업내용을 작성하고, 주도적 사업운영을 위한 당해연도 과제 수행체계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작성
☞ 각 목표에 대한 성과달성을 위한 예상 사업비를 타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 상기 외 내용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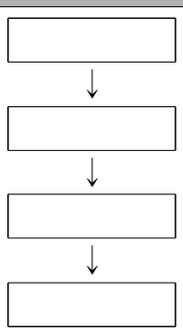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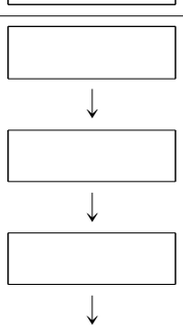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	달성 목표	예상 사업비(천원)	비고

4-3. 수혜기업 지원프로그램 지원 절차 및 방법

【작성방법】

☞ 유망기업 선정이 선정되기 전인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프로그램(안)을 작성하되 예상가능한 범주내에서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제시

< 추진 계획 >

지원품목 : *예)시제품제작*			지원절차별 추진 내용		
세부 내용	목표 실적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수행방법	소요예산
					
					

4-4. 유망기업 지원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및 달성목표

【작성방법】

☞ 유망기업 선정이 선정되기 전인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프로그램(안)을 작성하되 예상가능한 범주내에서 세부 사업 내용 및 달성 목표를 제시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	달성 목표	예상 사업비(천원)	비고

5. 추진일정(일반 수혜기업, 유망기업 모두 명시)

사업내용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6.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6-1. 기업지원 경험

6-1-1. 기업지원 수행 경험 및 사업화 실적

※ 반드시 기업지원(기술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등) 실적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 또는 과장되어 작성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 요령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기업지원 과제 수행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지자체)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주관 or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과제명	수행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지자체)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주관 or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사업화 실적(매출)

지원기업수	사업화성공 기업수	매출액(천원)			비 고
		20XX년	20XX년	20XX년	

※ 최근 3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3) 사업화 실적(수출)

지원기업수	사업화성공 기업수	수출액(천원)			비 고
		20XX년	20XX년	20XX년	

※ 최근 3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4) 고용실적

지원기업수	직접고용(명)			간접고용(명)			비 고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 최근 3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5) 특허 출원/등록 실적(해당 시 기재)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 최근 3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6-1-2. 성공 및 실패경험

※ 기업지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성공/실패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고, 본 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서술

6-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실적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예)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동, 시장조사 등

(1) 사전준비 경과

※ 주관기관 자체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준비 경과를 기재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20xx.xx.xx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 개요 : 시장조사 · 주체 : · 목적 : · 성과요약 :

(2) 과제 추진 관련 사전조사 내용

※ 시장조사, 수요현황파악 등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 전문가 Pool이 있는 경우 관련 Pool을 기재하고 활용계획 기재

【작성방법】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업현황 파악과 지원프로그램 구성 등 사업 기획을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자원(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
☞ 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이력(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본 과제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이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경험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

Ⅲ. 기대효과

1. 사업화 성공 가능성

【작성방법】
☞ 해당 품목 또는 관련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정량/정성적인 효과
☞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 매출 등 경제적 성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작성
☞ 과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지역재생효과
☞ 기타 연고산업 대국민 인식개선 기대 정도 등 작성

2. 지자체-수행기관 역량 증진

【작성방법】
☞ 본 사업을 통한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역량 증진 기대 정도와 해당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대상 기업지원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정도를 작성

☞ 본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결과물) 등을 활용하여 사업수행기간 이후에도 수혜기업의 고용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기재

Ⅳ. 기타 사업수행 역량

1. 기업지원사업 수행실적

【작성방법】
☞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 작성
☞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 실적만 기재

과제명	수행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관리기관	참여 형태
aaaaa	'00.00~ '00.00	000,000			주관
bbbb	'00.00~ '00.00	000,000			참여

2. 참여연구원 현황

【작성방법】
☞ 학력사항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경력사항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

(1)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XXXXXX - *******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E-mail	

(2) 총괄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3) 총괄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4) 총괄책임자 기업지원 과제 참여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 기관
aaa	'00.00 ~ '00.00	bbb	총괄책임자	중소벤처기업부	KIAT

(5) 참여연구원 현황

【작성방법】
☞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만 기재
☞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참여연구원별 담당분야는 구체적으로 본 사업과 부합될 수 있도록 기재
☞ 기업지원을 위한 참여인력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담당 분야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기업지원 전문성을 상세히 기술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 채용시기 : 20××.××

3. 기업지원 자원 현황

3-1. (공통)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작성방법】
☞ 사업수행기관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3,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하되, 용도에 대해 명확히 기재
☞ 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현황만 기재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기술지원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교육용	

3-2. 관련 자원 현황

【작성방법】
☞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제의 품목(프로그램) 관련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 또는 전문 인력 등을 기재하고 지원내용을 상세히 기재
☞ 아래의 표 이외의 서식 활용 가능

지원품목 (프로그램)	보유자원 현황	지원내용	해당 산업분야

3-3. 기타

【작성방법】
☞ 명시한 관련 자원 현황 이외에 기본 과제와 관련한 품목(프로그램)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Ⅴ. 사업비

1. 총사업비

1-1 국비, 지방비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분담내역
국비	
지방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1-2.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계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2. 비목별 세부내역

2-1. 비목별 예산편성 총괄현황

【작성방법】
☞ 사업비 계상(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에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과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기업지원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 : 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천원

① 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　　천원

【작성방법】
☞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계상 가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B)	합 계	비고
박사후 과정			*3,000*				
박 사 과 정			*2,500*				
석 사 과 정			*1,800*				
학 사 이 하			*1,000*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④ 연구활동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⑤ 연구과제추진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⑥ 연구수당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총액(인건비의 10%이내)				천원(현금 : 천원)	

다. 간접비

【작성방법】

☞ 영리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기업은 제외됨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 직접비(현금)의 17%이내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과기부의 간접비 고시 해당여부		해 당 ( )		과기부 고시 간접비율 OO.O%		
		해당없음 ( )		-		

라. 현물출연 (기자재/시설/장비) 내역

No.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일자	구입금액 (천원)	장부가액 (천원)	출연금액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계			**0**	**0**	**0**

【작성방법】

☞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Ⅵ. 수행기관 현황

【작성방법】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구분하여 해당양식에 작성

(비영리기관용)

1. 기관별 현황(비영리기관용)

기 관 구 분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단체, 법인, 협회 등)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단위 : 백만원)					
상시인력 (명)					
연락처	주소		(-)	(-)	(-)
	전화				
	팩스				
	실무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Tel			
		HP			
		E-mail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상기표를 복사하여 작성

2. 기관별 현황(영리기관용)

2-1. 기관명 :

2-1-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부지(㎡), 건물(㎡)		
	공장	(-) 부지(㎡), 건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 (국적)	
업 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mail	

※ 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타 중 택 1

2-1-2. 회사연혁

년월일	주 요 내 용

2-1-3.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합계						

2-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xx	20xx	과 목	20xx	20xx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자산총계			매출총이익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부채총계			총운영비용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영업이익		
자본총계			기타이익 세금		
부채. 및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2-1-5. 주주구성

			총 주 식 수	천주
			주당액면금액	원
성 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합 계				

[서식 제9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사 업 명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					
과 제 명						
수행기관명			연구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 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대표자 (영리기업만)	000000 -0000000	8자리		
		총괄책임자	000000 -0000000			
		참여연구원	000000 -0******			
		참여연구원	000000 -0******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업지원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담기관 및 지역사업평가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선정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기관명) (대표자)

_____ _____ (직인) / (인감)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이상유무	비고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이상없음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이상	총괄책임자 참여제한
▸ 신청과제의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이상없음	
▸ 사업참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기업(기관)명 : (직인)

대표이사(기관장)명 : (직인)

※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별첨)			
사 업 명			
접수번호		검토(확인)일	
과 제 명			
신청기관(주관)		총괄책임자	

우대기준	배점	신청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 산업 육성 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 성과”(“조기 종료(혁신 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총괄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단, 전체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함	1점	
주관 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	1점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로 평가된 수행 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과 연계된 경우 혹은 비영리 기관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점	
총괄 책임자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 연구 개발 우수 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사업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하여 사업 재편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한 과제	1점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창원진해, 거제,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3점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2점	
지방비 매칭 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10 ~ 20% 1점 / 20%~ 30% 2점 / 30% 초과 시 3점	-	
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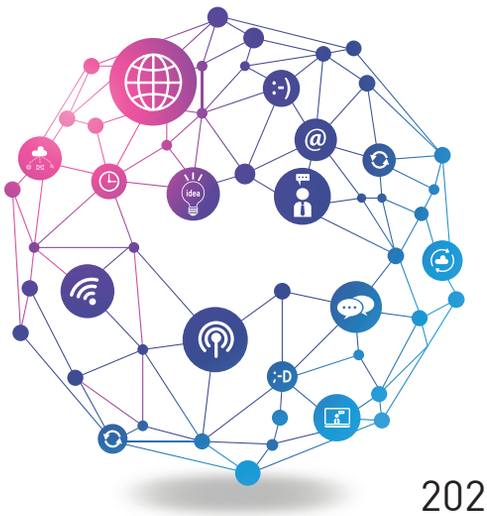
감점기준	배점	여부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1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계(B)		
총계(A-B)		

신청자(총괄책임자) : (인)	검토자(관리기관) : (인)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리기관이 현장실태조사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검토자(관리기관)에 서명함



2. SMTECH 과제 신청 매뉴얼

02. 과제신청
(선택집중형/저변확대형/인프라조성형)

2020. 2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Ⅰ. 과제신청 안내

1. 과제신청 안내

1.1 사전준비사항

STEP 1 / 사전준비사항	STEP 2 / 과제신청방법	STEP 3 / 필수 S/W확인	STEP 4 / 신청하기
› 회원가입 › 기관등록 확인 › 참여제한 확인 › 제출서류 작성	› 선택집중형 › 저변확대형 › 인프라조성형	› 전자인증 장애	› 사업분류/ 신청대상을 확인 후, 과제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1.1 회원가입

○ 과제 신청시 '**과제책임자**', '**대표자**', '**과제권한자**'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기 R&D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은 '**개인**'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과제에 참여코자 하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및 책임자, 연구원 등에 대하여 회원가입 및 가입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개개인의 회원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방법**



【 약관동의 후 본인인증 】

❖ 상세 Guide ❖

① 종합관리시스템 우측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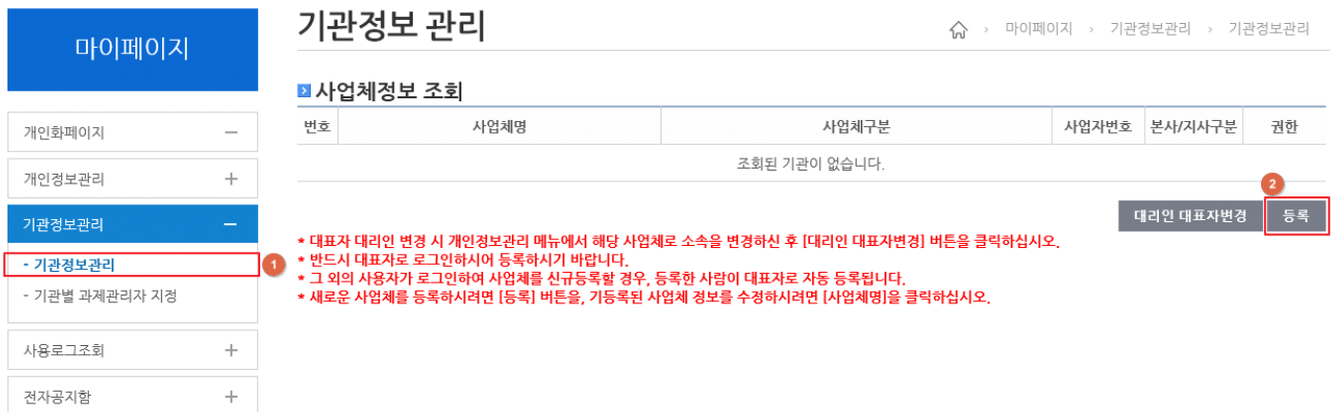
② 이용약관 동의 후 아이핀(I-Pin)인증 받기를 하셔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이핀이 없으신 분들은 신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③ 아이핀(I-Pin)인증 후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외국인으로 가입할 경우 영문 대소문자 및 띄어쓰기를 구분하므로 회원가입시 입력하신 영문이름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2 기관등록

-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과제 신청 전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종합관리시스템의 기관정보는 **대표자 개인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과제에 참여코자 하는 기관은 대표자 명의로 접속 후, '**마이페이지>기관정보관리**'에서 사업체를 등록하거나 기관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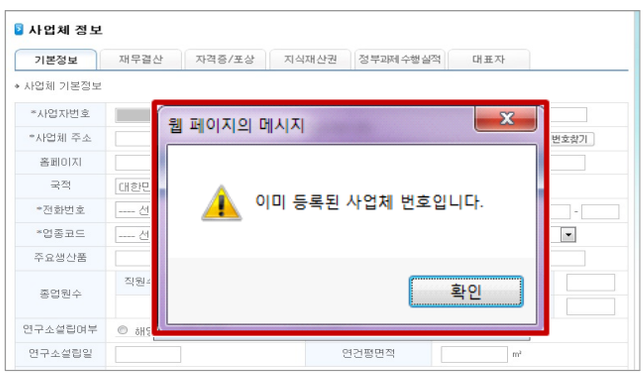
【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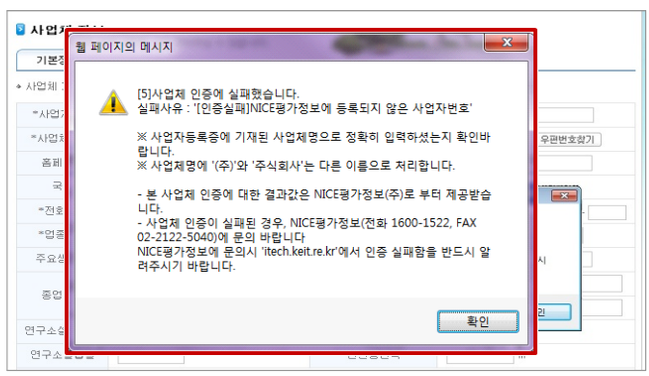
❖ 상세 Guide ❖

①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 정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③ **사업자번호**와 **사업체명**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사업자번호 및 사업체명 확인 후 전자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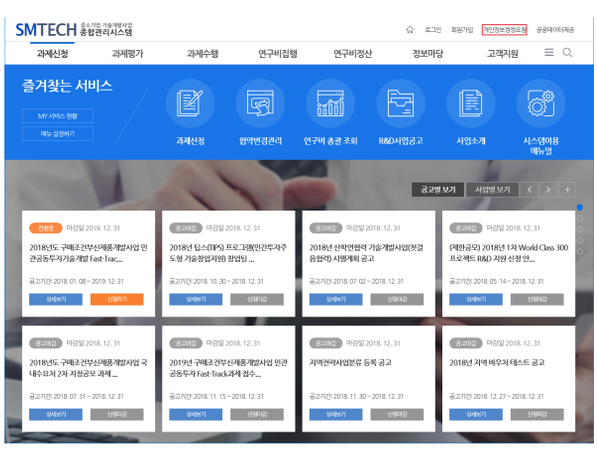
○ 기관을 등록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신청양식의 작성요령내용 혹은 해당화면 상의 안내 문구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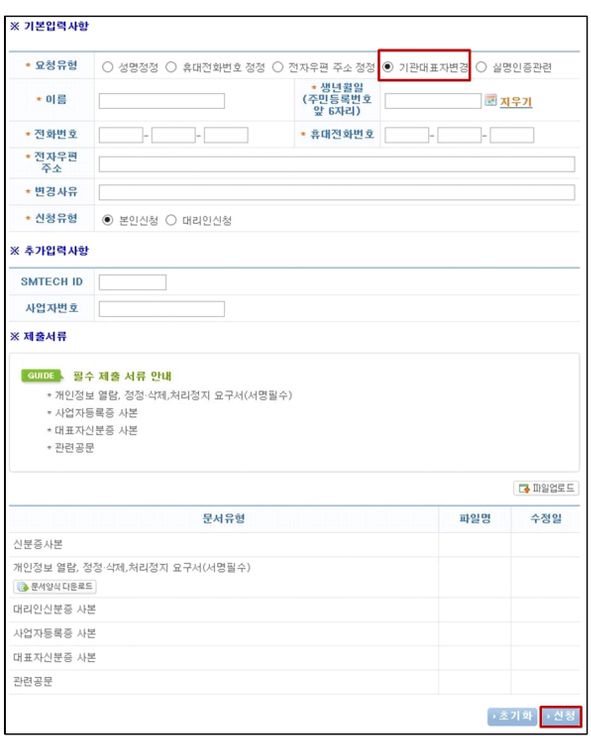


【 사업체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사업체 정보가 한국신용평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정정요청 】

❖ 상세 Guide ❖

① **메시지 : "이미 등록된 사업체 번호입니다."**

- 기관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 바랍니다.
  - ▶ 전대표자로 로그인 가능 할 경우 : 전대표자로 로그인하여 현대표자 등록 후 전대표자 삭제 바랍니다. **(현대표자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전대표자로 로그인 불가능 할 경우 : 개인정보정정요청으로 대표자 변경 요청 바랍니다.
  - ▶ 직원이 기관을 등록했을 경우 : 직원으로 로그인하여 대표자 변경 등록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통합 고객지원센터**
Tel : 1357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② **메시지 : "사업체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실패사유 : NICE평가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번호"**

-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 時 NICE평가정보 (구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법인실명확인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관 정보수정 및 등록 時 법인실명 확인이 불가하실 경우 근무시간 이내 (09:00~18:00)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아래(NICE평가정보)로 송부**하시면 30분~1시간 이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 접수 마감당일 상기 절차를 수행하실 경우 요청 폭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접수를 진행하지 못함이 발생되오니, 반드시 사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실명 미확인으로 인한 온라인 접수불가 건에 대한 민원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NICE평가정보(주)**
Tel : 1600-1522, Fax : 02-2122-5040
(사업자등록증 송부 시, 연락처 및 대표자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실명등록 참고페이지 : https://www.namecheck.co.kr 접속 **'법인실명확인'**)

1.1.3 참여제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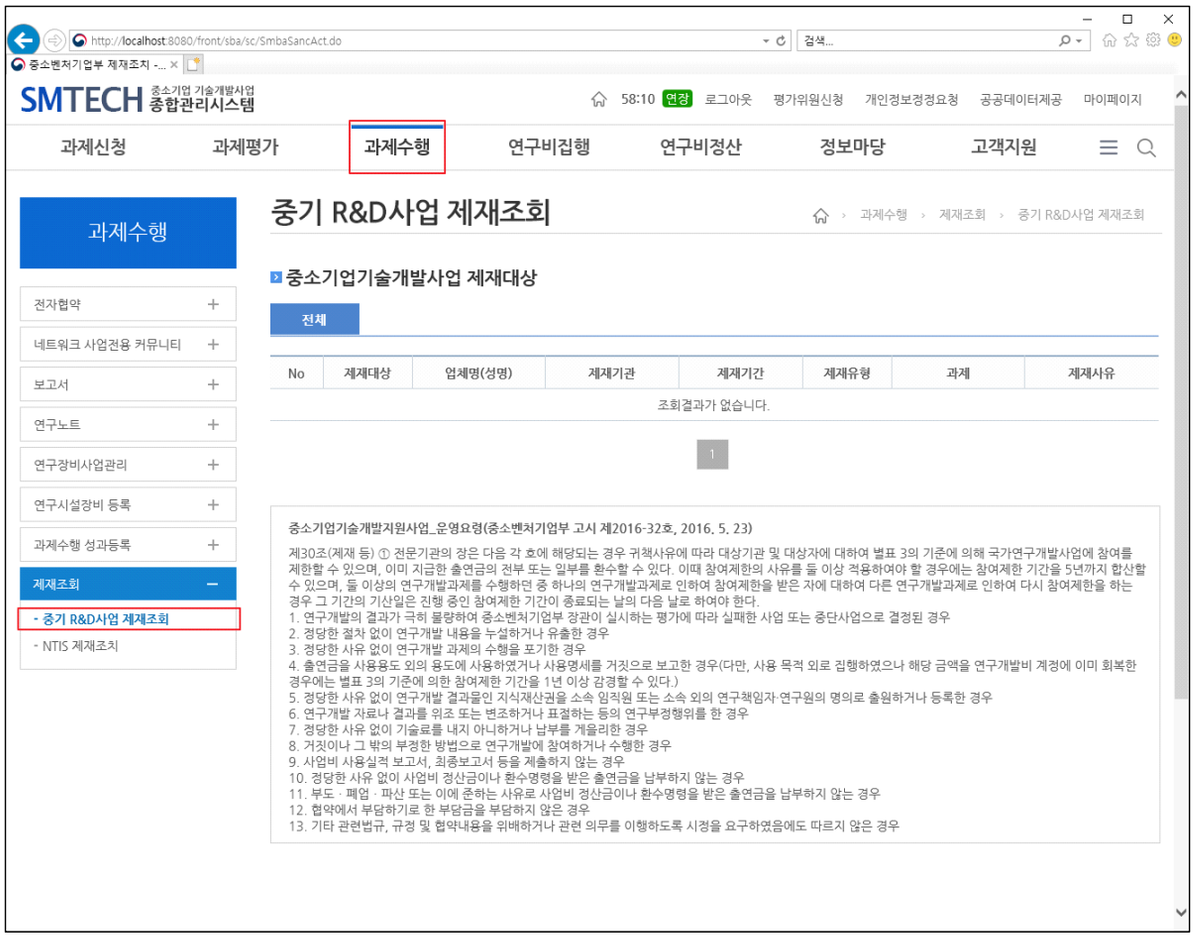
❍ 과제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과제 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당년도의 지역산업육성사업 규정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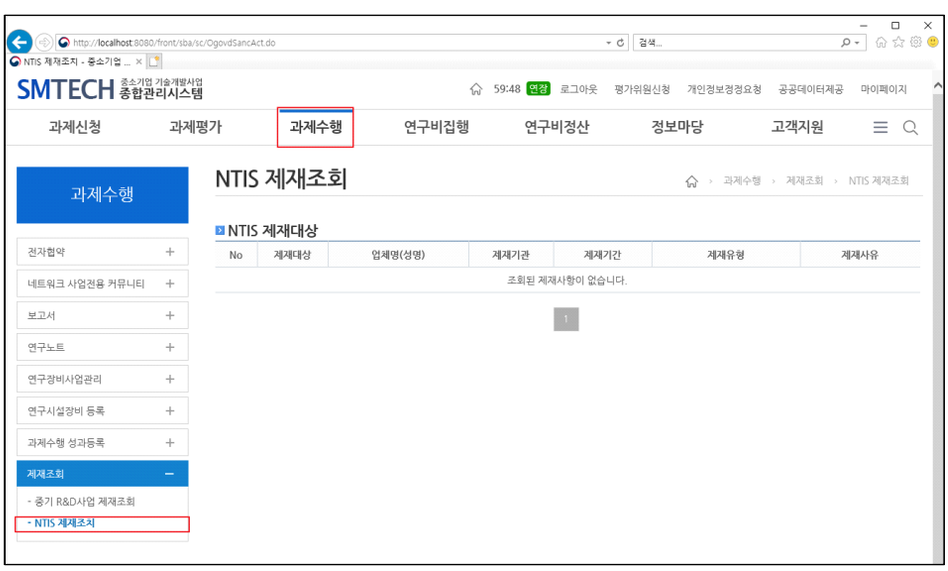
❍ Home > 과제수행> 제재조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가능항목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 전체, 평가관리원 제재, 기술정보진흥원 제재, 산학연협회 제재
- **NTIS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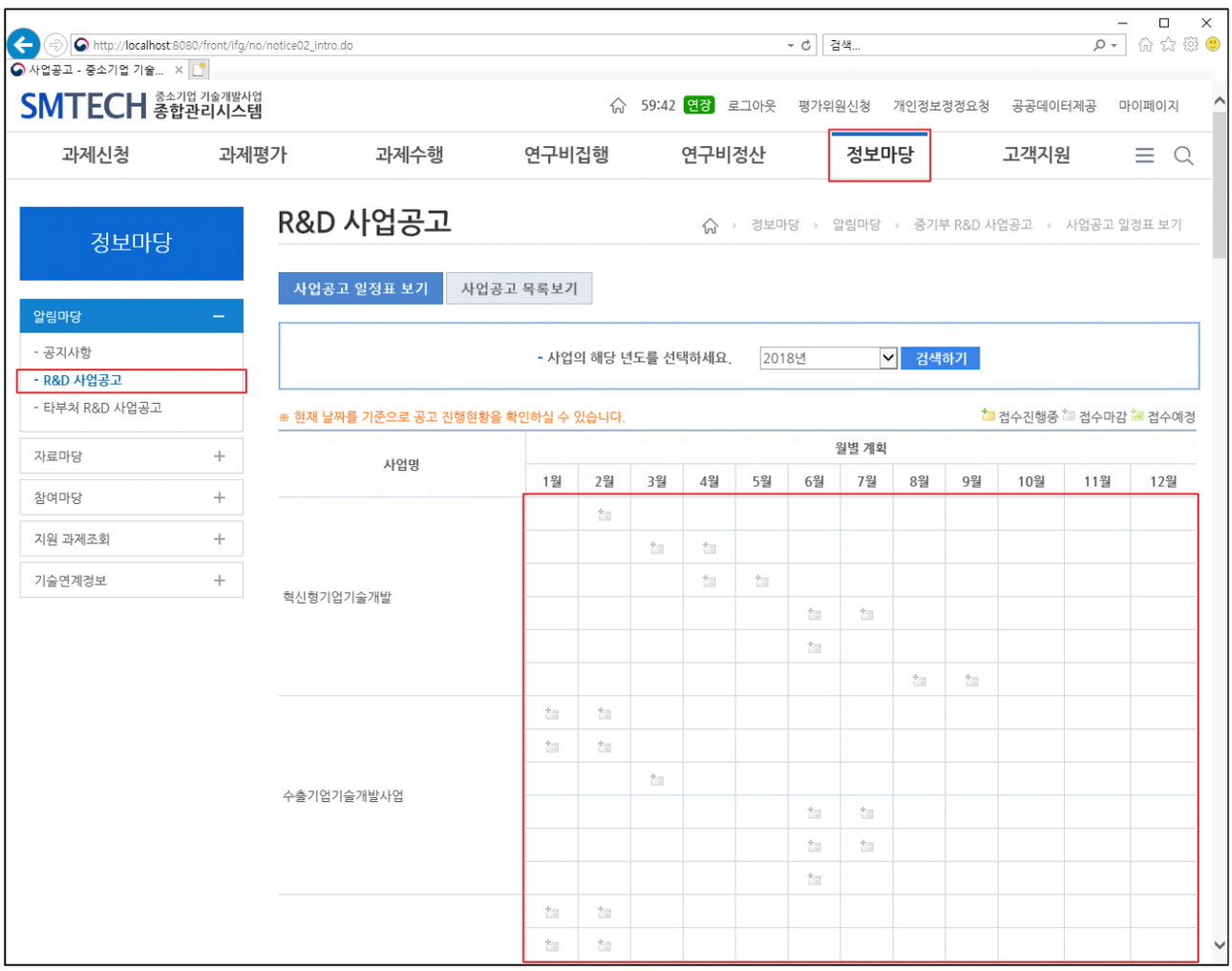
【 NTIS 제재조치 】

1.1.4 제출서류 작성

❍ 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 Home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해당사업별 월별 계획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1.2 과제신청 방법



○ 종합관리시스템의 과제신청은 사업분류에 따라 **선택집중형 / 저변확대형 / 인프라조성형**으로 나뉩니다.

1.2.1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 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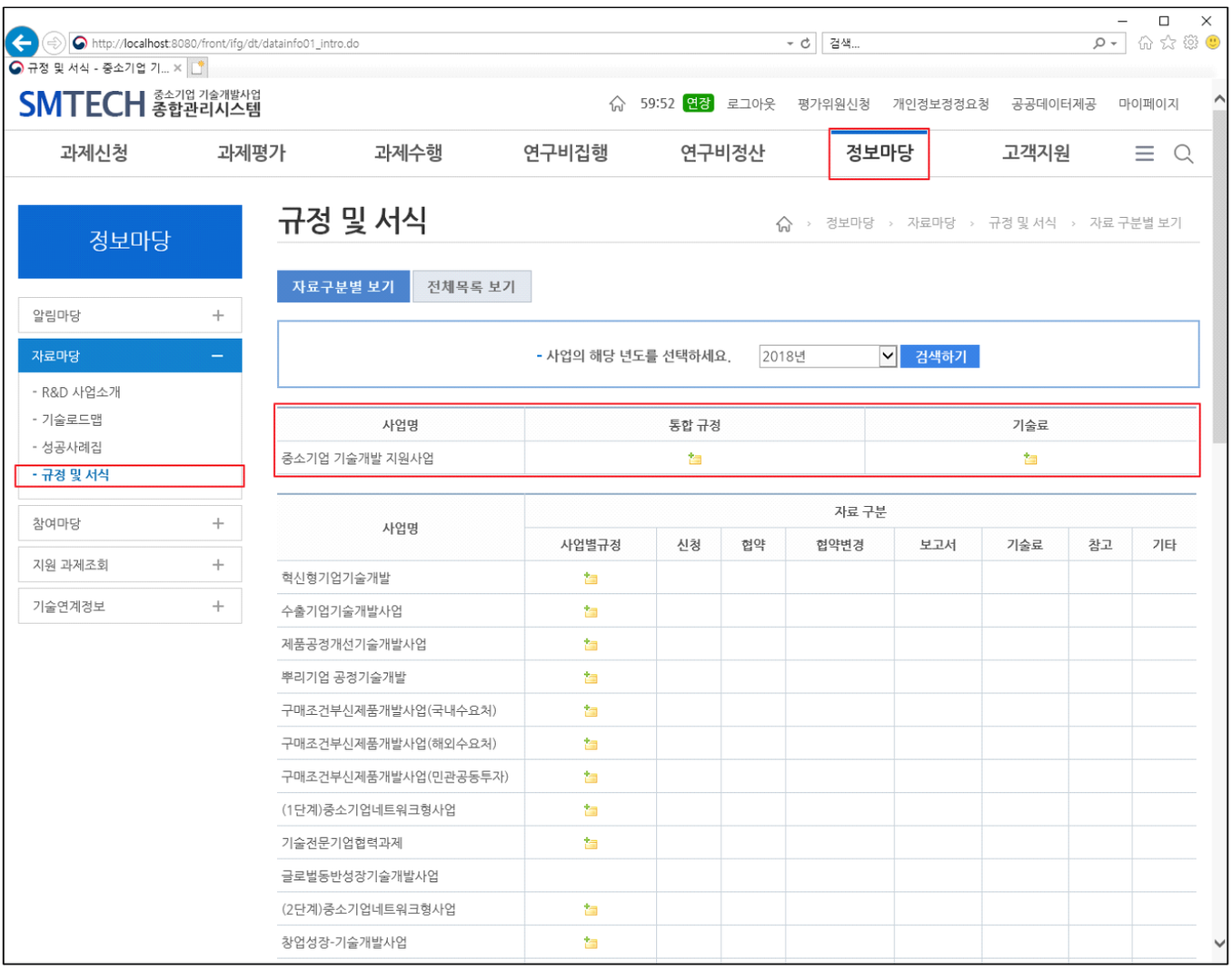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원제외 사항 및 기타사항은 해당년도 사업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규정 및 사업별 관리지침

❍ 당해년도 **통합규정**은
HOME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서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필수S/W 확인

1.3.1 설치여부 확인,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

○ 중기 R&D 종합관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현재 페이지는 처음 로딩시 자동으로 모듈 설치를 시도 합니다.

02. WindowsXP SP2 이후의 운영체제인 경우, 자동 모듈 설치를 위한 노란색 안내 문구가 페이지 상단에 보일 수 있습니다.

03. 노란색 안내 문구가 보일 경우 안내문구를 클릭하고 'ActiveX 컨트롤 설치'를 선택하여야 자동 설치가 진행됩니다.

04. '설치여부 확인'의 '체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의 모듈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05.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모듈이 있을 경우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 테이블에서 해당 모듈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06. 수동설치 성공시 현재 페이지에서 'F5' 버튼을 누른후, 다시 한번 '체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모듈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07. 수동설치 후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모듈이 있을경우, 해당모듈의 제거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후 (모듈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08. 모든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	체크결과
키보드보안 모듈	체크하기	
인증서모듈	체크하기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

구분	용도	대상 모듈	설치파일 Win2000/XP/Vista/Win7/Win8	고객센터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로 입력되는 중요데이터 암호화및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64bit	TouchEnkey_Installer_3103_64k.exe	1644-4128
		32bit	TouchEnKey_Installer_3103_32bit.exe	
전자인증	전자서명인증서실행파일	32bit	VestCertSetup.exe	

1.4 신청하기



1.4.1 신청하기

○ 과제신청의 종류는 중소기업청 R&D 지원유형인 선택집중형 사업, 저변확대형 사업, 인프라조성형 사업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분류, 신청대상과제를 확인 후, 해당하는 과제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링크
선택집중형 과제신청	일반R&D 과제유형에 속하며,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예선심사 신청, 건광관리 연계형이 아닌 일반R&D 과제제의 신청 및 단계과제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하기
저변확대형 과제신청	중진공 및 기보 등을 통해 건강관리 적합사업이 결정된 과제의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기술혁신개발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건광관리 연계형" 사업의 R&D 과제등록 및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하기
인프라조성형 과제신청	R&D기획연계지원사업과 연구장비이용공동지원사업의 참여기업신청, 주관기관 신청이 해당됩니다.	신청하기

1.4.2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후, 반드시 **제출버튼을 클릭하시어 접수증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기간 이전의 출력시간이 기재된 접수증 미 보유시, 미접수에 대한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사용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이 아닌 사업은 과제신청 진행 중, '공고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고문 등을 통하여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정보 확인 : Home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공고)

◎ 과제참여횟수조회

○ 과제신청 전 졸업제 관련하여 과제참여횟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Gui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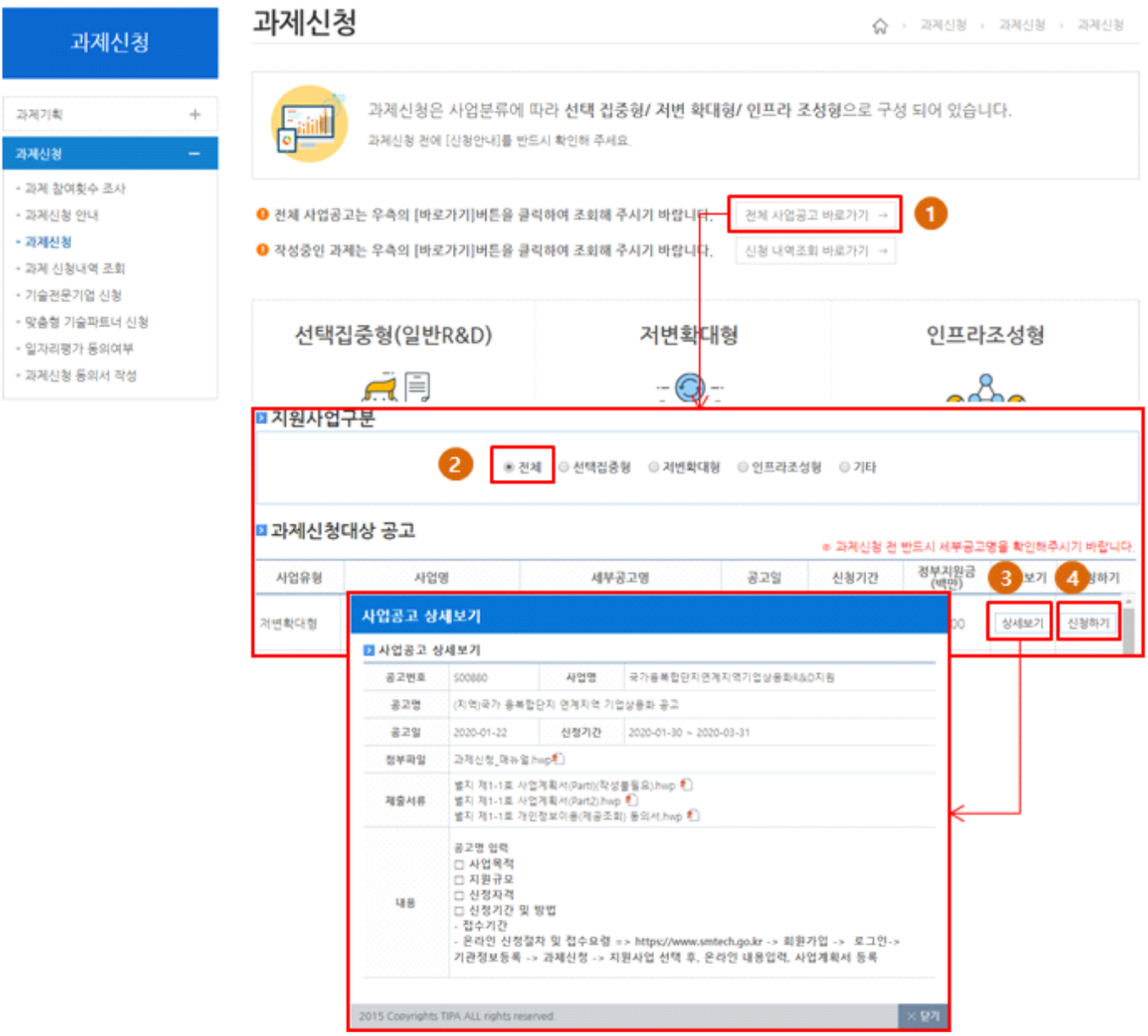
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유형별 참여횟수'와 **'참여과제'** 를 확인합니다.

② **'사업참여가능여부'** 로 조회된 **'참여가능'** 한 사업을 확인 합니다.
(참여 불가한 사업은 참여가능여부에 **'참여불가'** 로 확인 됩니다.)

③ **'졸업제 적용안내'** 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Ⅱ. 과제신청

□ 전체 사업공고 바로가기[과제신청 > 과제신청]



❖ 상세 Guide ❖

① **'전체 사업공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제신청대상 공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지원사업구분**에서 전체 옵션을 선택하시면 **과제신청대상 공고**에서 신청가능 공고목록이 확인 가능합니다.
③ 신청대상 항목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사업공고 상세보기** 팝업창이 나타나며, 공고 상세내역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청대상 항목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일반과제신청이 시작됩니다.

1. 과제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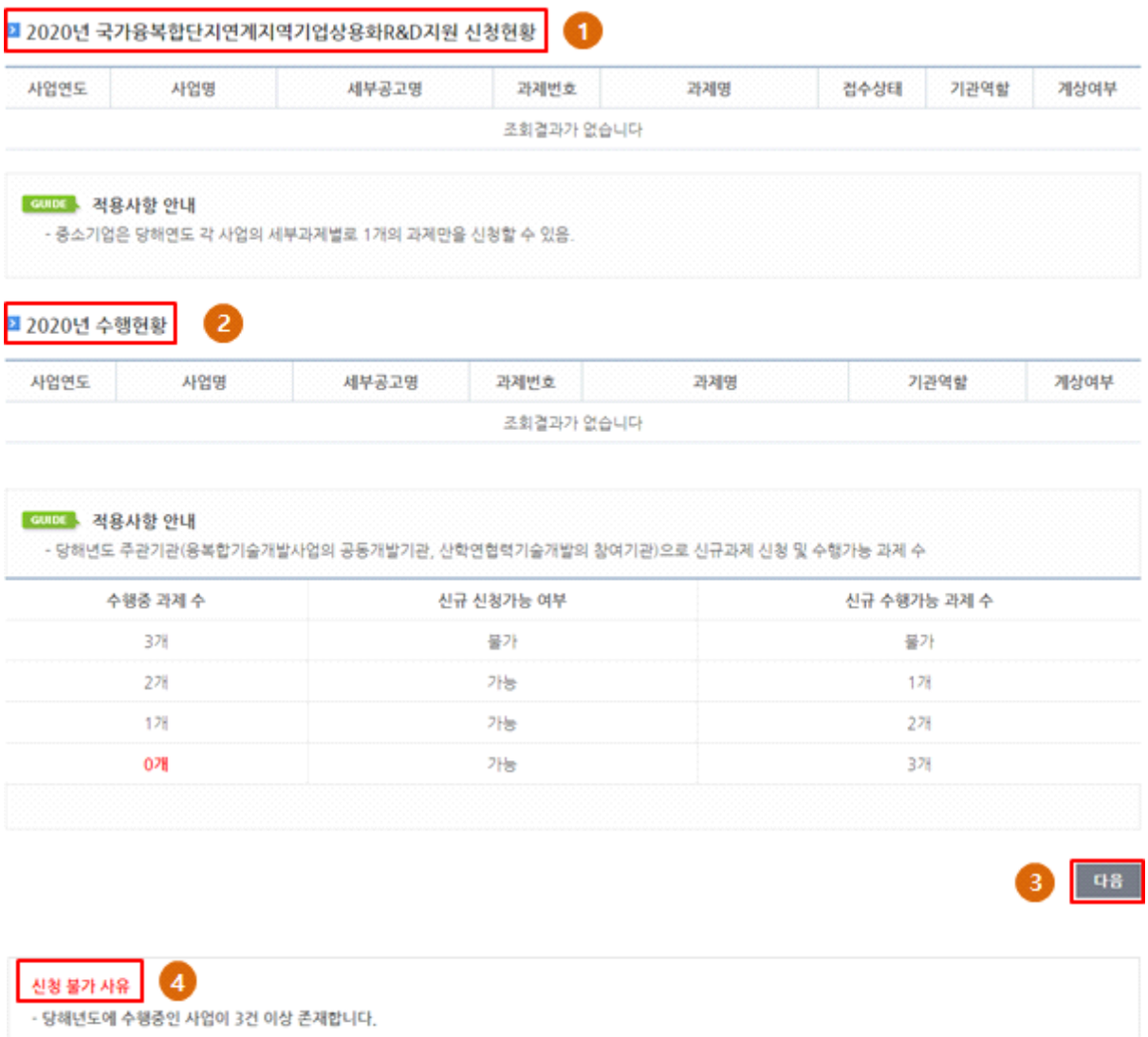
◎ 업체정보 · 공고정보



❖ 상세 Guide ❖

① 과제신청 전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명과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제신청 전에 선택하신 공고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과제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전에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현황 · 수행현황



❖ 상세 Guide ❖

① 당해 연도 사업신청현황을 확인 합니다.

② 현재 수행중인 사업들의 현황을 확인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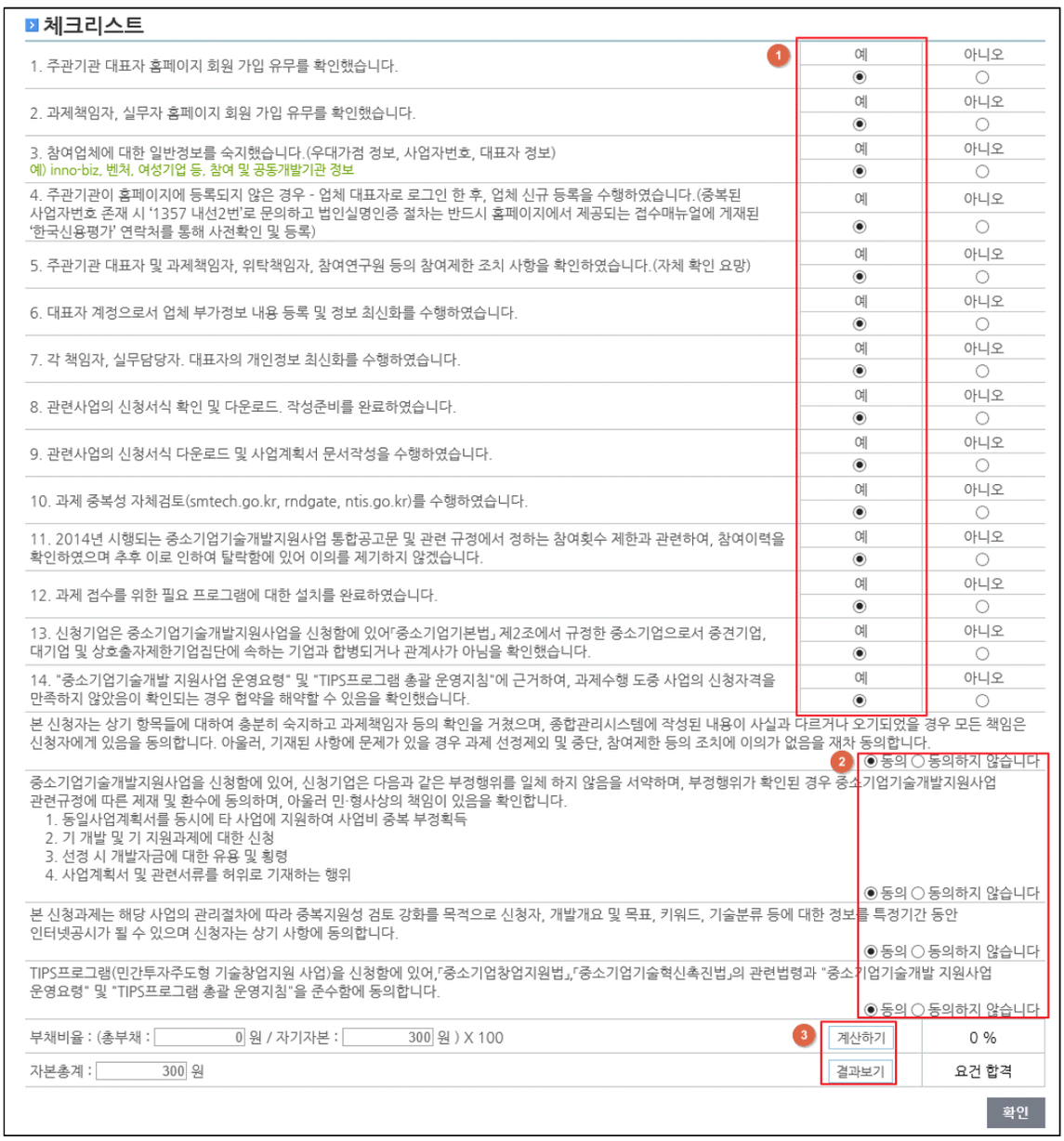
③ 선택하신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할시 **'다음'** 버튼이 생성됩니다.

④ 선택하신 사업으로 신청이 불가능할시 **'신청불가사유'**가 확인되며 **'다음'** 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 신청 불가 사유 : 신청 불가 사유를 확인합니다.

◎ 체크리스트

○ 과제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1. 주관기관 대표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①	예 ◉	아니오 ○
2. 과제책임자, 실무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예 ◉	아니오 ○
3. 참여업체에 대한 일반정보를 숙지했습니다.(우대가점 정보,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 예) inno-biz, 벤처, 여성기업 등, 참여 및 공동개발기관 정보	예 ◉	아니오 ○
4. 주관기관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업체 대표자로 로그인 한 후, 업체 신규 등록을 수행하였습니다.(중복된 사업자번호 존재 시 '1357 내선2번'로 문의하고 법인실명인증 절차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접수매뉴얼에 게재된 '한국신용평가' 연락처를 통해 사전확인 및 등록)	예 ◉	아니오 ○
5.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의 참여제한 조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자체 확인 요망)	예 ◉	아니오 ○
6. 대표자 계정으로서 업체 부가정보 내용 등록 및 정보 최신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7. 각 책임자, 실무담당자. 대표자의 개인정보 최신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8.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작성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9. 관련사업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사업계획서 문서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10. 과제 중복성 자체검토(smtech.go.kr, rndgate, ntis.go.kr)를 수행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11. 2014년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참여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로 인하여 탈락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아니오 ○
12. 과제 접수를 위한 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13.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합병되거나 관계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예 ◉	아니오 ○
1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TIPS프로그램 총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과제수행 도중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	아니오 ○

본 신청자는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과제책임자 등의 확인을 거쳤으며,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기재된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제 선정제외 및 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재차 동의합니다.

② ◉ 동의 ○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동의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신청과제는 해당 사업의 관리절차에 따라 중복지원성 검토 강화를 목적으로 신청자, 개발개요 및 목표, 키워드, 기술분류 등에 대한 정보를 특정기간 동안 인터넷공시가 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상기 사항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습니다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관련법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TIPS프로그램 총괄 운영지침"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 : (총부채 : 0 원 / 자기자본 : 300 원) X 100 ③ 계산하기 0 %

자본총계 : 300 원 결과보기 요건 합격

확인

❖ 상세 Guide ❖

① 체크리스트 항목이 모두 '**예**'가 되어야 과제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동의사항에 모두 **'동의'** 되어야 과제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부채비율, 자본총계등 입력하여 '**계산하기**', '**결과보기**' 클릭하여 요건합격시 과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1 과제신청 1단계 - 주관기관(수행기관) 정보



1.공고분류

사업분류	국가융복합단지연계지역기업상용화R&D지원
공고	국가 융복합단지 연계지역 기업상용화_공고20200117
세부공고	세부공고_국가 융복합단지 연계지역 기업상용화_공고20200117
과제번호	S2834712
과제명 ①	
과제지역 ②	선택 / 선택
관리기관	선택
주력산업분류	
지자체	선택 주의) 선택된 지역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하며, 공동개발기관의 소재지 지역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시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2.주관기관 및 과제 책임자 정보

기업명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2003-02-25		상시 종업원수(명)	1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당시 정보 추가 입력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160			
주생산품(납품처)				
대표자	성명 ③			
	전화			
	이메일			
과제책임자	성명 ④			
	전화			
	이메일		팩스	
실무담당자	성명 ⑤	예)홍길동	생년월일	예)19850102
	전화	예)042-456-6789	핸드폰	예)010-9876-5432
	이메일	email@tipa.or.kr	팩스	예)042-456-1234



⑥ 저장하기 | 다음단계 ⑦

❖ 상세 Guide ❖

①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과제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지자체가 선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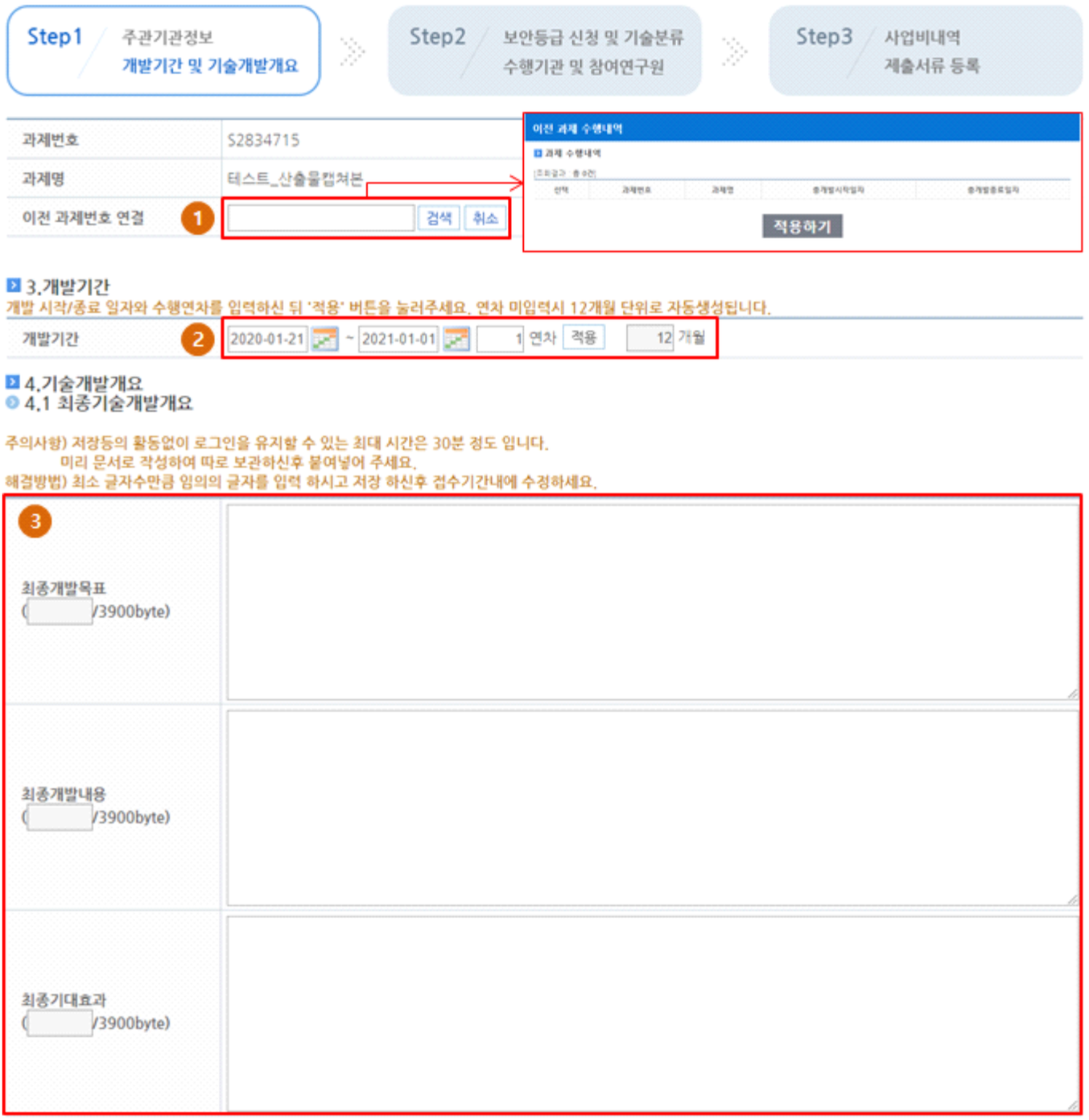
② 과제지역을 선택합니다. 과제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관리기관, 지자체가 선택됩니다.
- 주력산업분류 : 관리기관에 대한 주력산업분류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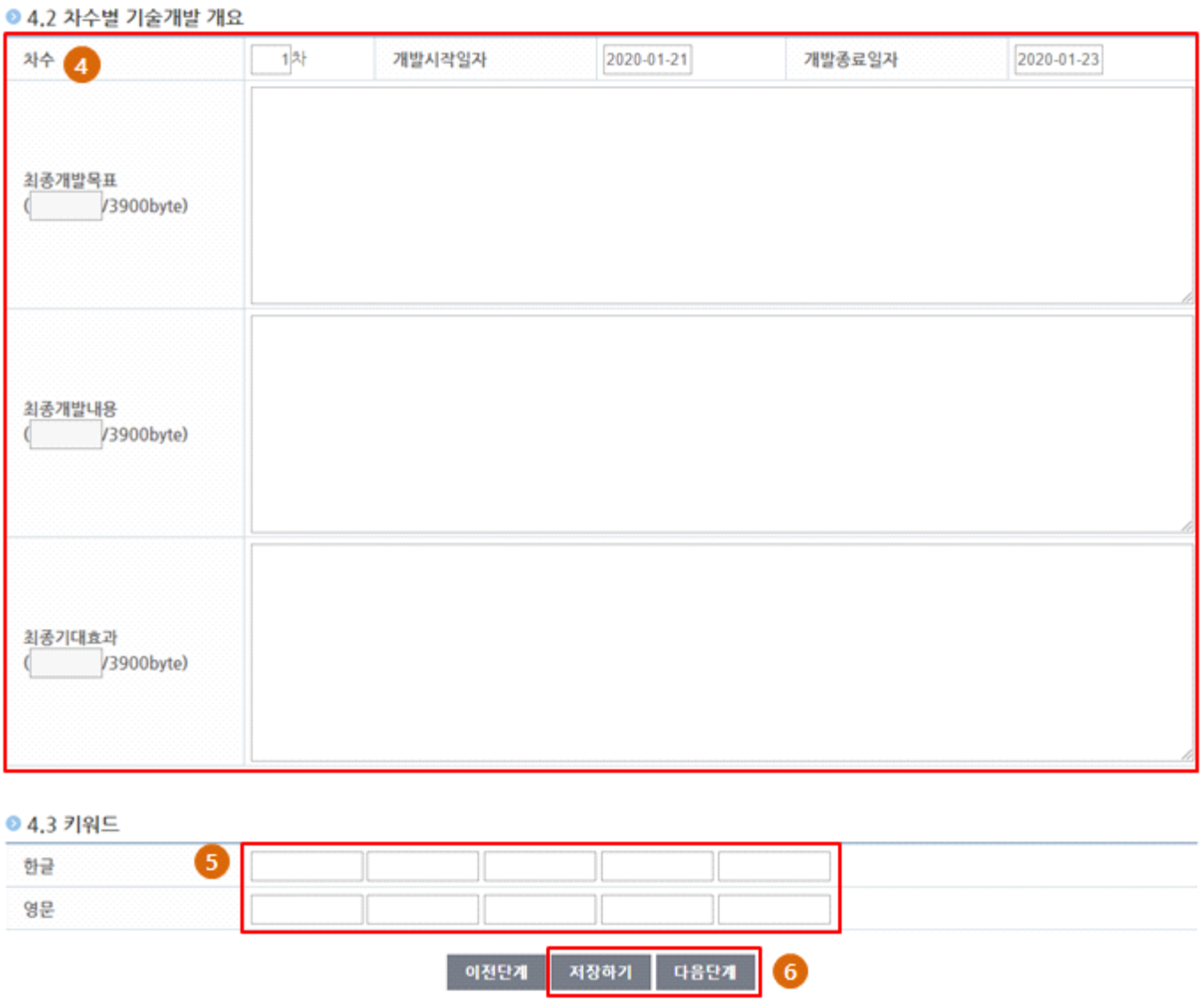
③ ~ ⑤ 구성원 검색
- 이름, 생년월일로 조회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대표자 및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⑥ '**저장하기**' 클릭을 하시면 과제번호가 부여됩니다.

⑦ 저장한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1.2 과제신청 1단계 -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개요





❖ 상세 Guide ❖

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이전 과제번호와 신청과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과제 신청기관이 전년도에 주관기관으로서 과제 수행한 내역이 있을 경우 조회)

② 개발기간과 연차를 입력 후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개월 수가 자동 입력되고, 차수별 기술개발 개요가 활성화됩니다.
연차 탭을 비워두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1년 단위로 차수가 생성됩니다.

③ 최종기술개발개요를 입력합니다.
- 각 항목별 **최대 3900byte** 까지 입력 가능

④ 차수별 기술개발개요를 입력합니다.
- 각 항목별 **최대 3900byte** 까지 입력 가능
※ &, %, ', ", system( ) 등의 특수기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한글 키워드 1~5**'와 '**영문키워드1~5**'를 모두 입력합니다.

⑥ '**저장하기**' 클릭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1.3 과제신청 2단계 -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 상세 Guide ❖

① 보안등급을 선택합니다.
- 신청과제의 보안과제여부는 기술분류 7호 국가 핵심기술 목록에 부합할 경우에만 '**보안과제**' 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과제 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류를 선택합니다.
- 산업기술표준분류와 신 산업기술표준분류를 모두 선택합니다.

③ '**저장하기**' 클릭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1.4 과제신청 2단계 -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Step1 주관기관정보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개요 > Step2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 Step3 사업비내역 제출서류 등록

과제번호	S2834715
과제명	테스트_산출물캡쳐본

7.수행기관정보

7.1 수행기관별 정보

1 추가 수정 삭제

선택	참여역할	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우대조건	경영현황표 입력여부
	주관기관	(주)애니파이브	1208649219	과제테스트00	2 미확인	3 미입력

7.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

주관기관

4 추가 수정 삭제

선택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위탁 등)	과제현황			매출액(천원)	고용
						완료	개발중	신청중		

주관기관에 대한 등록된 참여실적이 없습니다.

*매출액/고용 작성 시, 해당 과제로 발생한 실적을 작성 바랍니다.

참여기관(해당시)

4 추가 수정 삭제

선택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위탁 등)	과제현황			매출액(천원)	고용
						완료	개발중	신청중		

참여기관에 대한 등록된 참여실적이 없습니다.

*매출액/고용 작성 시, 해당 과제로 발생한 실적을 작성 바랍니다.

8.참여연구원(연차별 등록이 아닌 참여하는 총인원으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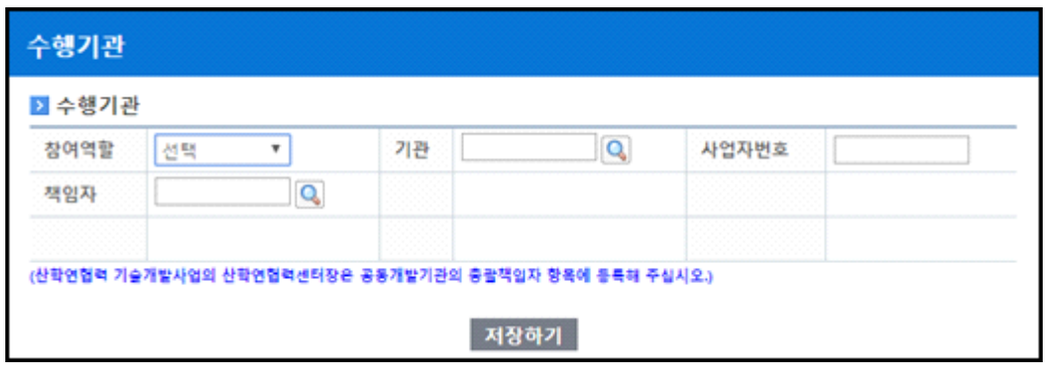
<참여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5 추가 수정 삭제

선택	소속기관	성명/주민번호	경력등록 건수	직위	직계 존비속	담당분야	채용구분	외부 연구원	전공및학위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봉 (원단위)
		성명							학교	전공		본 사업 참여율		
		주민번호						청년인력	학위	취득년도		정부과제 총 참여율		

조회된 연구원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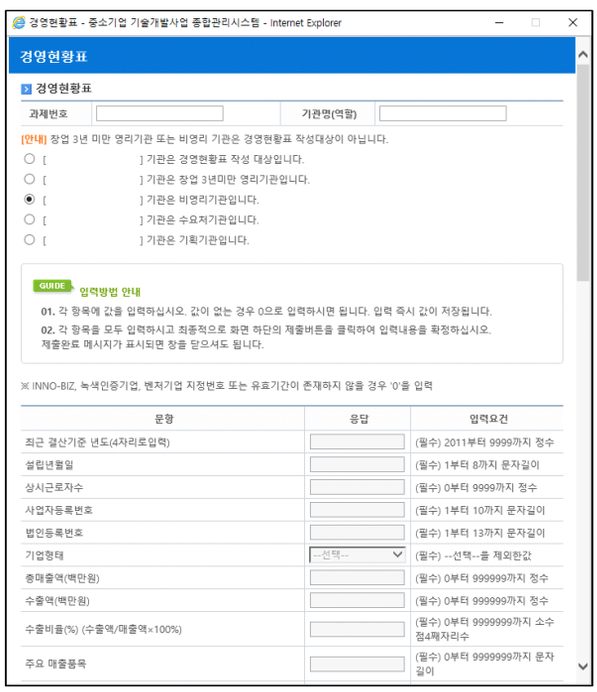
이전단계 다음단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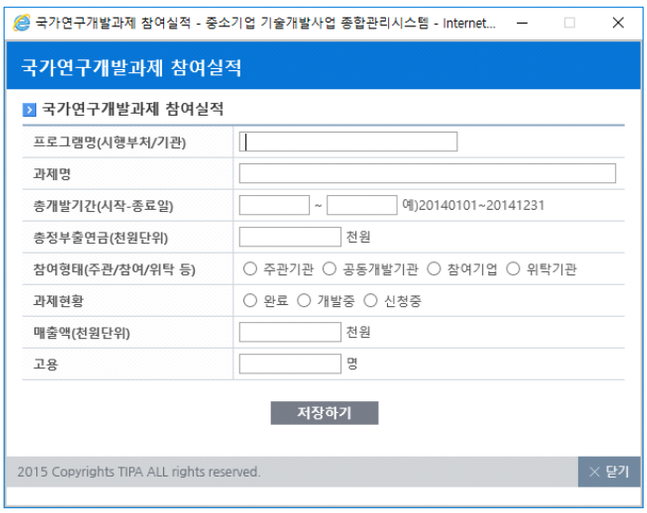
【 수행기관 등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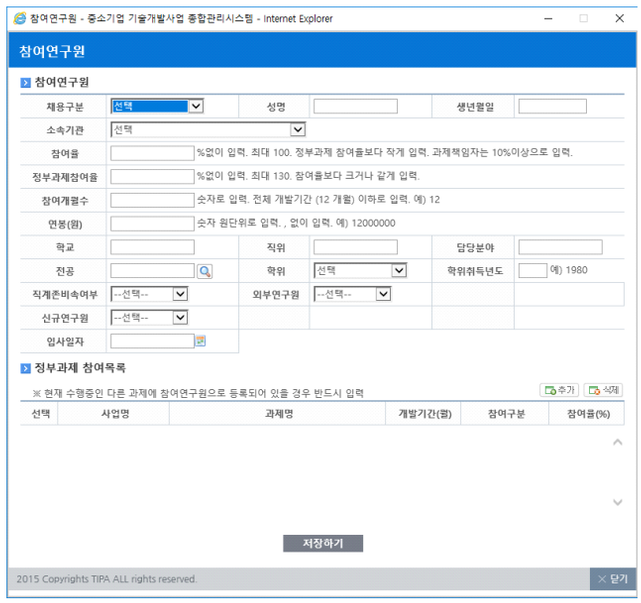
【 우대조건 】



【 경영현황표 】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등록 】



【 참여연구원 등록 】

❖ 상세 Guide ❖

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에 관련된 기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된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우대조건**'을 클릭하여 기관별 우대사항을 입력합니다.

③ '**경영현황표 입력여부**'를 클릭하여 기관별 경영현황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사항**)
※ 과제신청기관이 경영현황표 작성 대상 기관이 아닐 경우 경영현황표 입력 팝업 상단의 해당 구분을 선택하시면 경영현황표 작성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수행기관 별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실적이있거나 혹은 신청 및 개발중인 과제가 있으시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실적 내용을 입력합니다.
추가된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된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 과제책임자는 필수로 참여연구원에 등록해주셔야 다음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여부는 직계가족 여부를 뜻하며, 'Y'로 선택시 추후 협약변경 부분에서 승인사항으로만 변경이 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연구원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할 예정에 있는 연구원을 뜻합니다.

⑥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1.5 과제신청 3단계 - 사업비내역

Step1 주관기관정보 개발기간 및 기술개발개요 > Step2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 Step3 사업비내역 제출서류 등록

과제번호	S2834715
과제명	테스트_산출물캡쳐본

9. 사업비 정보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차수	정부출연금(천원)		민간부담금(천원)				계(천원)
	현금	비율(%)	현금	비율(%)	현물	비율(%)	
1차	120,000	80%	30,000 (100%)	20%	0 (0%)	0%	150,000
합계	120,000	80%	30,000	20%	0	0%	150,000

기관별 사업비 분담내역

차수	구분	업체명	정부출연금(천원)	민간부담금(천원)		
			현금	현금	현물	소계
1차	주관기관	(주)애니파이브	70,000	30,000	0	30,000
1차	참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0,000	0	0	0
소계			120,000	30,000	0	30,000
합계			120,000	30,000	0	30,000

기관별 분담내역 저장

9.2 기관별 사업비 구성내역

차수	구분	업체명	사업비총괄(천원)		
			현금	현물	소계
1차	주관기관	(주)애니파이브	100,000	0	100,000
1차	참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0,000	0	50,000
소계			150,000	0	150,000
합계			150,000	0	150,000

9.3 사업비 비목별 합계

차수	구분	업체명	비목	현금(천원)	현물(천원)
1차	참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접비	10,000	0
1차	참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간접비	40,000	0
합계				50,000	0

이전단계 | 저장하기 | 다음단계

❖ 상세 Gui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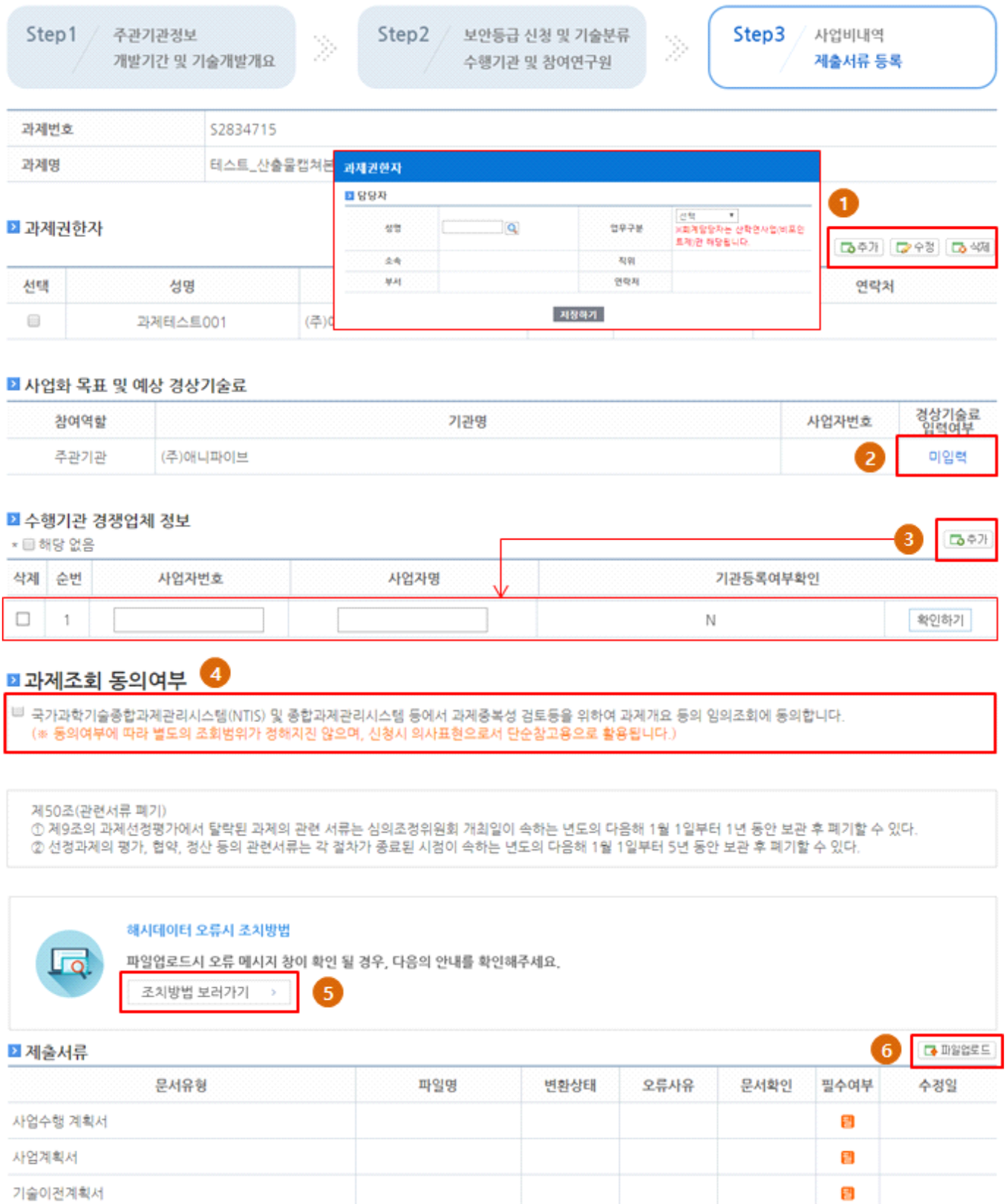
① 기관별 분담내역[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금액을 차수별로 직접 입력합니다.
② '**기관별 분담내역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별 사업비 분담내역을 저장합니다.
③ **'기관별 사업비 분담내역'** 금액의 합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④ **'9.3 사업비 비목별 합계' 부분이 활성화 됩니다.**
⑤ 기관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차수별로 직접 입력합니다.
⑥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9.3 사업비 비목별 합계'** 금액을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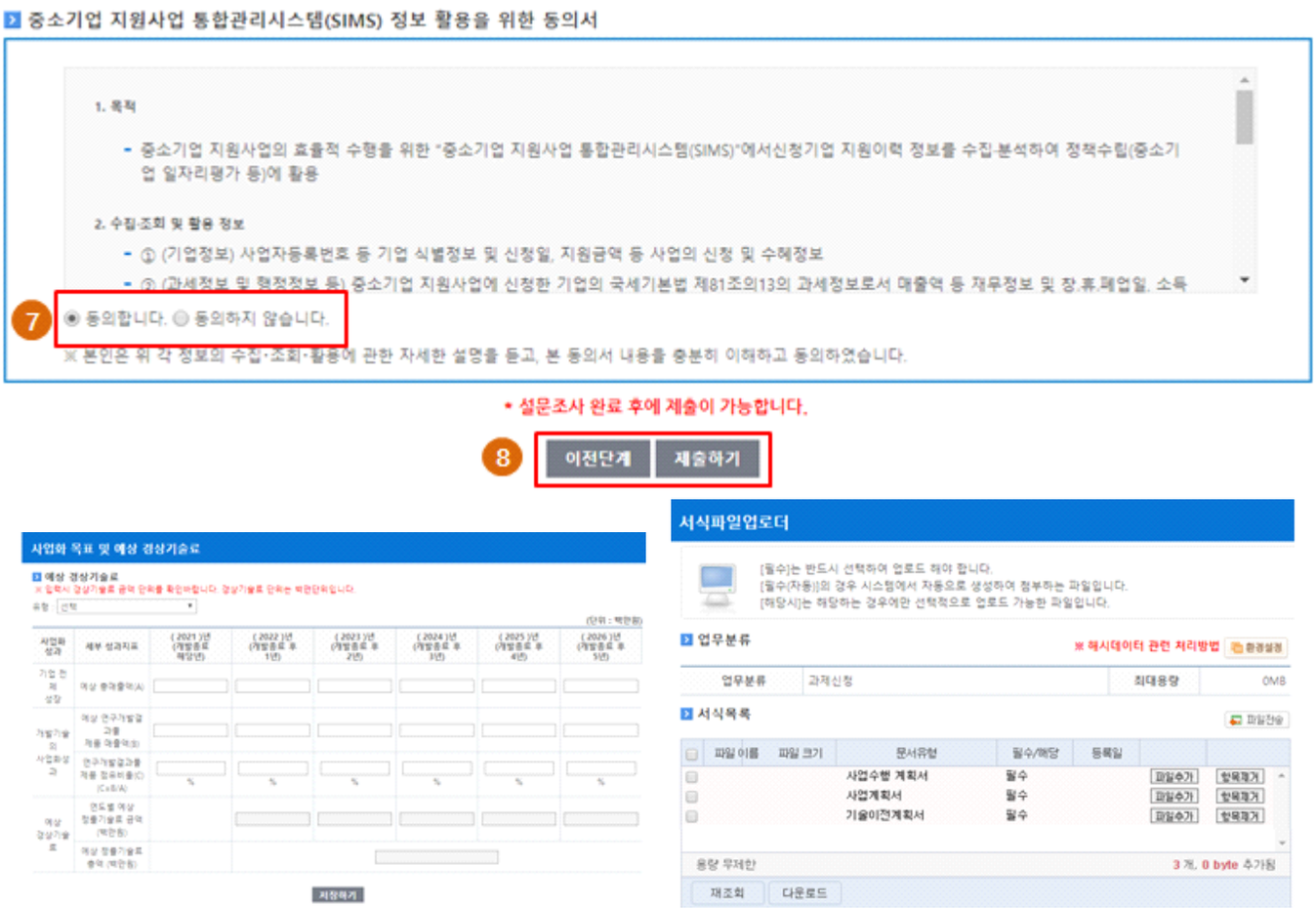
※ 9.3 항목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9.3 항목 입력 후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 차수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금액과 9.2 기관별 사업비 구성내역의 기관별 현금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1.6 과제신청 3단계 - 제출서류 등록





【 경상기술료 등록 】

【 첨부파일 업로드 】

❖ 상세 Guide ❖

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 권한자를 저장 합니다.

②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팝업화면에서 경상기술료를 등록합니다.

③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활성화가 되므로 해당 시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체크합니다.

④ 내용 확인 후 **과제조회 동의여부**에 체크합니다.

⑤ 파일업로드시 오류메시지 창이 확인 될 경우, 조치방법 보러가기를 클릭 하여 순서대로 처리한다.

⑥ '**파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신 신청관련 문서를 업로드 합니다.

※ 사업계획서(Part I)은 제출시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 '문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 대상 문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업로드 한 후 '파일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파일을 업로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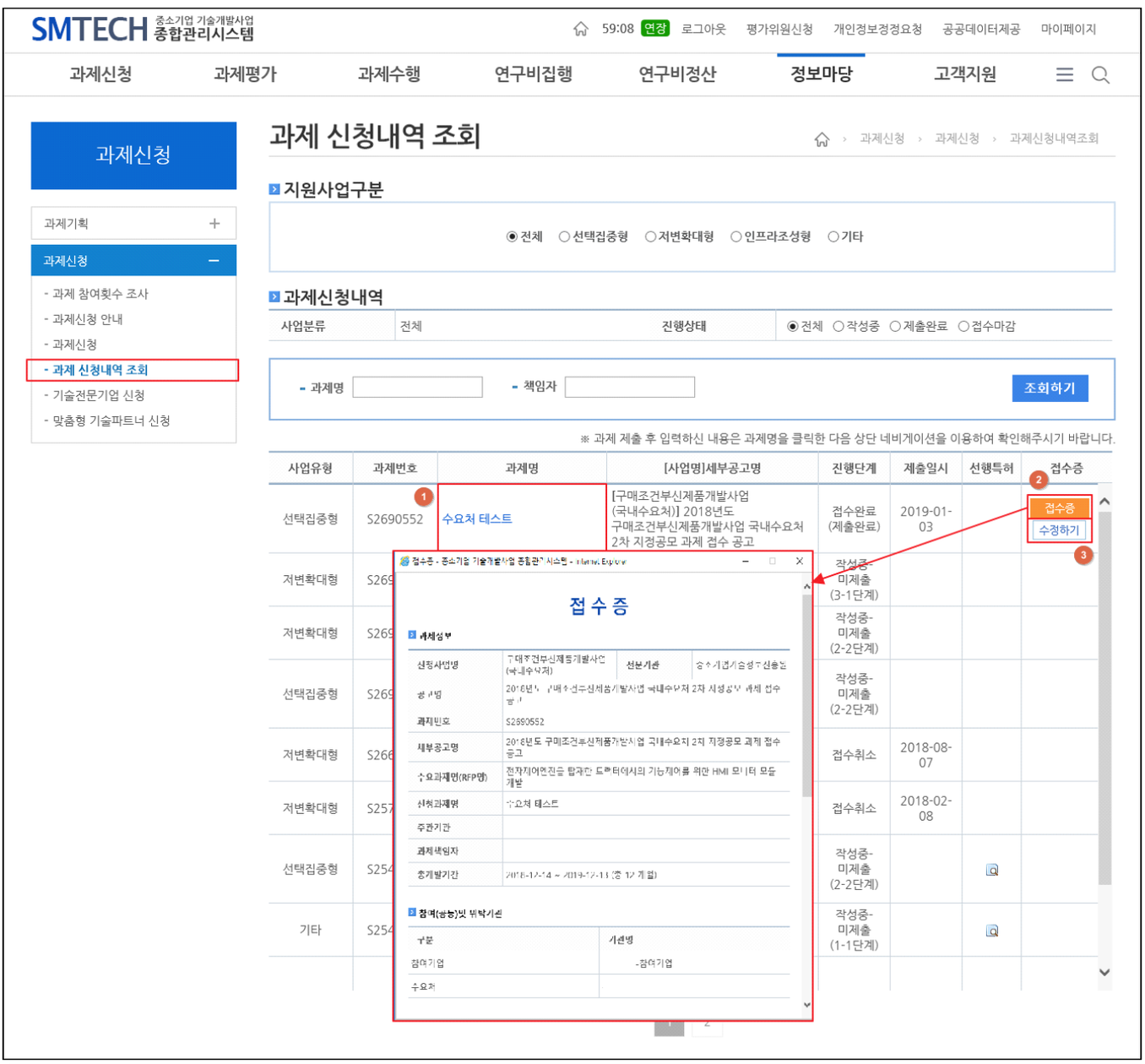
※ 필수여부가 '필수'인 문서는 반드시 업로드 해주셔야합니다.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⑧ 설문조사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조사 완료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신청을 종료합니다.

1.7 신청내역 조회, 수정 및 접수증 출력

○ Home > 과제신청> 과제신청>과제 신청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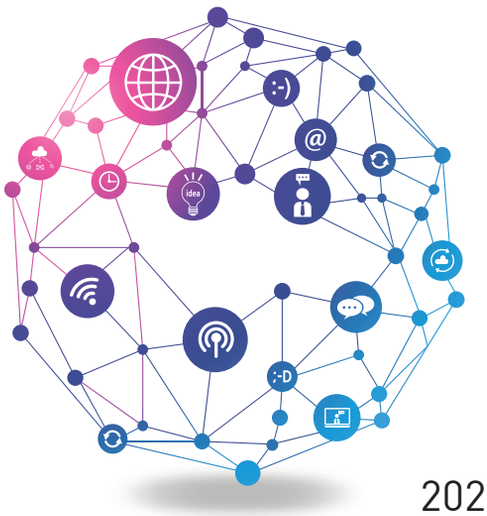
❖ 상세 Guide ❖

① 과제명을 클릭하시면 신청한 과제의 입력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상단의 네비게이션을 통해 항목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② 제출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 완료된 과제의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 과제 내용 수정 후 반드시 '제출하기'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3. K-PASS 과제 신청 매뉴얼



Chapter Ⅰ.

과제신청

1. 과제신청
2. 개념계획서 신청
3. 수요조사 신청

K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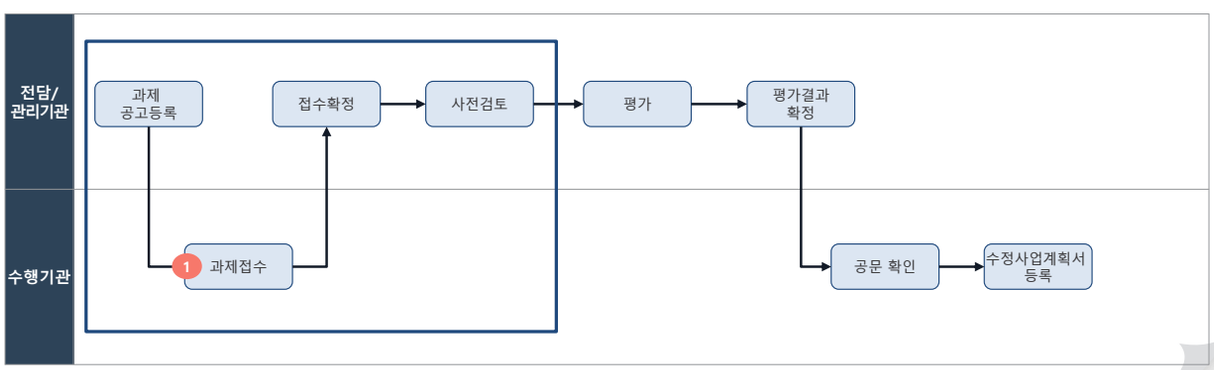
Ⅰ 주요 업무프로세스



◆ 공고 구분

- 수요조사
- 과제
  - 일반과제
    - 개념계획서 + 일반과제
    - 1 일반과제
  - 1 R&D사업 과제

◆ 과제 프로세스



21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페이지 입니다.

1 신규과제 신청 안내 선택 시 안내내용이 노출됩니다.

2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선택 시 해당 공고의 3 공고별 지원사업분야가 노출됩니다.

4 사업계획서 신청 버튼 선택 시 사업계획서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작성중, 제출 한 신규과제 신청 목록이 노출됩니다.

6 취소 버튼 선택 시 작성중인 신규과제가 삭제됩니다.

7 제출 버튼 선택 시 작성중인 신규과제가 제출됩니다.
-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8 접수증 버튼 선택 시 제출된 접수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화면설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팝업입니다.
신규 과제를 신청하기위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제 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전체 동의는 각 항목에 동의함에 체크하지 않아도 한번에 체크가 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전체 동의를 확인 후, 3 수행 역할선택 팝업이 노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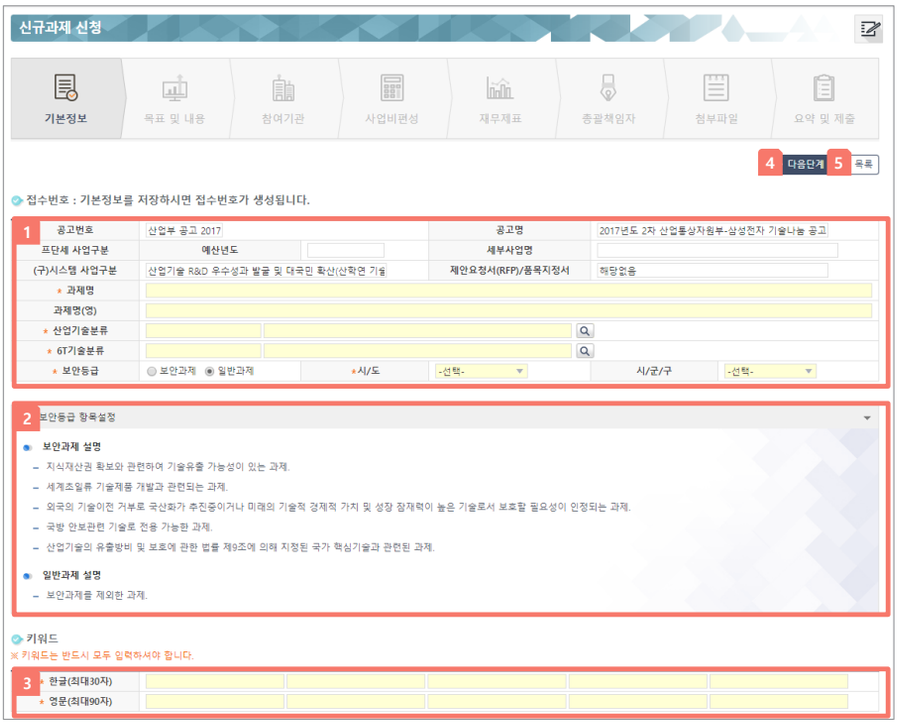
3 수행할 역할 선택 팝업입니다.
신규 과제를 접수하는 담당자가 과제책임자인지 실무담당자인지 선택합니다.

4 취소버튼 선택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팝업이 닫힙니다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기본정보





화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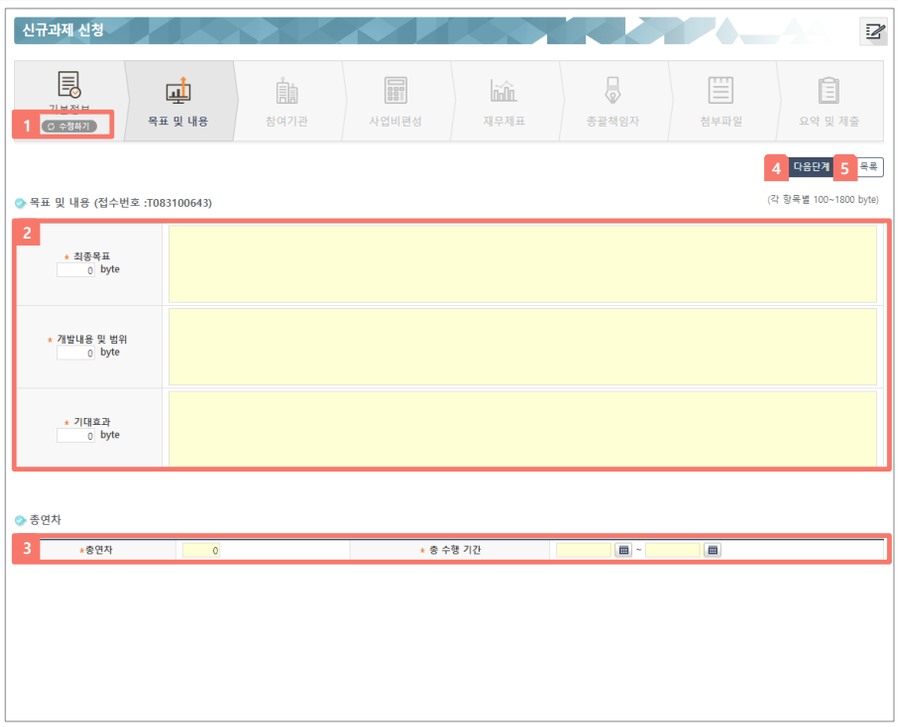
신규과제 신청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1. 과제의 기본정보인 과제명, 산업기술분류, 6T기술분류, 보안등급, 시/도 정보를 입력합니다.
2. 보안등급 항목 설명 부분입니다.
   - 해당부분 선택 시, 보안등급에 관한 설명이 노출됩니다.
3. 해당과제를 설명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필드입니다.
4. 다음단계 선택 시, 해당 신규과제에 접수번호가 발생되며, 목표 및 내용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목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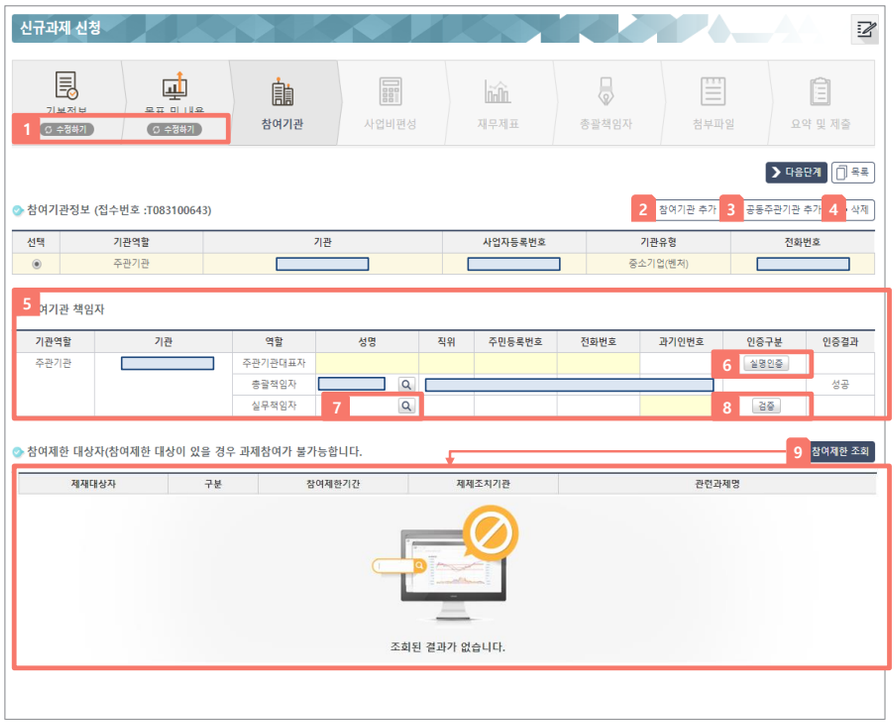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목표 및 내용 입력 페이지입니다.

1. 수정하기 버튼 선택 시, 기본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3. 총 연차 정보와 각각 연차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4. 다음단계 선택 시, 해당 해당내용이 임시저장되며 참여기관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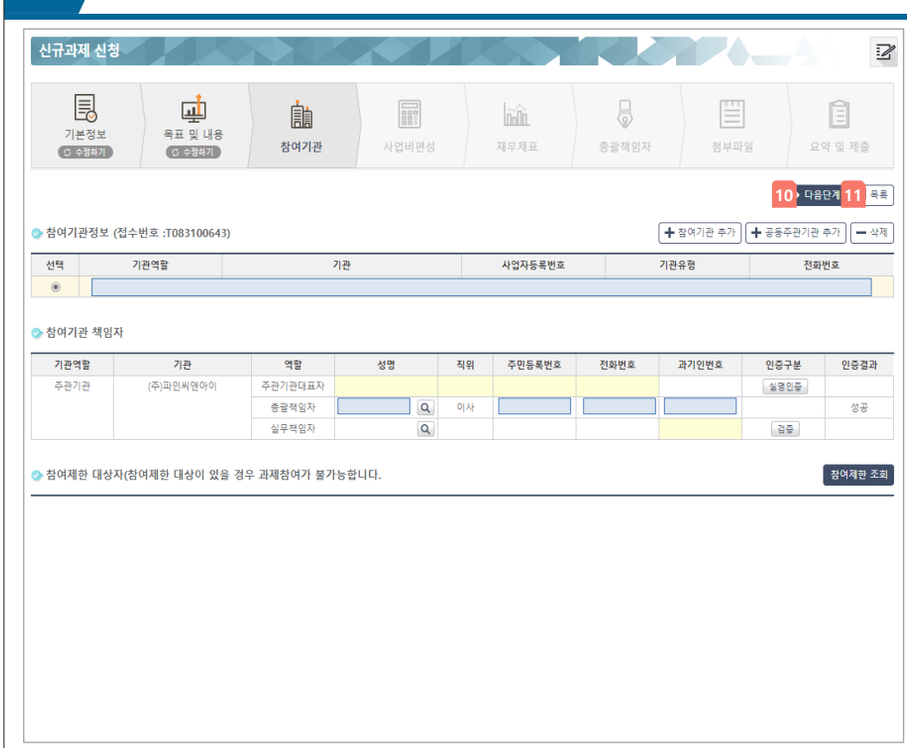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참여기관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1. 수정하기 버튼 선택 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참여기관 추가 버튼 선택 시, 참여기관정보에 참여기관 입력 필드가 추가됩니다.
3. 공동주관기관 추가 버튼 선택 시, 공동주관기관 입력 필드가 추가됩니다.
4. 참여기관을 선택 후 삭제 버튼 선택 시, 해당 기관정보가 삭제됩니다.
5. 참여기관 책임자 정보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6. 기관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프로세스입니다.
7. 검색 버튼 선택 시, 해당 기관의 직원 정보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8.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검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9. 참여제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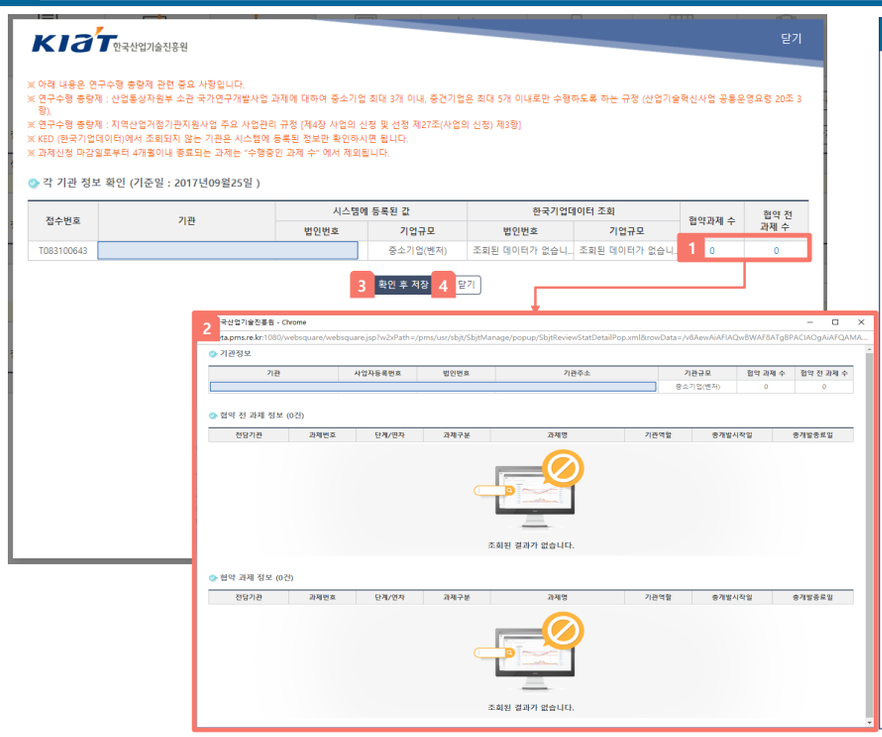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참여기관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10. 다음단계 선택 시, 해당 해당내용이 임시저장되며 사업비편성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참여기관 > 기관정보 확인 팝업



화면설명

참여기관의 기업규모 및 협약과제 수, 협약 전 과제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협약과제 수, 협약 전 과제 수 선택시 2 과제정보 리스트 팝업이 노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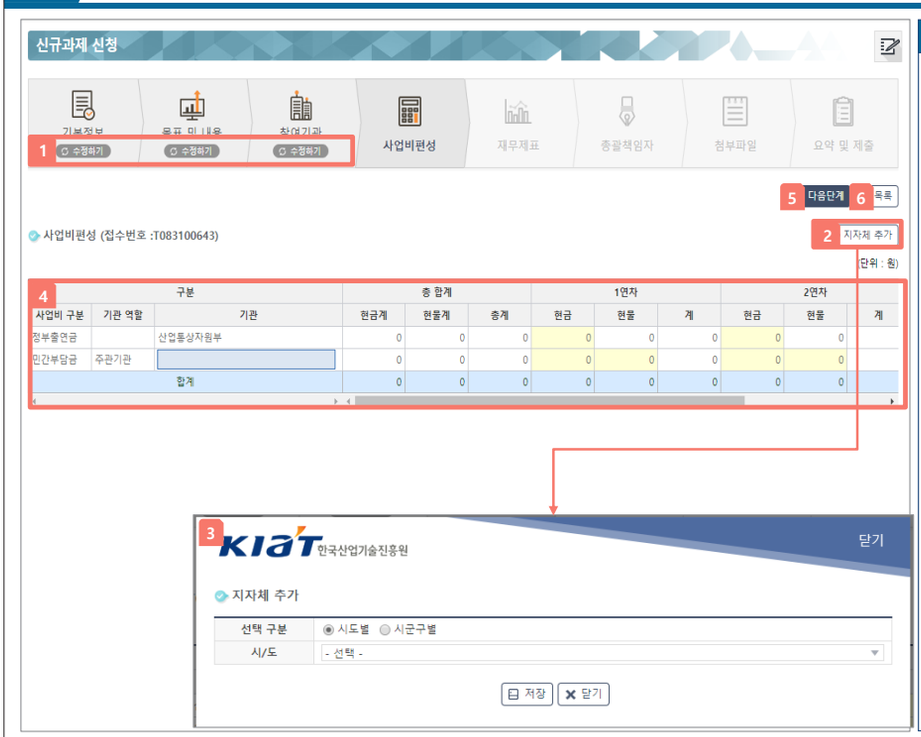
3 확인 후 저장 버튼 선택 시, 팝업이 닫히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닫기 버튼 선택 시 팝업이 닫힙니다.

28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사업비 편성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사업비편성 페이지입니다.

1 수정하기 버튼 선택 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지자체 추가 버튼 선택 시, 3 지자체 추가 팝업 노출됩니다.

3 지자체 시/도 선택 후 확인 버튼 선택 시, 사업비편성에 지자체 필드가 추가됩니다.

4 사업비 편성에서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필드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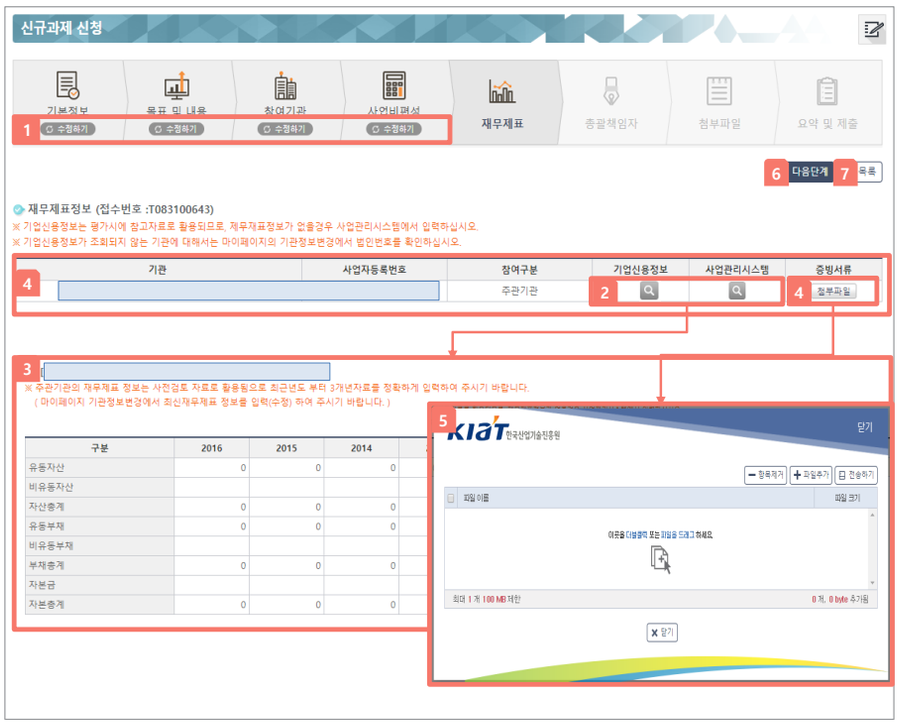
5 다음단계 선택 시, 해당 해당내용이 임시저장되며 재무제표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9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재무제표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재무제표 페이지입니다.

1 수정하기 버튼 선택 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기업신용정보, 사업관리시스템 돋보기 아이콘 선택 시, 3 등록되어있는 재무정보가 노출됩니다.

4 첨부파일 선택 시, 5 재무제표 증빙서류 첨부할 수 있는 팝업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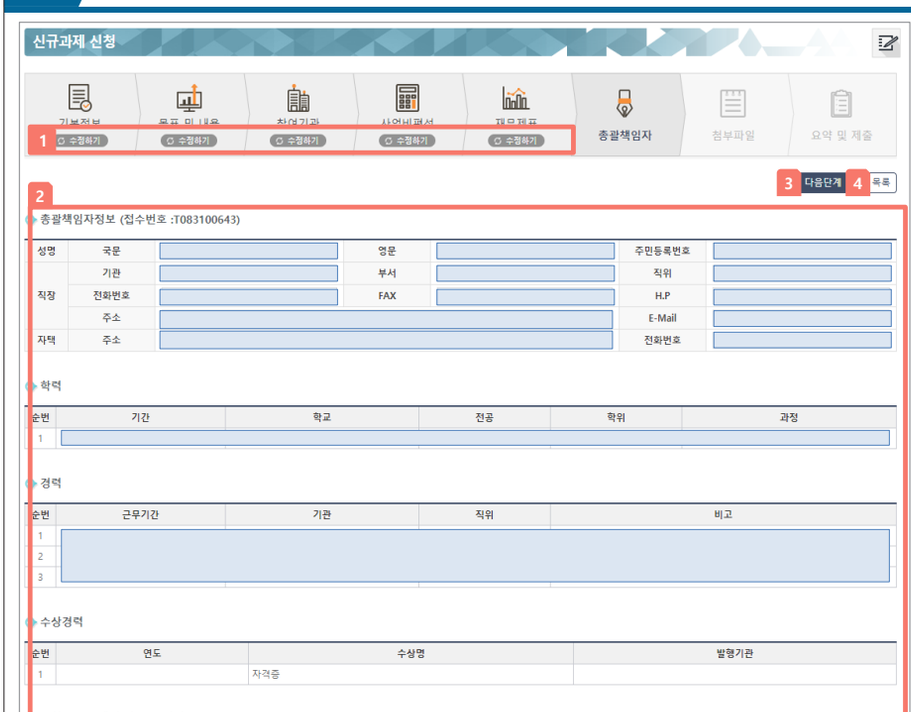
6 다음단계 선택 시, 해당 해당내용이 임시저장되며 총괄책임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7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0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총괄책임자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총괄책임자 페이지입니다.

1 수정하기 버튼 선택 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총괄책임자 정보가 노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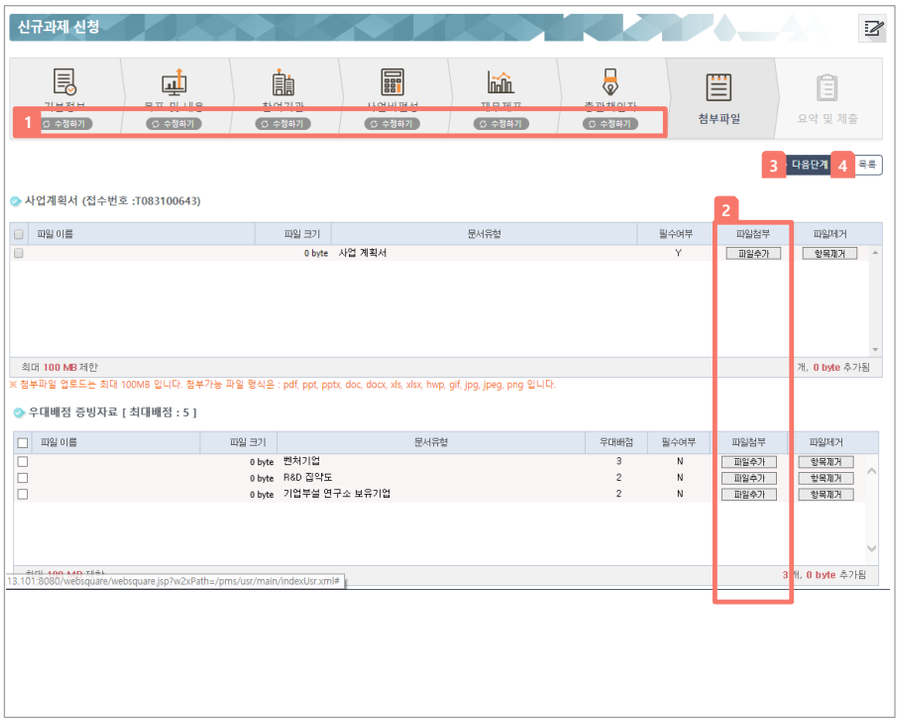
3 다음단계 선택 시, 해당 해당내용이 임시저장되며 첨부문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1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첨부파일



화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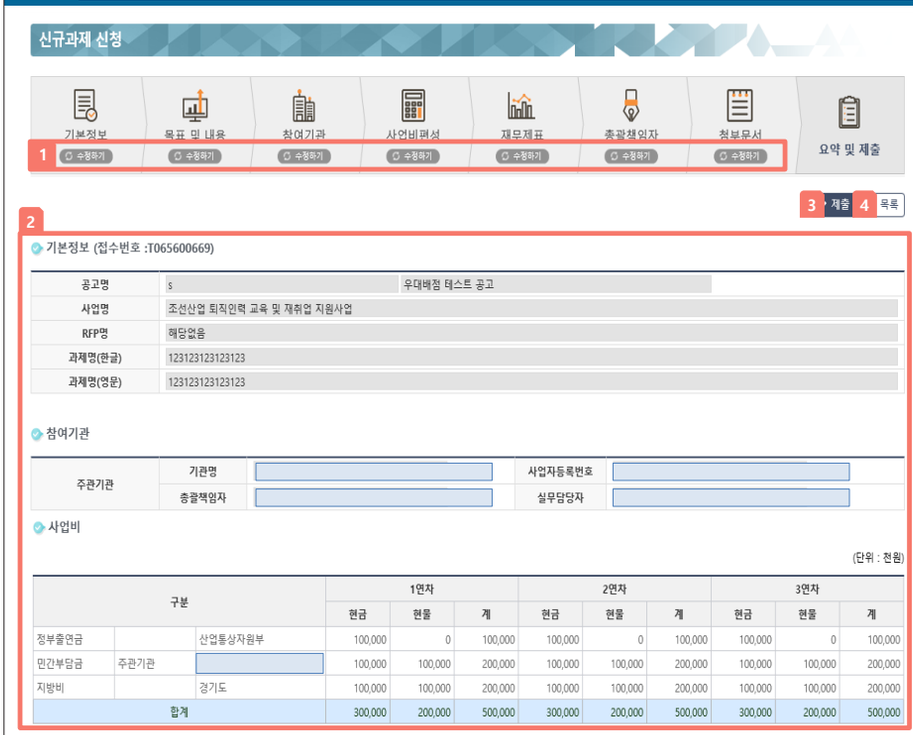
신규과제 신청 첨부문서 페이지입니다.

1. 수정하기 버튼 선택 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우대배점 증빙자료 파일을 추가합니다.
3. 다음단계 선택 시, 해당 해당내용이 임시저장되며 요약 및 제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2

I 1. 과제 신청

신규과제 신청 > 일반과제 >요약 및 제출



화면설명

신규과제 신청 첨부문서 페이지입니다.

1. 수정하기 버튼 선택 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신규과제 신청 요약내용입니다.
3. 제출버튼 선택 시, 해당 해당내용이 제출됩니다.
   - 제출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수정 할 수 없습니다.
4. 목록버튼 선택 시, 신규과제 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3

MEMO

MEMO

MEMO

MEMO